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466-14

[www.me.go.kr](http://www.me.go.kr)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Ministry of Environment



전년도에 정책계획을 새로이 포함하여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으며, 도시개발, 산업단지, 도로, 하천분야의 계획에 대해서 평가서 작성시 대안설정,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항목을 보완하여 사업자 및 협의기관에서 평가서 작성 및 검토시 계획의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작성,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세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항만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분야의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신규 계획 중 16개의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분야의 계획과 여전히 남아있는 신규계획의 경우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공원녹지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청 이전 신도시개발 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 기본계획, 새만금사업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연안정비 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혁신도시개발계획

본 매뉴얼은 계획수립기관 및 협의기관 담당공무원, 환경영향평가업 종사자,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평가서 작성의 내용, 각종 적용기준이나 내용 등이 모든 경우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행정상 확정 효력이나 쟁송시 법적 대응력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 제도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매뉴얼에 수록된 각종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은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나,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수행 시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해당 자료를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합니다.





## 제1편 제도개요

제 1 장 제도의 개요 및 추진경과 .....	3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6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중점검토 대상지역 .....	15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 .....	19

## 제2편 정책계획 검토방법

제 1 장 도시의 개발 .....	29
제 2 장 항만의 건설 .....	34
제 3 장 도로의 건설 .....	44
제 4 장 수자원의 개발 .....	52
제 5 장 관광단지의 개발 .....	65
제 6 장 산지의 개발 .....	82
제 7 장 특정지역의 개발 .....	102
제 8 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114

## 제3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제 1 장 도시의 개발 .....	125
제 2 장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188
제 3 장 에너지 개발 .....	207

## CONTENTS

제 4 장 항만의 건설 .....	212
제 5 장 도로의 건설 .....	235
제 6 장 수자원의 개발 .....	250
제 7 장 철도의 건설 .....	253
제 8 장 공항의 건설 .....	260
제 9 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66
제10장 개간·공유수면 매립 .....	276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	282
제12장 산지의 개발 .....	302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	312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	380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384
제16장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399

### 부록

### 참고자료

I.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	407
II.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	416
III.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	418
IV. 기타 참고자료 .....	435



# | 제 1 편 |

## 제도개요

제 1 장 제도의 개요 및 추진경과 .....	3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6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기 중점검토 대상지역 .....	15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 .....	19







## 제1장 제도의 개요 및 추진경과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 가. 도입 배경

- 그 동안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정책, 공급중심의 토지정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
  - 환경을 도외시한 국토개발로 대도시·산업단지 주변의 대기환경악화, 수질 오염원의 다양화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속한 증가로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훼손 등 환경오염이 심화
  - 특히 도시근교의 산발적 아파트개발로 인한 무계획적인 시가지확산(Urban sprawl), 경관이 수려한 산림·하천변의 음식·숙박·위락시설 등의 난립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
- 인간의 삶터 창출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개발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녹지잠식, 자연환경 훼손 등 국토환경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이에 반해 21세기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과 자연과의 공생,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임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개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토관리기반 구축이 필요
  - 지역환경용량, 생태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즉,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수적임

#### 나. 의의 및 필요성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 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 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경제적 손실 초래(동강댐, 사패산, 천성산 등)

##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능

### 가.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나.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실시계획단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다.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 3.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

- 우리나라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행단계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어려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대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선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옴
  - '93. 1 :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270호)”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 시행('94.4.1. 시행)
  - '99.12 :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제화('00.8.17. 시행)
  - '02.12 :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협약에 관한 3개 조항 신설('03.7.1. 시행)
    - \* 협의대상·절차, 협의이행 관리·감독,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 등
  - '05. 5 :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측면의 계획 적정성·입지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선('06.5.30. 시행)
    - \* 협의대상 확대, 대안설정,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스코핑(scoping) 도입,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재(변경)협의 규정 신설 등
  - '11. 7 :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12.7.22.시행)
    - \*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등
  - '16. 5.29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16.11.30, '17.5.30 시행)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예외근거 신설 등
  - '16.11.2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16.11.30, '17.5.30 시행)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9개 제외, 32개 신설, 도시·군관리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변경 등
  - '17.11.28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18.11.29 시행)
    - \* 의견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의견 재수렴 절차 마련,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의 반려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절차 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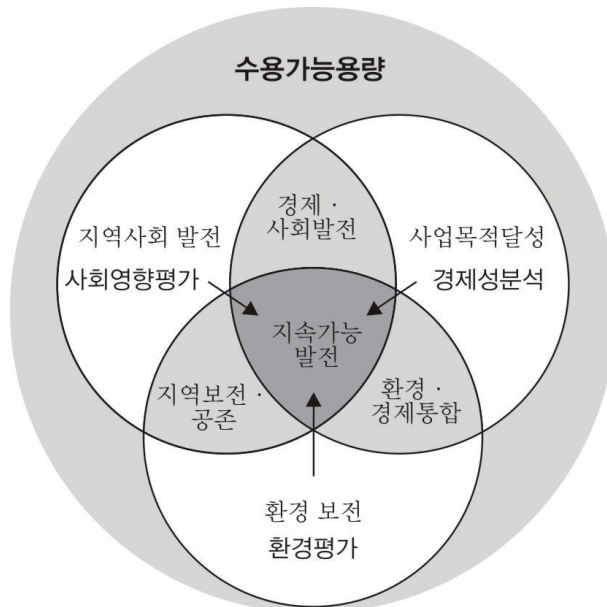


## 제2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법 제2조)
-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단계의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수립 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
- 계획·의사결정권자·공중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로서 지속가능한 대안의 모색과정이며, PPP에 환경영향을 통합해 평가하는 의사결정수단(Francois B. '01)



## 2. 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동향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EU 27개국이 이미 시행중이며,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도 도입
  -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의정서(SEA Protocol)에 35개국 서명
- UN, EU, IAIA, OECD 등이 국제적 공유를 통하여 유사한 형태로 발전 하였으며, 각 국제기구별 SEA의 틀은 본질적으로는 동일

구 분	시 기	주 요 내 용
시 초	1970	○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EIA) 도입(국가환경정책법, NEPA) ※ EIA 대상에 정책, 계획도 포함되어 SEA 개념 도입
개념형성	1970~ 1989	○ 미국의 NEPA법에서 시작,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프로젝트 수준의 전략환경평가 도입
제 도 화	1990~ 2000	○ 1992년 리우회의의 아젠다 21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도화 ※ 환경성검토제도 도입(1999)
확 장 기	2001~ 현재	○ 2000년대 이후 국제적인 공유 틀이 확정되어 UN, EU, WB, ADB, IAIA 등에서 지침서를 제정, 홍보하고 있음 - 2001년 EU는 SEA지령을 제정하고, WB에서 SEA 의무화 - 2003년 ADB도 차관제공시 SEA를 의무화 - 2004년 UN은 EIA와 SEA의 연계평가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 - 2006년 OECD는 SEA 지침서를 발간

##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 “정책계획”이란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개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가. 정책계획

○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9개 분야 33개 계획)

구 분	근거 법령	정 책 계 획	계획수립 주기	계획기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가. 도시 개발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10년	2015-2024	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5년	2015-2019	5년
나. 항만의 건설 (2)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10년	2011-2021	5년
		연안정비기본계획	10년	2010-2019	5년
다. 도로 건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년	2001-2020	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0년	2007-2026	변경시
라. 수자원 개발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 기본계획	10년	2011-2020	변경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10년	2016-2025	5년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0년	2012-2021	5년
	하수도법	유역하수도정비계획	20년		5년
	하천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년	2001-2020	5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5년	2014-2018	변경시

구 분	근 거 법 령	정 책 계 획	계획수립 주기	계획기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마. 관광 단지의 개발 (6)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10년	2012-2021	변경시
		권역별관광개발계획	5년	2017-2021	변경시
	온천법	온천발전종합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10년		5년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	10년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바. 산지 개발 (6)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기본계획	5년	2012-2017	변경시
	산림기본법	산림기본계획	20년	2018-2037	변경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0년	2018-2027	변경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촌진흥 기본계획	10년	2018-2027	변경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국임도기본계획	10년	2011-2020	변경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진흥계획	5년	2018-2022	변경시
사. 특정 지역 개발 (3)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필요시		변경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필요시		변경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아. 폐기물 등 (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10년	2012-2021	변경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10년	2017-2025	변경시
자. 에너지 개발 (1)	전기사업법	전력수급기본계획	2년		변경시

※ 위 표의 계획수립주기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계획 협의시 확인

※ 협의기관에서는 협의시 아래사항을 협의의견으로 제시 필요

- 계획기간이 있는 경우 계획목표년도(계획기간 중 최종년도) 변경시 새로운 계획으로 보아 신규 협의
-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가 있는 계획의 경우 재검토 시, 계획의 주요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 또는 해당 법령의 조문 등 명시)을 변경시(필요할 경우) 협의기관 장의 의견을 들도록 명시



**나. 개발기본계획 : 16개 분야 84개 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중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구 분	근 거 법 령	개 발 기 본 계 획	계획수립 주기	계획기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가. 도시 개발 (1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필요시		변경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필요시		변경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10년	시도별 다름	5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부문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구 분	근 거 법 령	개 발 기 본 계 획	계획수립 주기	계획기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나. 산업 입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별표 20 제1호 자목)	필요시		변경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필요시		변경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치지역지정	필요시		변경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협동화실천계획	필요시		변경시
다. 에너지 (1)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라. 항만 건설 (6)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어촌·어항법	어항의 지정,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항만법	항만기본계획	10년	2011-2020	5년
		항만재개발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마. 도로 건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로법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년	시도별 다름	변경시
바. 수자원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사. 철도 건설 (2)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철도건설법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아. 공항 건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항공법	공항개발기본계획	5년		변경시



구 분	근 거 법 령	개 발 기 본 계 획	계획수립 주기	계획기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자. 하천 이용 (2)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0년	시도별 다름	5년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10년	시도별 다름	5년
차. 매립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10년	사업별 다름	5년
카. 관광 단지 개발 (6)	관광진흥법	관광지등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온천법	온천공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필요시		변경시
타. 산지 개발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 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	5년		변경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필요시		변경시
파. 특정 지역 개발 (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10년	시도별 다름	변경시
	농어촌정비법(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생활환경정비계획	5년	시도별 다름	변경시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	특구의 지정, 특구육성 종합계획, 특구관리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서개발 촉진법(1)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석탄산업법(1)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 진흥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구 분	근 거 법 령	개 발 기 본 계 획	계획수립 주기	계획기간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행복도시특별법(1)	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특별법(1)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1)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필요시		변경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	광역시설계획	필요시		변경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1)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변경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필요시		변경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	개발구역의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필요시		변경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및지원특별법(1)	혁신도시 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	필요시		변경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1)	개발구역 지정	필요시		변경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1)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필요시		변경시
하. 체육 시설 (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필요시		변경시



구 분	근 거 법 령	개 발 기 본 계 획	계 획 수 립 주 기	계 획 기 간	타 당 성 등 재 검 토 주 기
거. 폐기물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필요시		변경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기본계획	5년	2017-2021	변경시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10년	2018-2027	변경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필요시		변경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 계획	필요시		변경시
너. 국방 시설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필요시		변경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 등의 지정	2년		변경시

※ 위 표의 계획수립주기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계획 협의시 확인

※ 협의기관에서는 협의시 아래사항을 협의의견으로 제시 필요

- 계획기간이 있는 경우 계획목표년도(계획기간 중 최종년도) 변경시 새로운 계획으로 보아 신규 협의
- 타당성 등 재검토 주기가 있는 계획의 경우 재검토 시, 계획의 주요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 또는 해당 법령의 조문 등 명시)을 변경시(필요할 경우) 협의기관 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 다. 기타 행정계획

-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 새만금사업촉진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등
- ※ 이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

## 제3장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중점검토 대상지역

## 1. 검토방법

- 중점검토 대상지역이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환경훼손 우려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을 말하며,
  - 환경훼손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일부 지역의 제척, 원형보전,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상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부동의 의견을 제시
- 동 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입지특성과 개발유형, 개발 규모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2. 중점검토 대상지역

- ①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계획·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 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지역(예 :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변구역, 지하수보전 구역 등)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②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 생태자연도 I 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II 등급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도시지역은 3등급 이상 지역),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도시지역은 4등급이상)으로서 급경사지(경사도 20°) 이상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의 주변 지역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예정지 포함)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예정지 포함), 자환경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기타 타법에서 보호지역, 별도관리지역 등으로 설정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우수한 자연생태계 등의 보존을 위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의 지역 중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지점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주변 지역
  -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겨울철 철새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전국내륙습지 조사지역, 전국자연동굴 생태계조사지역, 무인도서 조사지역, 전국해안사구 생태계조사지역, 전국하구역 생태계조사지역, 전국자연경관 조사지역 등
  -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 ※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2007~2009, 국립환경과학원) 참조
-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 경관·역사문화·고유 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 산지 내 개발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 면적사업(택지, 관광지, 산업단지 등)은 산림지역의 5~6부 능선(도시지역 5부 능선, 산지·구릉지 6부 능선) 이상 지역
- ③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이용 시 발생 하·폐수, 오염원의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방류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수질환경기준 달성에 지장이 있는 지역
    - 다만, 고도처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km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sup>m</sup>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 ※ 상수원 및 취수원과 관련한 집수구역으로서 발생 오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km 이내인 지역



- 공장 또는 산업단지 이외의 시설인 경우 : 유효저수량이 30만 $m^3$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100m 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관리구역은 제외

**< 관련 용어 >**

- 집수구역 :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 유하거리 :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

- ④ 환경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개별공장의 난립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 기존의 산업단지, 개별 공장의 밀집 입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으로서 추가적인 입지로 증가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환경오염의 심화가 우려되는 지역
  - 계획된 산업단지 등이 아닌 일정한 지역에 개별공장들이 산발적으로 밀집되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접 지역에 대한 추가 개발 등으로 자연생태계의 훼손, 난개발 등이 예상되어 계획개발 유도 및 입지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공장, 창고, 소규모 아파트 등 개별 시설물 입지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의 심각한 부조화가 우려되고 향후 연접 개발 등 추가적인 개발 수요의 발생 등으로 자연생태계의 훼손, 난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
  -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도로구역경계선)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0~30m 이내인 지역
  - 기존의 산업단지, 개별 공장의 밀집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시설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환경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지역
- ⑤ 기타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의 발생 우려가 높아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4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

## 1. 제도개요 및 업무절차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스크리닝 도입(실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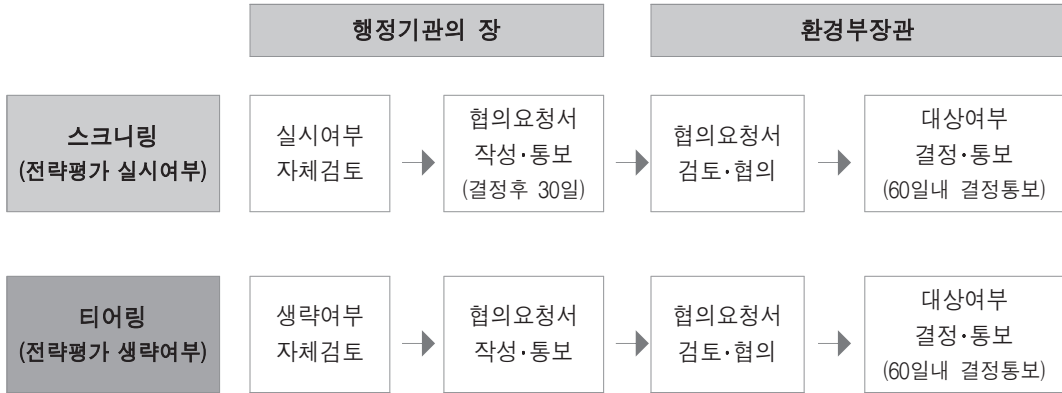
- 2016.11.30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신설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 환경영향의 중대성,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티어링 도입(생략여부)

- 2016.11.30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신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업무흐름도 >



※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 통보시 제출서류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생략)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2. 관계전문가 의견서

다. 업무절차

스크리닝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검토)	티어링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여부 검토)
<p>&lt;행정기관의 장&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관계획 및 실시여부를 검토한다. (성격, 목적, 계획의 내용 등)</li> <li>② 환경성을 고려한다(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환경영향의 중대성</li> <li>- (2단계) 환경성평가의 가능성</li> <li>- (3단계)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li> </ul> </li> <li>③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li> <li>④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를 작성한다.</li> <li>⑤ 협의요청서를 작성·통보한다(별지1)</li> </ol> <p>&lt;환경부장관&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협의요청서를 검토·결정 통보한다.</li> </ol>	<p>&lt;행정기관의 장&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관계획 및 생략여부를 검토한다. (성격, 목적, 상·하위 계획과의 위계관계 등)</li> <li>②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동일한 평가)을 검토한다.</li> <li>③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li> <li>④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를 작성한다.</li> <li>⑤ 협의요청서를 작성·통보한다(별지2)</li> </ol> <p>&lt;환경부장관&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협의요청서를 검토·결정 통보한다.</li> </ol>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스크리닝)

### < 결정 기준 >

- ☞ 1) 환경영향의 중대성 2) 환경영향의 평가 가능성
- 3) 환경적영향이 상당한 하부 계획 또는 개별사업에 미치는 영향

※ 여기서 기준 2)는 기준 1)에서 제시한 환경적 영향의 중대성 정도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 기준 3)은 기준 2)에서 대상계획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Action이 명시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기준임.

### <1단계> : '환경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한다.

-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에 상관없이 환경적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PPP\*는 SEA 평가대상에 해당

\*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 환경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PPP의 경우 평가의 실익 보다는 평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환경적 영향으로 발생할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SEA 평가대상으로 고려
- 농림, 수산, 에너지, 산업, 수송, 수자원 및 폐기물관리, 통신, 관광, 지역계획 등 평가 대상 분야의 주요 계획은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구분
- 다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Policy) 성격을 갖는 계획이거나 파급영향 정도가 불분명한 계획들은 구분하여 '평가가능성'이나 '하위계획 구속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점검

### <2단계> : '환경영향평가 가능성'을 고려한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평가는 가능하나 그 영향의 정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환경적 영향이 불분명하나 평가할 수 있는 경우 Screening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
- 계획들에 대해 참여전문가들의 집중 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점검



<고려대상 계획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Action이 명시되지 않은 정책 또는 전략 수준의 계획으로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

- 평가자체가 어려운 계획으로 분류된 경우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 3 즉 해당 계획과 하부계획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재검토

### <3단계> : ‘환경적영향이 상당한 하부 계획 또는 개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평가 자체가 어려운 계획 중 관련된 계획이나 개별사업들이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 SEA 대상 필요성 여부를 재점검
  - 해당 계획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계획·사업들에 대해 다음 사항 등을 규정할 경우 SEA 평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
- 다만, 비전이나 전반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등 구체성이 적어 평가가 어렵고 환경영향이 큰 하부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구속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의 실익이 적고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 차원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결정 방법 >

-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별(1,2,3단계)로 검토하여야 함
  - 1.2.3단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 신청방법

-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 대상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별지1호 서식으로 작성 제출

###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생략여부 신청 및 결정 방법(티어링)

#### ○ 중복 대상계획 결정대상

##### < 결정 원칙 >

- 중복해소를 위해 티어링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 상위계획, 시간적으로 앞선 계획에 하는 것이 원칙임

- ① 다른 SEA 또는 EIA를 통해 이미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 ② 개발기본계획과 EIA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 ③ SEA와 EIA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
- ④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 ⑤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 작성요령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
- '동일항목'에 대한 '동일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 ○ 신청방법

-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계획에서 실시한 내용(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별지2호 서식)으로 작성 제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 11. 30.>

## 행정기관명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소관계획명	
	계획의 성격	
	계획의 수립목적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주기	
	계획의 범위	
고려 사항	환경영향의 중대성	[ ] 상당 [ ] 불분명 [ ] 미미
	환경성평가의 가능성	[ ] 가능 [ ] 어려움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 는 영향	[ ] 있음 [ ] 없음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이유		
작성자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작성자) ○ (책임자)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 11. 30.>

## 행정기관명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소관계획명	
	계획의 성격	
	계획의 수립목적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주기	
	계획의 범위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위계관계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작성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작성자) ○ (책임자)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 제 2 편 |

## 정책계획 검토방법

제 1 장 도시의 개발 .....	29
제 2 장 항만의 건설 .....	34
제 3 장 도로의 건설 .....	44
제 4 장 수자원의 개발 .....	52
제 5 장 관광단지의 개발 .....	65
제 6 장 산지의 개발 .....	82
제 7 장 특정지역의 개발 .....	102
제 8 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114





## 제1장 도시의 개발

### 1.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제3제1항
  - 담당부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 수립권자 : 환경부
- 계획수립기간 : 5년
- 대상지역범위 :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 ①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육내시설로 한정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 실내주차장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신축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③ 대중교통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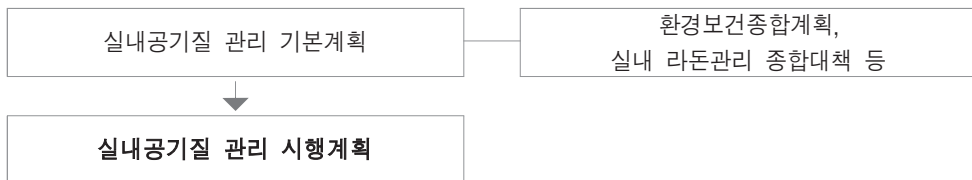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 용어 정의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 대중교통차량 :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

- 오염물질 :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환기설비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
- 공기정화설비 :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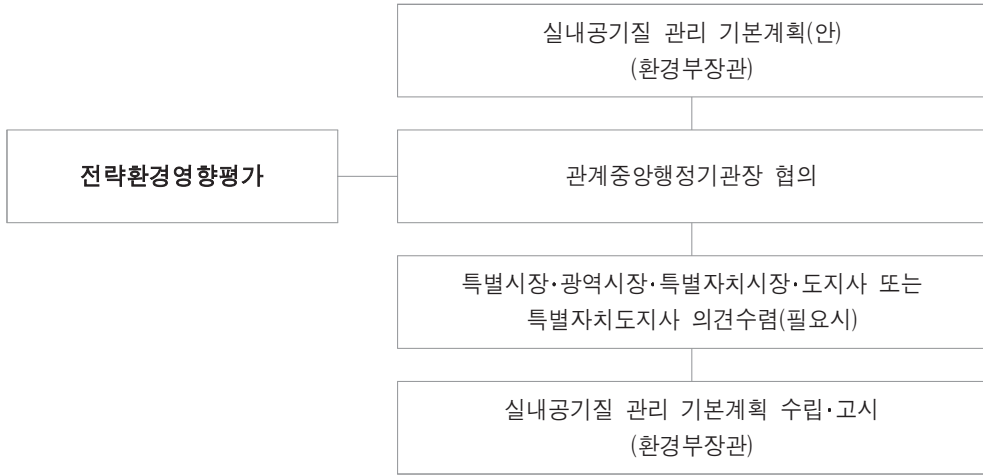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제3제1항에 의한 절차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제기준과 환경정책, 시민의 쾌적한 환경 질 욕구 등에 부합하도록 실내공기 오염물질 선정 및 기준이 마련되었는지를 검토
  - 기후변화, 대기오염, 화학물질 사용, 환경성질환 증가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능동적, 선도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리기준 및 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법과 상호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실내오염물질 별·시설군별 상이한 오염특성을 고려한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 등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실내오염 취약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및 방안이 차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를 검토
  - 실내공기질 관리목표에 대해 추진전략이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추진전략 상호간에 상충되는지를 검토

- 실내공기질 관리목표에 대해 추진전략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달성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검토
- 대규모(영화관·전시장·호텔 등) 및 소규모(주점·독서실, PC방 등) 미적용 시설에 관한 실내공기 기준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지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
- 지하철역사 등 실내공기질 초과 및 초과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와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가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실내공기질의 기준 및 관리목표가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석면과 라돈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이 적정한지와 실효적인지의 여부를 검토
- 실내오염물질 관리목표와 실내공기질 관련 지표, 관리방안 등이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실내오염물질의 투지계획이 시급성과 실효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제2장 항만의 건설

### 1. 연안통합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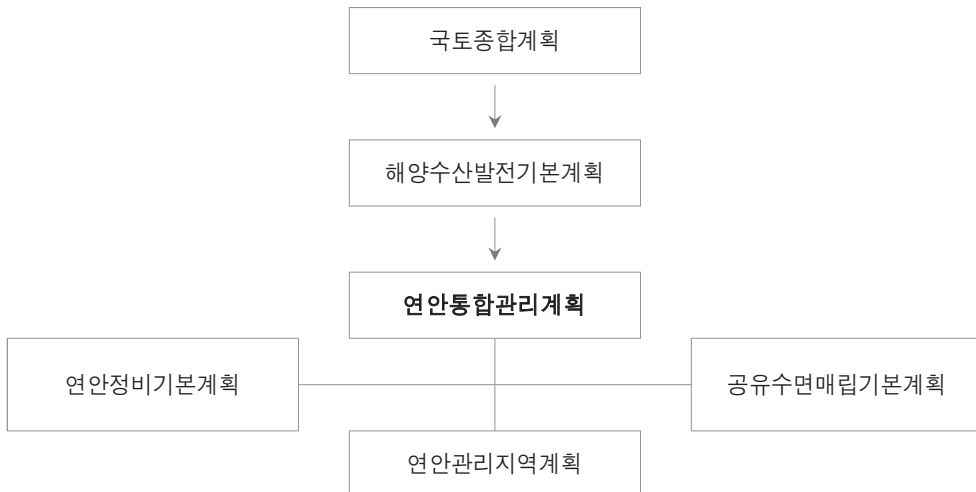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
- 계획수립기간 : 10년
- 대상지역범위 : 「연안관리법」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연안
- 용어 정의(「연안관리법」 제 2조)
  - 연안 :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 연안해역
      - 가.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나. 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 외측한계까지의 사이)
    - 연안육역
      - 가. 무인도서
      -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 연안침식 :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



- 연안정비사업 :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사업
- 연안용도해역 :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 연안해역기능구 :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 연안침식관리구역 :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 자연해안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 나. 관련 계획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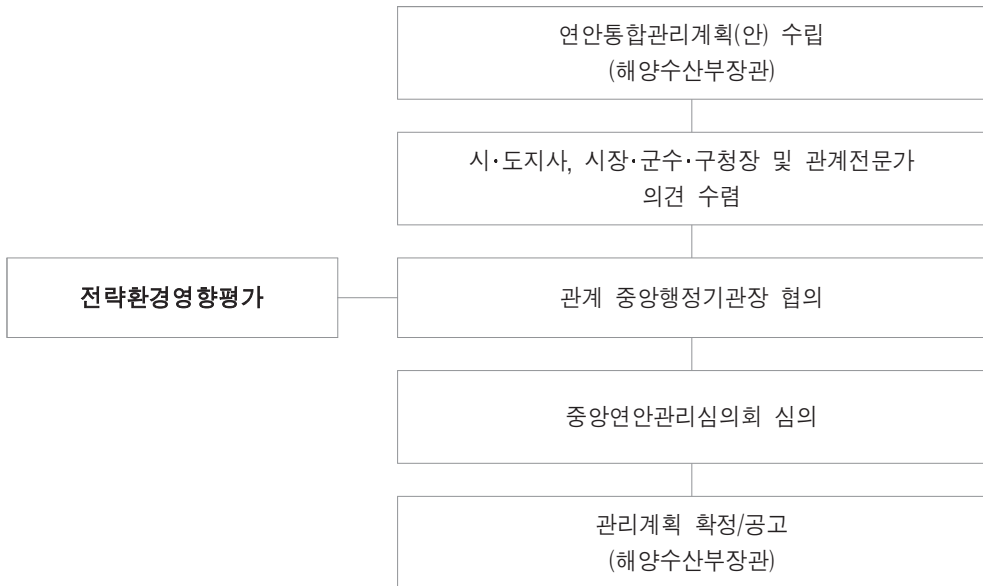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연안의 범위
- 계획 수립 대상 지역
-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기본관리 방향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관리 방향
-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연안의 범위 및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선정 시 고려사항
      - 행정구역 및 지형
      -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
      -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 범위
      -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연안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절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연안관리에 대한 주요 목표와 지표,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
  - 8개 연안별(인천·경기연안, 충남연안, 전북연안, 전남연안 등)의 비전 및 목표 등에 대하여 연안환경보전 및 복원, 재해방지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하여서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



### ○ 수단·방법

-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 경관이나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대안 설정과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에 대한 권역별·지역별 관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시기·순서

- 연안의 훼손지역 복원과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 등 연안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추진과제의 목표연도와 투자 우선 순위가 적정한지를 검토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물세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및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환경 보전, 항만·산업단지·도시·해양자원 개발, 수산자원이용 등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연안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계획의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이 상호 상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연안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이 3대 핵심 생태축인 도서·연안 생태축과 연안지역의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
- 8개 연안별(인천·경기연안, 충남연안, 전북연안, 전남연안 등)에 대한 연안개발 수요와 개발 유형, 연안의 자연환경 및 훼손 정도 등 개발수요와 연안환경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안별 기본목표와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의 심화에 따른 연안지역의 국가기반시설의 안전도, 취약성 평가, 다양한 적응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 연안 보호구역 지정 면적 확대, 보호구역 관리실효성 제고, 해양보호대상 생물종과 서식지의 체계적 보호, 훼손된 해역의 환경개선과 생태계 복원 등 연안의 생태 및 경관, 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 반폐쇄성 해역을 중심으로 한 용존산소 농도 감소와 유기물 오염도 증가, III 등급 해역의 증가 등 해안오염에 대하여 입지해안의 특성(동해안, 남해안, 서해안)따라 환경부하와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해안보전 및 저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는지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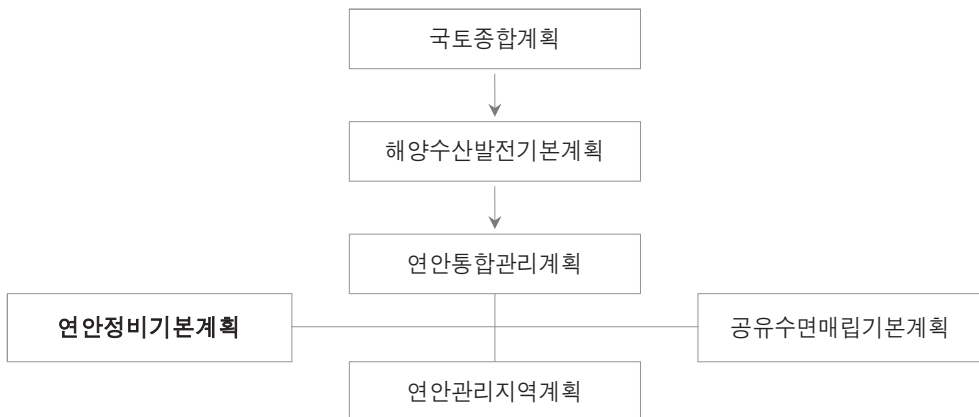


## 2. 연안정비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
- 계획수립기간 : 10년
- 대상지역범위 : 「연안관리법」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연안

### 나. 관련 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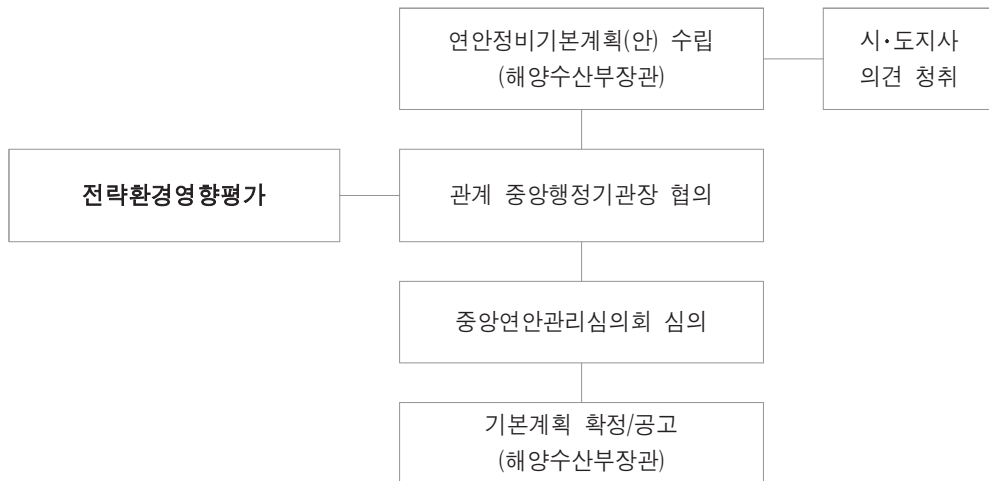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연안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절차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연안관리에 대한 주요 목표와 지표,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등에 대하여 연안환경 보전 및 복원, 재해방지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



### ○ 수단·방법

- 관할 연안의 일부를 계획대상 연안을 설정할 경우 연안의 환경 및 경관, 하천의 수계, 조류, 해저지형, 연안해역의 개발수요와 이용현황, 육상에서의 오염원 확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
- 관할 해안에 해안현황도와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 지역연관리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시기·순서

- 연안의 훼손지역 복원과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 등 연안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추진과제의 목표연도와 투자 우선 순위가 적정한지를 검토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물환경 관리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계획 등의 국가계획과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광역관광개발계획, 광역지자체 관광개발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해당 권역에 대한 기본목표와 관할 연안 환경·생태계와 영안이용·개발,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대상 연안의 관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다양한 추진전략이 상호 상충되고 있는지를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연안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이 3대 핵심 생태축인 도서·연안생태축과 연안지역의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의 심화에 따른 연안지역의 국가기반시설의 안전도, 취약성 평가, 다양한 적응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 연안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와 다양한 자연자원, 해양생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안용도해역제(이용·특수·보전·관리연안)가 적정하게 지정되었는지를 검토. 특히, 이용연안해역과 관리연안해역 등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연안환경의 잠재적 훼손을 야기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 이용·특수·보전·관리해역 유형별로 지정하는 연안해역기능구(항만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해양수질관리구, 재해관리구, 산업시설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등)가 연안의 개발유형과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정되었는지 검토
- 연안 보호구역 지정 면적 확대, 보호구역 관리실효성 제고, 해양보호대상 생물종과 서식지의 체계적 보호, 훼손된 해역의 환경개선과 생태계 복원 등 연안의 생태 및 경관, 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 이용연안해역과 관리연안해역에 대한 다양한 항만과 관광, 산업 등의 기능구 설정 및 추가 지정이 해당 연안의 환경부하와 환경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



## 제3장 도로의 건설

###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
- 계획수립기간 : 5년
- 대상지역범위 : 전국
- 용어정의
  - 교통 :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
  - 물류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등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 공공교통시설 :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
  - 교통체계 :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 국가기간교통시설 :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
    -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나.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 국가기간교통망 :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안전·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
  - 교통조사 :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
  - 교통물류거점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
    -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 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연계교통시설 :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 환승시설 :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
  - 환승센터 :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



-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환승지원시설 :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 복합환승센터 :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
  -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 환승센터
  -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 환승센터
- 지능형교통체계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교통기술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과 같은 법인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나. 관련 계획체계

-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항공법」 제89조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
-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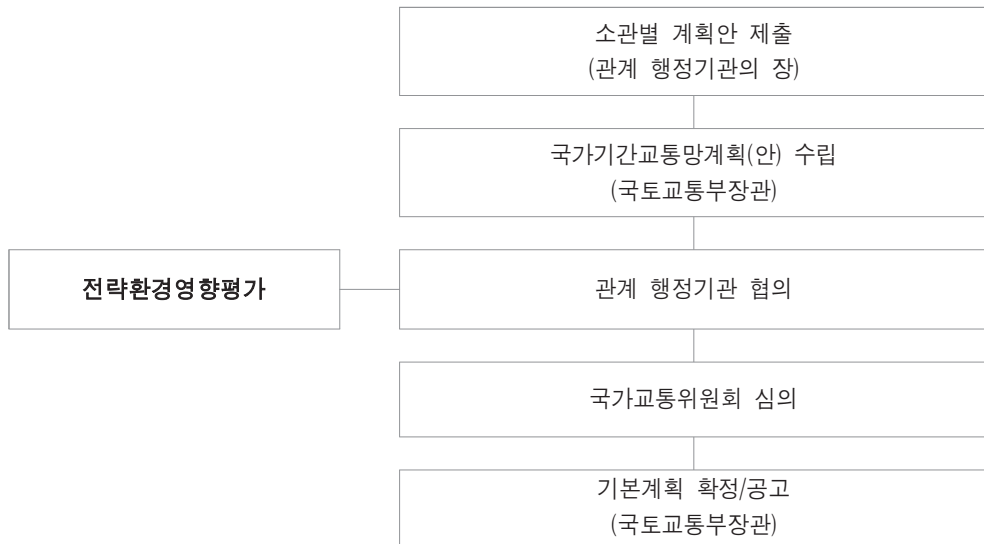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및 연계수송체계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의한 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주요 목표와 지표,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계획의 비교·검토
- 수단·방법
  - 글로벌화, 환경 및 에너지 문제, 장기적 교통체계,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 교통 수단별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비중에 대한 대안을 설정
  - 다양화, 복잡화, 연쇄화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 양적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 등 질적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수요·공급

- 교통수단별 한계용량과 수송 분담율, 교통 서비스, 경제성장, 국토공간구조 개편,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 수요 예측과 공급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시기·순서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 전략에 대해 수송수요와 부족자원 등을 감안한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등 국가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교통기반시설의 확보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교통 체계의 실현 등의 계획의 목표와 이의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이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이 상호 상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전국의 간선도로망 및 간선철도망이 광역적 생태·녹지축,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등의 생태적 연속성을 단절하는지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등 각종 환경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 교통망 구축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생태서식지 지형 및 생태축, 자연경관, 수자원 등을 보전하고 환경보호 등 질적 교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친환경적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교통수단별 교통문제와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오염물질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수송 분담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교통 수단별 연계성 강화, 교통수요관리 등의 질적 교통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수단별 합리적으로 수요가 예측되고 적정하게 공급계획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 목표연도의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질, 생태단절, 서식지 훼손 등의 환경질의 변화가 현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감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 개인 승용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간선철도, 광역전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



## 제4장 수자원의 개발

### 1. 물 재이용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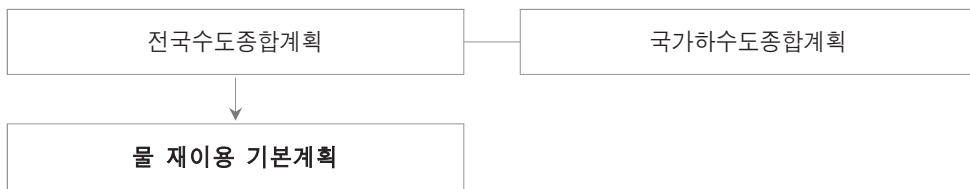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담당부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립권자 : 환경부
- 계획수립기간 : 10년
- 대상지역범위 : 전국
- 용어정의
  - 물의 재이용 :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정,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물 재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중수도 :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 하수처리수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 폐수처리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
  - 발전소 온배수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 제외)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
- 온배수 재이용시설 :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온배수 재이용사업 :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

## 나. 관련 계획체계

-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절차
  -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물 재이용에 관한 주요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계획의 비교·검토
  - 목표 년도의 필요한 물수요 및 공급에 대하여 수자원 부존량 및 물 이용현황, 수자원이용의 변화, 물이용 전망 등을 토대로 수자원 이용(생활·공업·농업·유지용수)별 재이용의 비율에 대한 다수의 목표량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검토

## ○ 수단·방법

- 목표연도의 빗물 재이용, 중수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대체수원 확보, 기술개발 등의 수단·방법의 대안을 설정하고 경제성과 실효성, 효율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수요·공급

- 물 재이용을 위한 빗물 재이용, 중수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목표연도의 목표량이 단순 과거의 증가추세에 의한 산정이 아니라, 국가환경시책과 장래 인구 변화, 사회적 물 수요 및 공급 여건,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시기·순서

- 빗물 재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에 대한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에 대하여 실효성과 효율성, 공적 및 사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기후변화협약대응의 종합대책,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등과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리우 환경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이 지속가능한 대체용수, 합리적 물이용, 순환형 물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
-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각의 추진전략이 구체성과 실효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물의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물 확충뿐만 아니라 대체수원 확보와 물 순환형 도시체계, LID 적용 등 공간에 적용가능한 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의 목표연도 재이용 목표량을 고려하여 각각의 시설 규모 확대와 재이용 의무대상시설 확대, 재이용 기술개발, 재이용 시설 기준 등의 공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강수의 계절적 변화와 지역별 물 과부족 현황을 고려하여 물 수요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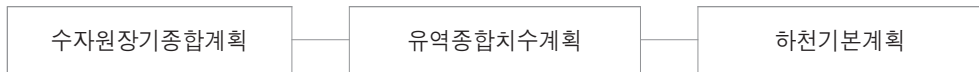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하천법」 제23조제1항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
- 계획수립기간 : 20년
- 대상지역범위 : 전국(수자원단위지도를 기초로 21개의 대권역 및 제주도를 포함한 117개 중권역과 기타·도서지역)
- 용어정의
  -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
  - 하천구역 :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
    - 가. 제방·호안·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 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 제외)·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 하천관리청 :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하천공사 :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
- 유지·보수 :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
- 수문조사시설 :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하천수 :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 홍수재해의 방지계획
-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
-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의 물 확보 방안
-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하천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목표와 지표,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계획의 비교·검토
    - 용수확보를 위해 댐을 건설할 경우 환경훼손과 수몰에 따른 주민갈등, 용수부족 등을 No Action과 함께 대안을 평가
- 수단·방법
- 수자원장기종합발전계획의 물수급계획과 치수계획, 하천환경계획 각각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단, 계획 중인 최신 기법 등을 최대한 발굴하여 대안을 설정
    - 대안별로 환경성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수요·공급
- 경제성장, 구조변화, 소비패턴, 재활용 등을 고려하여 계획 년도의 필요한 물수요 및 공급에 대한 대안을 설정
- 시기·순서
- 물공급계획에 대한 각각의 수단에 대해 단·중·장기와 순서 등에 관한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하천유역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과 댐건설종합계획, 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계획과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정책목표의 추진전략이 안정적 수자원 확보, 지속가능한 수재대 대응, 건강한 수환경의 보전과 정비, 통합관리, 물산업 육성 등을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검토
- 수자원종합계획의 물이용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각각에 대한 추진전략이 계획목표와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체성과 실효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다양한 사회적 환경 변화 반영,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새로운 용수 수요(위락·생태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공급 및 수요 능력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물 수요 및 공급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물 수요에 대한 공급의 수단으로 인공시설물의 확보보다는 수요 관리와 생태적 기법을 활용한 공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
- 물이용 종합계획이 물의 공급 및 수요 예측과 관리의 적정성과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치수계획이 홍수·침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 지역의 특성과 하천환경의 자연성 훼손 및 수질 오염, 수자원 확보와 관련한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 하천환경계획이 하천자연성 회복 및 수질 향상 정책과 주요 하천의 핵심지역 선정 및 관리, 하천 주변 개발에 따른 하천 생태 및 수질 오염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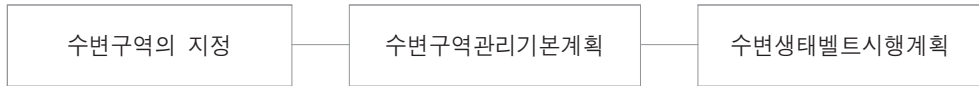
###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담당부처 : 환경부 유역총량과
- 수립권자 : 환경부
- 계획수립기간 : 5년
- 대상지역범위 : 한강수계
- 용어정의
  - 상수원 :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
  - 수도사업자 :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 오염부하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상수원관리지역 :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
    -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 관리청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절차
  -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계획의 비교·검토
- 수단·방법
  - 수변구역의 저조한 토지매수를 활성화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매수토지의 유형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방식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방법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성, 효율성 등을 검토

○ 시기·순서

-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수변구역 토지 매수에 대한 시기와 순서 등의 대안을 설정
- 수변구역 토지의 생태적 가치, 수질오염 저감 효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매수 우선 순위에 대한 대안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계획의 상위계획과 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수변구역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의 계획목표를 효율적·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과 토지매수의 다각적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수변구역 매수토지에 대한 수변생태벨트에 대해 조성지의 기존수종 및 주변영향, 경관, 수계별 특성, 생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향상, 복원 등의 수변생태벨트 관리유형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수변구역 매수토지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보전용지 등으로 설정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수변구역 매수토지에 대한 수질 및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되는 불법 토지이용, 폐기물 방치, 농작물 재배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 인접 지역의 오염물 유입 최소화와 매수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등을 토대로 수변구역의 오염원 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수변구역 토지 매수를 위한 우선순위가 생태가치와 수질보전, 경관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를 검토

## 제5장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개발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 수립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계획수립기간 : 10년 단위
- 대상지역범위 : 전국
- 용어정의
  - 관광사업 :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
  -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조성계획 :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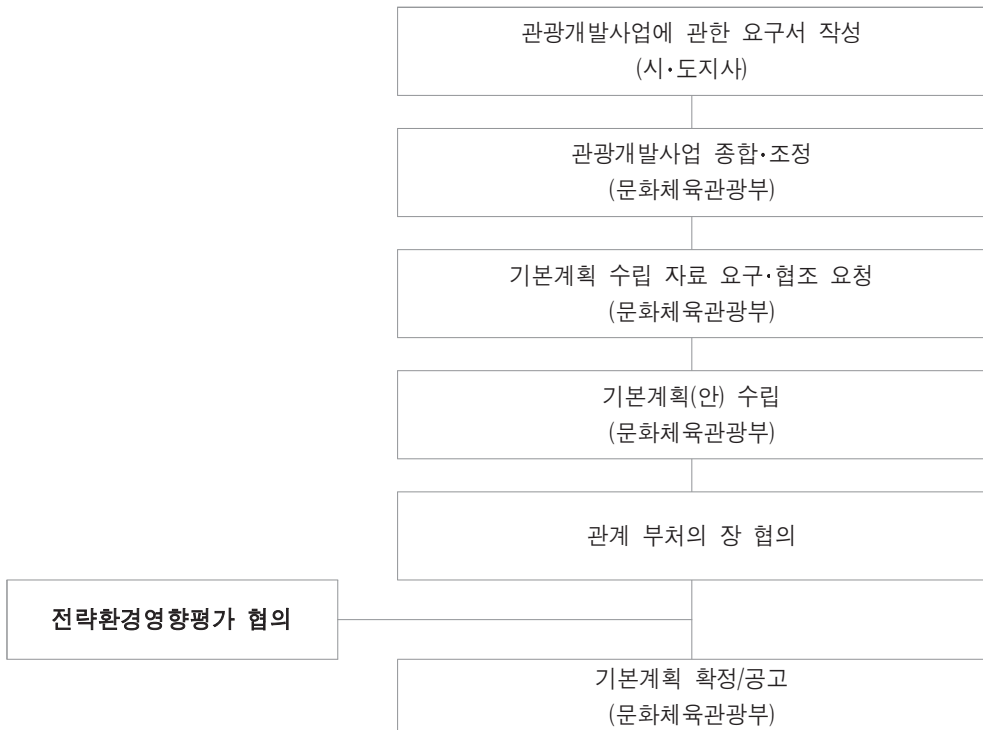
## 나. 관련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광개발의 관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관광권역 구상에 대한 대안
  - 16개 시·도, 지역행복생활권 등 변화하는 행정 위계를 반영한 다층적 지역 관광발전 전략을 도입하여 설정
- 관광 수요에 대한 대안
  - 관광수요의 예측은 관광개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관광수요 추정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
  - 국내·외 관광행태 동향을 바탕으로 한 향후 관광행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권역의 배분 및 계획수립방향 다수 설정
  - 수요 대안은 고수요와 기준수요, 저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환경영향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추진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
-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전략별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선별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진사업을 감축하는 등 최적안 선정

## 바.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등 국가환경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검토
  - 생태축의 중요성, 우수생태환경보전지역의 보전 및 자연자원의 특성과 환경적 수용력을 고려한 생태관광계획 수립 여부 검토
  -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관광 관리체계 구축 여부 검토
  - 생태계 복원 및 생태탐방로 연계 추진 등 친환경 선형관광루트 구축 여부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문화 및 관광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국가 관광개발의 비전과 방향 및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방향 검토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전략계획 및 추진방안을 검토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의 적정 설정 여부 검토
  - 권역별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관광 공간계획 및 관광소권별로 연계된 관광벨트 구축 여부 검토
  - 전국 관광수요 및 공급, 지역별·계절별 관광공급능력 등의 분석을 통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여부 검토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관광행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를 검토

## 사.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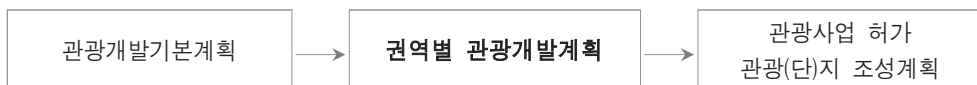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09. 10,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2011. 12, 문화체육관광부
- 녹색관광 발전전략 수립, 2012. 12, 문화체육관광부
  - ※ 당해 계획의 내용이 환경정책과의 상관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자가 체크 리스트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 수립권자 : 시·도지사
- 계획수립기간 : 5년 단위
- 대상지역범위 :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관광 권역
- 용어정의
  - 관광사업 :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조성계획 :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나. 관련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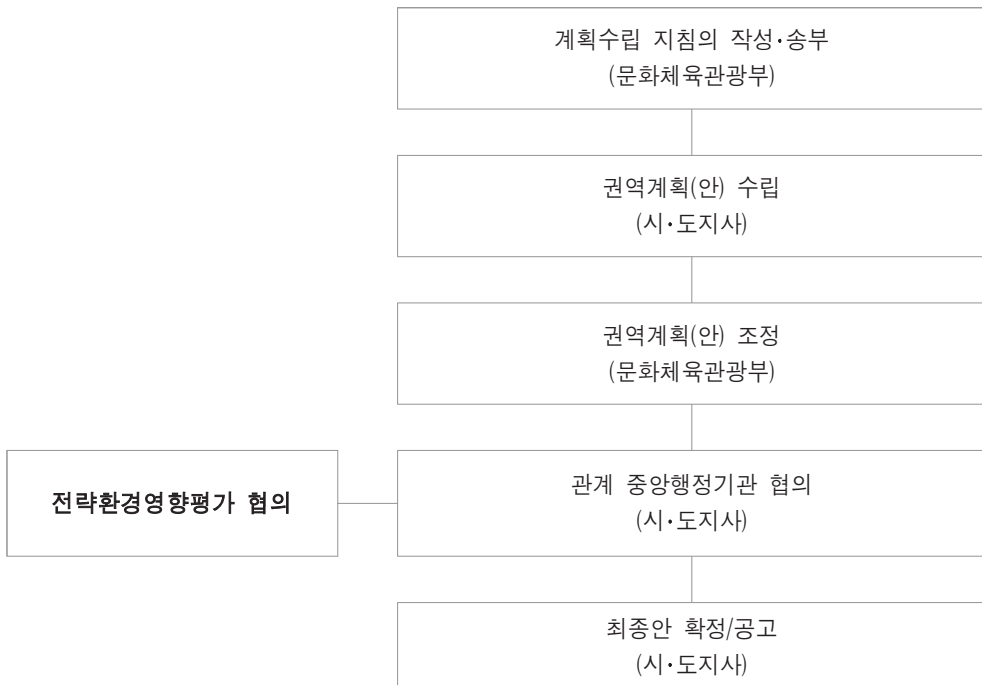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안
  - 온천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과 중복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설정
- 입지의 환경영향성을 고려한 입지 대안
  -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확인하여 입지의 부정적 환경영향이 과중한 지역의 사업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대안
  - 기존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평가에 의해 조성·정비·보완 계획 등을 대안으로 검토
  - 관광수요 및 공급 등 관광수급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공급량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바.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등 국가환경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검토
  - 권역 내 생태적·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생태관광계획 수립 여부 검토
  - 권역 내 토지이용계획, 지역민원 현황 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이루는 친환경적 관광계획 수립 여부 검토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관광자원개발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문화 및 관광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관광개발기본계획상의 권역별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관광 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검토 및 권역별 전략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관광소권별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세부단위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을 검토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관광소권의 적정 설정 여부 검토
- 관광소권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관광 공간계획 및 관광소권별로 연계된 관광벨트 구축 여부 검토
- 관광소권별 관광개발계획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관광행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를 검토
- 권역별 관광수요 및 공급, 지역별·계절별 관광공급능력 등의 분석을 통한 관광수급계획을 고려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여부 검토

## 사. 참고사항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2011. 12, 문화체육관광부
- 녹색관광 발전전략 수립, 2012. 12, 문화체육관광부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조정방안, 2010. 04,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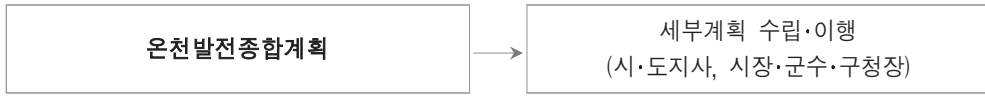
### 3. 온천발전종합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온천법」 제3조의 2
  - 담당부처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수립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 계획수립기간 : 해당없음
- 대상지역범위 : 전국
- 용어정의
  - 온천 :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온천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 $\text{NO}_3\text{-N}$ )는 10mg/L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Cl}_4$ )은 0.01mg/L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HCl}_3$ )은 0.03mg/L 이하
  - 보양온천 : 온천수의 온도·성분·이용시설·환경조건 등이 일반 단순 온천과 차별화된 온천으로 실버(Silver) 관련시설 및 종합레저타운, 기타 의학적 이용이 연계된 복합 온천단지로서 온도·성분 및 시설기준, 환경 조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9.]참조)
  - 온천 종사자 :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온천자원의 관측 : 온천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



## 나. 온천 개발 관련 계획 체계



※ 하위계획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보양온천의 지정, 온천도시의 지정, 온천 개발계획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정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안
  - 온천발전 종합계획은 온천개발 측면보다 온천진흥의 측면이 강한 제도적 계획이므로 부정적 환경영향을 식별하고 저감방안을 통해 계획 자체의 환경성을 제고시키는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



- 환경목표와의 부합성(연계성)을 고려한 대안
  - 세부추진과제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을 선별하고 저감방안을 통해 계획 자체에 환경성을 제고시키는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 종합계획,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검토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등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의 고려 여부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문화 및 관광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온천주변의 보전이 필요한 특수한 생태계, 녹지축 등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
  - 온천개발로 인해 하류 하천의 환경기준을 유지·달성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검토
  - 온천수 이용으로 인근 지역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온천발전을 위한 무리한 시설의 신설 및 확충계획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온천관광트랜드에 의거하여 검토



## 사. 참고사항

### ○ 기관별 지하수 관장범위 및 관련 법률

구분	관장범위	관련법률	관장업무
행정자치부	온천관리 등	○ 온천법 ○ 민방위기본법	○ 온천 개발 및 관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환경부	지하수 수질관리	○ 지하수법(환경부령) ○ 먹는물관리법 ○ 수도법	○ 지하수 수질기준 제정 ○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검사 ○ 먹는 샘물 및 상수원용 지하수 관리
국토교통부	지하수 수량관리	○ 지하수법 ○ 하천법 ○ 주택법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 하천 인접지역 지하수 조사 ○ 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용 관리	○ 농어촌정비법	○ 농·어업용 지하수 관리
국방부	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
교육부	학교시설	○ 학교보건법	○ 학교 음용수 수질관리
기획재정부	양조시설	○ 주세법	○ 양조용 용수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시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물놀이형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용 용수관리
보건복지부	위생시설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관련 용수 수질관리 ○ 목욕장 용수관리

### ○ 참고자료

- 2014 온천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4)
- 온천 전문검사지침(행정자치부, 2011)

## 4. 공원녹지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의 시장
- 계획수립기간 : 10년
- 대상지역범위 : 전국
- 용어정의
  - 공원녹지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 도시녹화 :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제외)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
  - 도시공원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시설 :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녹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절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제외)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녹지축과 생태계 우수 지역,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전의 기반이 되고 골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대안을 설정



- 국제기준과 국내 상위 계획상의 기준, 환경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피율,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의 서비스수준 등의 공원녹지 지표 목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
- 수단·방법
  - 공원녹지 지표 목표 달성과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보전을 위한 녹지의 보전 및 녹지확충, 녹지복원 등의 구체적인 수단·방법의 대안 설정
- 수요·공급
  - 계획 년도의 인구증가와 시민의 공원 서비스 욕구, 생활패턴,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관한 공급 대안을 설정
- 시기·순서
  - 생태적 중요성, 접근성, 도시공간구조,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녹지보전 및 복원, 확충 계획에 대한 시기·순서에 관한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 등 국가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도시림기본계획 등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계획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

- 이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관련법규(도시계획)와 자연환경(기상, 지질, 지형지세, 수문·수질, 재해, 지하수, 식생, 야생동물, 광역생태계, 생태기반), 인문환경(인구, 토지이용, 문화·역사자원, 공해발생 등), 공원녹지·녹화(공원, 녹지, 광장, 녹화현황, 녹피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공원녹지계획이 녹지보전 목적의 유사한 용도지역(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경관지구, 녹지보전지구 등), 하천구역, 기존의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
- 환경보전, 여가활동 및 이용, 경관향상과 지역별 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도시의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배치가 구상되었는지를 검토
-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호소나 습지, 산지, 동식물의 서식지 등 광역적으로 중요성이 큰 녹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를 검토



## 제6장 산지의 개발

### 1. 사방사업 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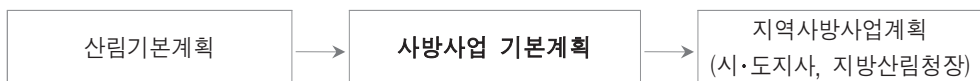
- 근거법률 : 「사방사업법」 제3조의2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산림청장
- 계획수립기간 : 5년 단위
- 대상지역범위 : 전국
- 용어정의
  - 황폐지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
  - 사방사업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 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
  - 사방지 :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업사업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 산사태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
  - 토석류(土石流) :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



## ○ 사방사업의 구분

-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야계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 나. 관련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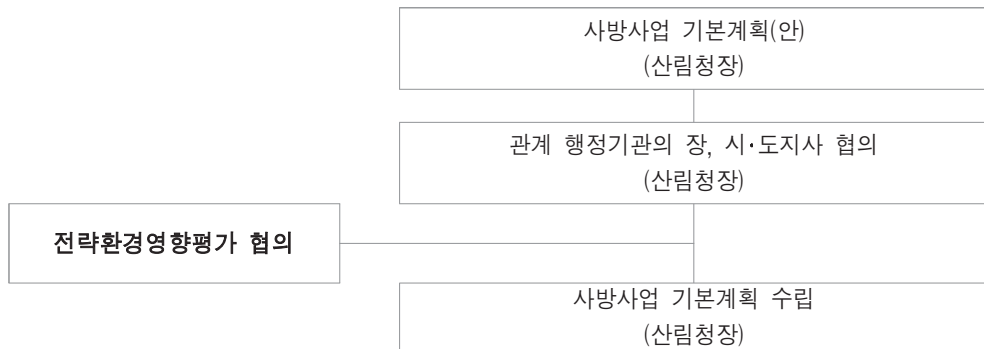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사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환경보전계획 및 국제환경동향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된 사방사업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설정하여 평가
- 기존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사회·문화·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출하고, 각각의 사방사업별(산지 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 보전 중기계획,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과의 부합성 검토

- 국가 환경정책과 사방사업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계획인지 여부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 정책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전체적인 기조와 세부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사방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적절히 연계, 반영하였는지 여부 검토
-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관련 계획인 산사태예방종합대책, 기후변화대응 재난 관리개선 종합대책 및 하위 계획인 사방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상호 연계되어야 할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하였는지 여부 검토
- 사방사업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이 환경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 되어져야 함.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서식지 보호, 생태우수지역 보전, 습지보호지역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보호 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이 계획에 고려되었는지 여부 검토
- 핵심생태축(백두대간, 도서연안 등)과 생태자연도 1등급 등 생태·녹지축 보전에 대한 내용이 계획에 고려되었는지 여부 검토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을 고려한 지침적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 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 등 사방사업별로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추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
- 경관자원 보전, 수환경, 토양환경, 해양환경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이 계획에 고려되었는지 여부 검토
-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방지 방안이 계획에 고려되었는지 여부 검토



## 사. 참고사항

-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 하여야 함.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타당성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 1. 타당성평가의 기준

사업의 종류		평가기준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방사업 대상지의 면적이 적정할 것</li> <li>○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li> <li>○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li> </ul>
산지 사방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li> <li>○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인근의 가옥·농경지·산업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일 것</li> </ul>
	산사태 복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일 것</li> <li>○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2차적인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식생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li> </ul>
산지 사방 사업	산지 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li> </ul>
	산지 복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의 건강·활력 및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li> </ul>
해안 사방 사업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li> <li>○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 것</li> <li>○ 만조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일 것</li> <li>○ 목본류의 활착·생장이 가능할 것</li> </ul>
	해안침식 방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조해안선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li> <li>○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li> </ul>

사업의 종류		평가기준
야계 사방 사업	계류 보전사업	○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을 줄이고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계류 복원사업	○ 계류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훼손을 감소 또는 방지하고 계류생태의 건강·활력과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일 것 ○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물매를 줄이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방댐이 위치하는 곳에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할 것

## 2. 타당성평가의 시기·방법

- 가. 평가시기: 사방사업 대상지를 선정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평가함.  
 나. 평가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이 평가함.  
 다. 평가방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여야 함.

## 3. 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 가.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 1) 산사태예방사업
  - 2) 산사태복구사업
  - 3) 산지보전사업
  - 4) 산지복원사업
  - 5)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다.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 1) 해안침식방지사업
  - 2) 계류보전사업
  - 3) 계류복원사업

## 4. 기타

그 밖에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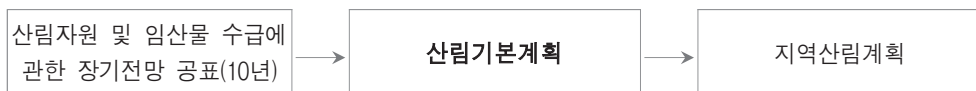


## 2. 산림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등

- 근거법률 : 「산림기본법」 제11조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수립권자 : 산림청장
- 계획수립기간 : 20년 단위
- 대상지역범위 :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구 단위로 수립
  - 시·도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
  -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 산림계획구 :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산림계획구")로 정할 수 있음
- 용어정의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

### 나. 관련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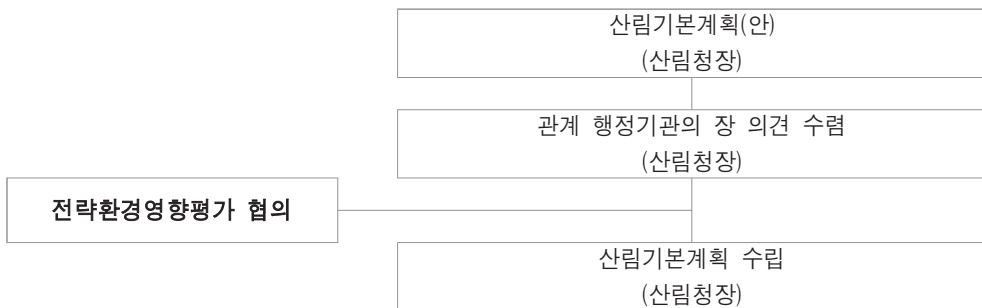


\*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환경보전계획 및 국제환경동향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된 산림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설정 하여 평가
- 하위계획에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고려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설정하여 평가
  - 하위계획 : 아래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참조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 중기계획,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과의 부합 여부 검토
- 국가 환경정책과 산림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계획 인지 여부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산림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이 환경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 되어져야 함.
- 산림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지역산림계획(산림기본법), 사방사업 기본 계획(사방사업법),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촌진흥기본계획·산촌개발사업계획·임업진흥계획(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계획인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도시림 기본계획·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종합계획(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 자원개발사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상호 연계되어야 할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서식지 보호, 생태우수지역 보전, 습지보호지역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보호 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이 계획에 고려되었는지 여부 검토
- 핵심생태축(백두대간, 도서연안 등)과 생태자연도 1, 2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 등 생태·녹지축 보전에 대한 내용이 계획에 고려되었는지 여부 검토
- 하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요구하는 수요 또는 공급 규모 등이 본 기본계획에 적정 배분되었는지 여부 검토
- 경관자원 보전, 수환경, 토양환경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이 계획에 고려 되었는지 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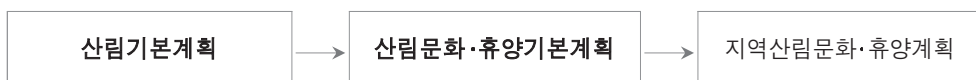


### 3.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4조
  - 담당 부처 : 산림청 산림자원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수립권자 : 산림청장
- 계획수립기간 : 10년 단위
- 대상지역 범위 : 전국의 산림에 대해 기본계획구 단위로 수립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도")의 기본계획구 : 시·도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
  - 지방산림청의 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 기본계획구 : 산림문화·휴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문화·휴양 기능을 통합 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을 기본계획구 또는 지역계획구로 정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산림문화·휴양 :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 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의미
  - 자연휴양림 :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
  - 산림욕장(山林浴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
  - 산림치유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문화·휴양 여건 및 전망
- 산림문화·휴양 수요 및 공급
-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
-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
- 그 밖에 관련된 주요시책
  - ※ 기본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법 제5조제1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수요적정성에 대한 대안 설정
  - 기본계획의 지표, 계획별 추진일정, 투·융자계획 등을 종합한 수요의 적성 및 환경용량의 변화에 대한 대안 설정
    - 계획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대안 설정
    - 추진일정과 투·융자계획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 설정

- 추진계획의 적정성 선별을 위한 대안 설정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됨을 검토하고 추진 계획별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설정
- 계획추진 시기 및 순서에 대한 대안
  - 전국을 대상으로 동시 추진과 권역, 지역, 행정단위 등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진 등 계획시기에 대한 대안 설정
  - 환경적 가치 중심의 사업추진 지역과 투·융자 효과 극대화 사업추진 지역 등에 대한 사업우선 순서에 대한 대안 설정
- 계획추진 입지에 대한 대안
  - 기존 시설 활용계획과 신규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대안 설정
  -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입지특성을 반영한 대안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 국가생물 다양성 전력,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빛공해방지계획 등 국가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물세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13~201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 2015),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3~2017), 산림복지 종합계획(2013~2017), 임도시설 기본계획(2011-2020)등과의 연계성과 부합성 검토
  -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 산림치유활성화 추진계획(2012~2017), 산림 교육종합계획(2013~2017),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2012~2021),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14~20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과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지 검토
  - 기존 입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검토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지역적 편중과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 연담화, path화 등에 대한 공간계획 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이용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휴식년제의 도입방안 검토
- 이용인구의 증가, 자원 수요, 에너지 수요 등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여부를 검토
  - 과도한 바이오매스 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계획인가를 검토

## 사. 참고사항

- 「산촌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5조(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상의 기초 조사는 “국유림 산림휴양지원 기초조사”로 명명되며, 조사와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음
- 본 매뉴얼상의 ‘산림휴양자원’에 대한 조사 대상면적은 50ha이상의 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검토할 경우 이를 참고하여야 함
- 다음은 “국유림 산림휴양자원 기초조사 매뉴얼” 상의 ‘산림휴양지구의 개발가능 지역 판단조건’임

<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지구로 개발 가능 지역의 판단조건 >

1. 50ha 이상의 집단 지역일 것
  2. 주말에 외부로부터 등산 등 이용객이 오는 지역
  3. 여름철 외부로부터 물놀이 등 이용객이 오는 지역
- ※ 1번 조건은 반드시 만족해야 함.  
※ 2번 또는 3번 조건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함.

※ 자료 : 「국유림 산림휴양자원 기초조사 매뉴얼」산림청



## 4. 산촌진흥 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자원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수립권자 : 산림청장
- 계획수립기간 : 10년 단위
- 대상지역범위 : 전국의 산촌
- 용어정의
  - 산촌 :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
    - ①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 ②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 ③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 산촌진흥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산림기본법』제28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
    - ①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산촌
    - ② 산림자원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
    - ③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면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 산촌개발사업 :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 ※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규정(법 제24조제1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산촌진흥기본계획”의 특성에 부합되는 대안 설정
  -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산림기본계획」과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이를 고려한 대안 설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환경용량유지 및 확보를 위한 대안 설정
  - 당해 실시한 “산촌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전계획과 비교하여 신규로 지정된 산촌을 중심으로 환경용량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유지 방안에 대한 대안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 설정
    - 산촌을 대상으로 한 환경용량의 유지 및 확보하기 위한 대안 설정
    -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대안 설정
    - 산촌주민 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시 친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설정
- 산촌지역에 대한 관광육성 계획수립 시 관광(녹색 및 생태관광 등)수요를 고려한 규모에 대한 대안 수립
  - 산촌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율과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에 대한 대안 수립
- 하위 ‘지자체 산촌진흥계획’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하위 계획단계에서 친환경 산촌개발계획 수립에 활용이 가능한 대안 설정
-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설정
  - 산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특정지역에 타 지역의 경제작물의 유입과 차단에 대한 생태환경적 대안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등 국가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물세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13~201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3~2017), 산림복지 기본계획(2013~201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등과의 연계성과 부합성 검토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2008~2017),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2012~ 2021),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14~20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2013~2017),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 2019)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과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광역적 및 소규모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계곡 등),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인가를 검토
- 산촌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과 관련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산촌지역의 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사전에 고려한 계획인가를 검토
- 이용 인구의 증가, 사회기반시설의 신규 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지 검토

## 사.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II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산촌지역 중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전기본방향을 제시하였는지 검토
  - “산촌진흥기본계획”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백두대간,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이 발생하는 대상지역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에 해당될 경우 사업규모의 축소 등을 검토
  - 기 훼손된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환경복원계획 수립이 고려되었는지를 검토
  - 능선,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보전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검토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복원계획 수립방안을 (단독 또는 타사업과 연계 등)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
-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이전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신규로 “산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마을진입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지형 훼손의 정도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검토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 “산촌진흥기본계획”추진으로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검토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여부 검토
  -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검토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아. 참고사항

- 「2014년 전국 산촌기초조사 종합보고서, 2014. 12, 산림청」



##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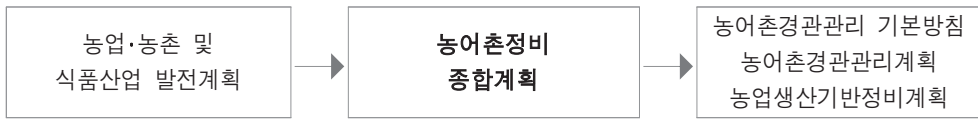
## 특정지역의 개발

## 1.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4조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수립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계획수립기간 : 기간 없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 5년) 및 어업·어촌 발전계획(해양수산부 장관, 5년)
- 대상지역범위 :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
- 용어정의
  - 농어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농어촌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 나. 관련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수립하되, 다음 내용 포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 대상 지역의 현황
  -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 추정사업비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참고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은 수립된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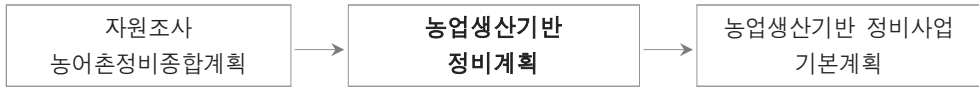


## 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제7조
- 수립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계획수립기간 : 해당 없음
- 대상지역범위 :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
- 용어정의
  - 농어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어촌
  -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나. 관련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법 제3조의 자원 조사결과와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추진
  -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 토지이용계획
  -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타 계획의 환경성등을 비교 대안으로 설정
  -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확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새로운 계획과 기존 계획이나 타 계획의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및 사회적 측면의 부합성을 비교 대안으로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의 제고와 더불어 국가 기후 변화적응 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국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기후변화협약, 람사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검토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년-2017년),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2015년-2024년),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2014년-2020년)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 검토
  -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종합대책(2011.12.), 국토 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년-2020년),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다양한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검토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우량농지 보전, 유휴농지와 간척지의 이용 활성화, 논밭 겸용의 농지이용 고도화, 발작물 경쟁력 제고 등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로 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요·공급·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환경지표 등 환경적 지속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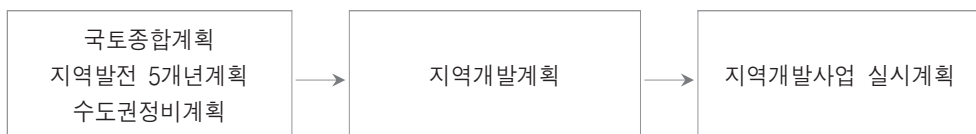


### 3. 지역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수립권자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국책사업 또는 요청 시)
  -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계획수립기간 : 필요시
- 대상지역범위 :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포함)
- 용어정의
  - 지역개발계획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 지역개발사업 :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낙후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명칭·대상지역 및 범위
-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고용·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의한 절차
- (의견청취)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승인신청)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다만 영 제4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 (신청서류 제출)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류를 갖추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신규계획의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 변경계획의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승인고시)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 대안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 여건 및 동향, 정책적·계획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개발사업 컨셉에 대한 원안 유지, 수정, 지양 등의 대안을 설정(관광지 개발)
  -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현황과 개발계획, 관광수요 조사, 유사사례 분석 등의 관광수요 추정을 통해 개발규모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관광지 개발)
  -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정한 공급규모 산정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가를 검토(산업단지 개발)
  -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의 입지수요,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인근 산업단지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산업단지 개발)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 ○ 토지이용계획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용도지역 및 지구 경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 경계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
- 생태계 및 지형, 경관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용지와 개발용지 선정에 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상위계획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국토의 보전 및 관리 방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 중 지역개발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

#### < 관련계획 >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 주변의 개발계획(도로, 철도, 택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지 등)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개발의 적정성 대안 >

- 국내외 관광 환경 현황 및 전망분석을 통해 지역의 관광 욕구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개발전략, 도입시설 등이 계획되었는지를 검토(관광지 개발)
- 지역 내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시장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관광 자원의 잠재력, 제약요인, 문제점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관광지 개발)

#### < 개발규모의 대안 >

- 지역 관광수요 추정을 위한 적절한 자료(직접조사자료 및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등)와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와 수요 예측 결과가 적정한지를 검토(관광지 개발)

- 관광수요예측의 과정이 타당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유사사례 분석결과 및 직접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예측결과의 보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관광지 개발)
-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공급규모 산정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가를 검토(산업단지 개발)
-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의 입지수요,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인근 산업단지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산업단지 개발)

#### < 입지선정 대안 >

- 물리적 조건, 토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장애 여건 그리고 본 관광개발과 연관되는 개발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
  - 환경적 민감지역 회피사항으로 환경관련 용도지역, 주요 산줄기 및 생태축, 식생 및 생태우수지역(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법정 보호종 서식지, 주요 자연 및 경관자원 등의 훼손 여부 등을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 환경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지구계 설정 대안 >

- 재해요인 및 자연적 환경, 인문적 요인, 도시기반시설,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의한 경계,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와 토지이용현황,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여 대안을 검토(수정)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수정)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히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지하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수 이용시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용수 확보 및 이용 축소방안, 모니터링 등)을 검토(수정)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수질 등에 대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lt; 사회·경제 환경 및 기타 &gt;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대체농지확보 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제8장

#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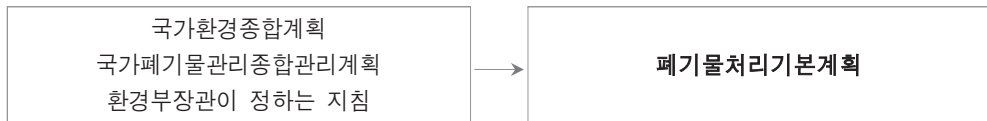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9조
  - 담당부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수립권자 : 시·도지사
- 승인권자 : 환경부장관
- 계획수립기간 : 10년 단위
- 대상지역범위: 시·도 관할구역
- 용어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시행령 별표1)
  -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 관리시행령 별표2)



-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 처분 : 폐기물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이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시행령 별표3)
- 폐기물감량화시설 :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폐기물관리시행령 별표4)

## 나. 관련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재원의 확보 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역화, 집적화, 에너지화 기술을 이용한 처리 시설을 시군구 관할지역에 적절히 분배설치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
  -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에너지화·적정처리 등의 부문별계획 선진화 방안 (광역화, 대형화,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집적화, 민간처리시설 활용 등)
  -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 기술의 적용
  -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교차 처리 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폐기물종합관리계획,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 기후변화협약대응의 종합대책 등)과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부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런던 협약 등),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환경적 측면에서의 국토이용기본이념 적합 여부)

- 해당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 되었는지의 여부
  -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있게 반영
  - 국토종합계획, 시·도 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
  - 중앙부처의 정책, 제도지원 등의 통합운영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국토개발의 조화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차원에서 공간계획의 효율적 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급가능성, 규모, 연계처리 등)
  - 인구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한 수요공급, 규모 등 배분의 적정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 고려하여 검토
  - 시설의 종류별 환경부하 영향

## 사. 참고 사항

- 계획수립의 기본원칙(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종합성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물질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등 비물질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
  -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며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
- 정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경우 관할 시·군·구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 성격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
  - 기본방침, 계획지표설정, 부문별계획, 폐기물처리 최적화,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



- 명확성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서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
  - 계획의 논리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서 상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 지역특성의 반영
  -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문제의 특성과 과제를 반영하고, 관할지역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지역의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게 한다.
  -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적화 전략의 반영
  -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대형화, 집적화, 연계처리 또는 병합처리, 민간처리 등)의 최적화 추진계획.
  - 최적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처리시설(민간시설 포함) 설치·운영 실태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lt;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gt;

대항목	세부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자연 환경	위치	○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등	기존자료
	지형 및 지세	○ 지질구조, 표고분석, 경사도분석, 주요산, 주요하천 등	기존자료 (지형도, 지질도 등)
	기상 및 기후	○ 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안개일수, 과거 풍수해 기록 등	기상청 제공 자료
인문 환경	시·도의 역사	○ 시·도의 기원, 성장과정, 발전연혁 등	기존자료
	행정구역	○ 행정구역변천, 도시계획구역 변천, 행정조직 등	기존자료
	인구	○ 인구추이, 인구밀도, 인구의 구성(연령별, 성별, 산업별, 생활권별), 인구가동현황 등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주거형태	○ 유형별·규모별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거수준 등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토지이용현황	○ 용도지역별 분포, 토지지목별 분포, 임상, 시가화 동향, GIS 구축내용, 주요 개발사업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경제	○ 지역총생산, 경제활동인구 등	기존자료
	산업구조	○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단지 현황, 특화산업 등(산업단지 개발계획 포함)	기존자료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교통량 분석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공공·문화시설	○ 공공청사, 교육문화시설, 공원/녹지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각종 관련계획	○ 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기존자료
폐기물 관리 현황	발생현황	○ 폐기물종류별 발생현황, 시·군·구별 발생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처리현황	○ 폐기물종류별 처리현황, 시·군·구별 처리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종류별, 시·군·구별 청소방식,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처리시설현황	○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사용가능한 등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재정	○ 폐기물관리 재정(세입·세출구조), 청소행정 관련 지자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등	기존자료



## 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담당부처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 수립권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승인권자 : 환경부장관
- 계획수립기간 : 10년 단위
- 대상지역범위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할구역별
- 용어정의
  - 가축 :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및 개
  - 가축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糞)·요(尿)에 섞인 것

### 나. 관련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시행령 제3조)

-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연도별·구역별·가축별 사육현황과 장래사육예정인 가축의 마릿 수
-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현황과 수집·운반·처리 계획
-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그 밖에 가축분뇨 관리 위한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설정

- 가축분뇨의 원료수급, 에너지 생산 이용, 판매, 퇴비 액비이용의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감량 및 목표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시설설치계획, 광역집적화,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처리시설의 최적화 기술 적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선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폐기물종합관리계획,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 기후변화협약대응의 종합대책 등)과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부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런던 협약 등),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해당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 관계부처(농림수산식품부)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있게 반영
  - 자원순환기본계획, 폐자원에너지종합계획,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국토개발의 조화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차원에서 공간계획의 효율적 계획
- 가축분뇨 등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 고려하여 검토되었는가?
-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적정성
- 가축분뇨의 악취저감 및 입지 적정성
- 소규모가축분뇨 발생의 재활용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 참고사항

-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공공수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방지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제13조)
- 가축분뇨관리계획 변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의 기본계획변경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변경해야 함
    - 하수도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그 밖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필요한 공공계획
  - 다음사항 변경시(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변경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시·도 관할 1개 시·군·구(자치구)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되거나 변경·지정·고시된 경우



## | 제 3 편 |

#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제 1 장 도시의 개발 .....	125
제 2 장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188
제 3 장 에너지 개발 .....	207
제 4 장 항만의 건설 .....	212
제 5 장 도로의 건설 .....	235
제 6 장 수자원의 개발 .....	250
제 7 장 철도의 건설 .....	253
제 8 장 공항의 건설 .....	260
제 9 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66
제10장 개간·공유수면 매립 .....	276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	282
제12장 산지의 개발 .....	302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	312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	380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384
제16장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399





## 제1장 도시의 개발

###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1조 제4항(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용어(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등)
  - 예비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 검증 평가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건설기술진흥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의 사업(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한정)
  - 해당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간유치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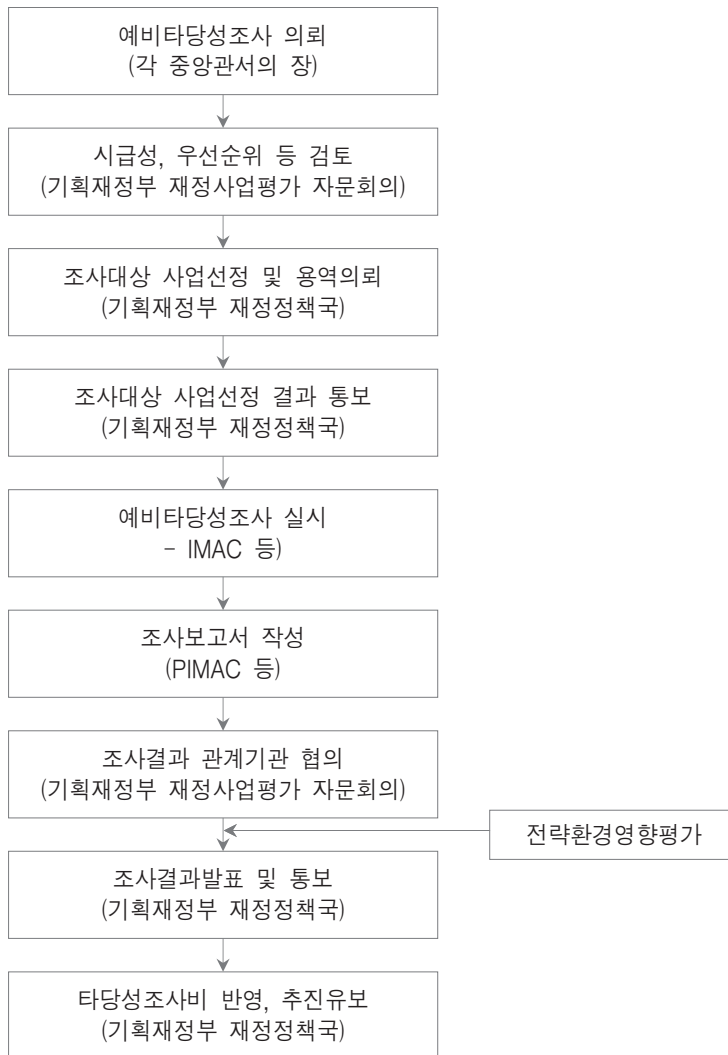
- 경제성 분석
  -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 등
-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지역낙후도),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국고 지원의 적합성, 자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진의지 등



- 기술적 타당성 평가
  - 입지 및 공법분석, 현장여건 실사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 81조 제4항 따라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 적정성 검토 시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국토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 국토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토발전방향, 비전, 지역별 기능분담 등과의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 국토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대책, 사업과의 부합성 검토
-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 공간환경 관리전략 및 보전목적 공간설정과의 부합성 검토
-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시도 종합계획(국토기본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군리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 공간구조 정비방향과의 연계성, 토지용도별 수요 및 개발가능지 분석결과와의 상충성 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기타 환경관련 보전지역·지구(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포함유무 검토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기타 해당 지자체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서 분석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취약성 지도)의 취약지역 포함유무 등 검토

## 사. 참고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1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69조에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 기본 계획 수립시 도시, 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도록 함

##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용어(같은 법 제2조)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혁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구
  -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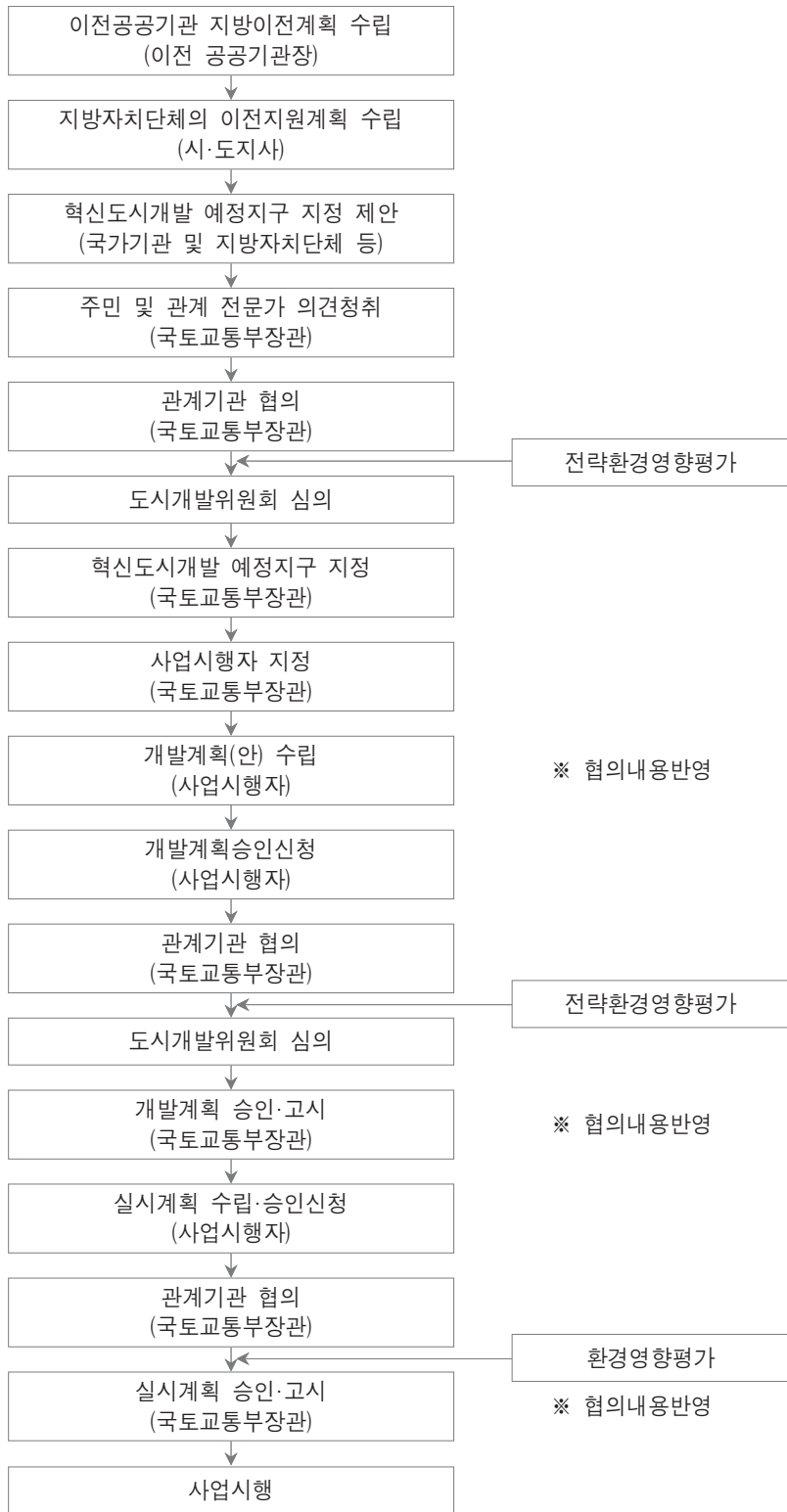
-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지형도면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바. 참고사항

- 「혁신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 훈령)



### 3. 도시·군 관리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관할구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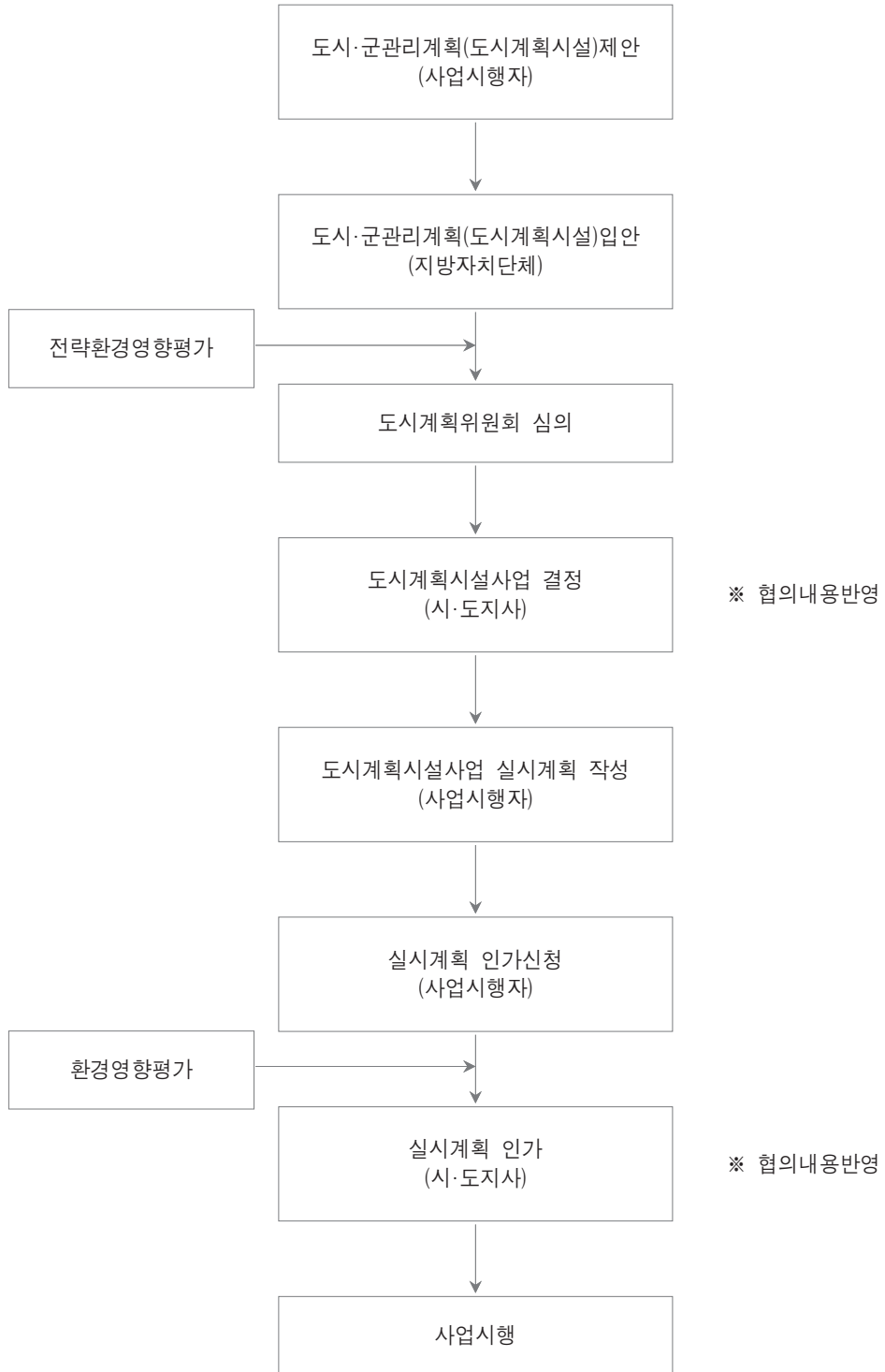
○ 협의절차

-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도시관리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정비방향과의 연계성, 토지용도별 수요 및 개발가용지 분석결과, 권역별 규제사항 등과의 상충관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

### < 관련계획 >

- 도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상의 환경목표지표(상하수도 보급률, 1인당 공원녹지면적 등) 실현가능성, 녹지축 및 보전목적의 공간과의 상충 관계 등을 검토
- 시·도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 및 시·군·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과의 부합성 검토
  - ※ 풍수해 및 안전취약지역에서의 계획수립의 적절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기타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압력의 급격한 변화 예상 및 변경에 따른 지형, 토양, 수질, 대기 등의 환경기반에의 영향정도 검토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기타: 변경코자 하는 용도지역 목적의 합리성 검토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인 경우 면밀 검토 및 1단계 상향 조정 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의 기여유무 검토
  - 도시의 자족성과 쾌적성 확보의 적절성 검토, 특히 보전용도지역, 생활용도지역, 상업 및 업무지역간의 연계 및 완충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설정 검토

#### ○ 용도지역(보전⇒개발) 변경 시 추가 고려사항

※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난개발 개선대책(‘16.9.13)”에 따라 입지검토사항 추가

-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개발우선등급이라도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고려
- 양호한 산림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위계획의 근거유무 확인
- 계획관리지역이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여 정형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확인
- 1만㎡ 미만의 적법훼손지를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양
- 취락지구가 상당 부분 분포하며, 취락지구 인근에 개발가능한 산지 및 농경지가 분포하여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또는 취락 인접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제한 기준 등 마련방안 검토

### 사. 참고사항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이행여부 검토 사항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 미기후 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수행 및 그 결과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배치 계획 등에의 반영여부(재해빈발지역, 하류지역의 개발용도지역 지양 등)
  -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지정시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계획수립 여부
-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부여 여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 계획. 다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때에는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 확산, 주변경관의 훼손 및 환경오염·도시간 연담화·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에 필요한 대책 수립 여부
-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간의 완충지역 적정 설정 여부(세부기준 지침 참조)
-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비점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 등으로 친환경적 교통시설 계획 수립 여부
-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 강구 여부(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 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군계획 수단 강구)

#### ○ 지침상의 상위계획

-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 법률 :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 용어(동법 제2조제8호)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3조)과 구역지정 고시(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및 규모(시행령 제2조 제1항) >

구분	세부내용
도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이상</li> <li>○ 공업지역: 3만㎡이상</li> <li>○ 자연녹지지역: 1만㎡이상</li> <li>○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 1만㎡이상</li> </ul>
도시지역외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만㎡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li> <li>-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li> </ul> </li> </ul>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
  - 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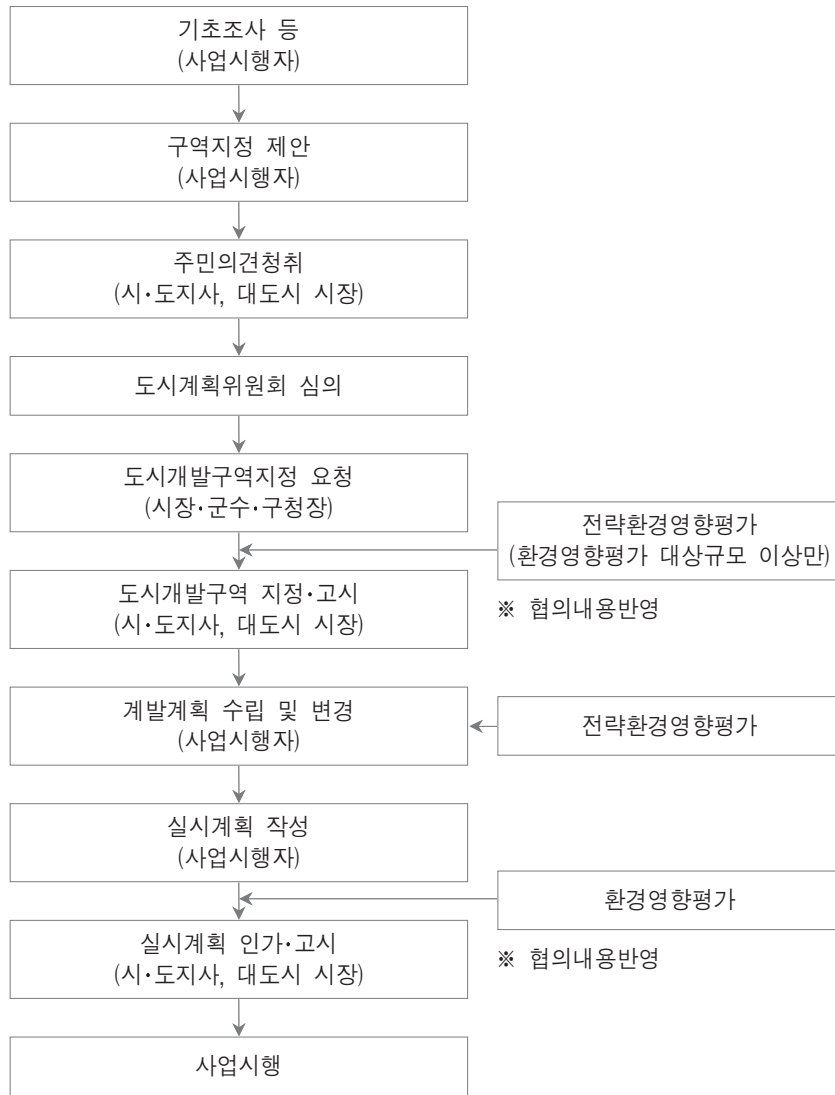
-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규모 제한 예외
  -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취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계획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계획의 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인구수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원형지로 공급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 교통처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자원조달계획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협의 대상규모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지정면적 25만㎡이상의 경우에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 협의대상 및 절차

-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 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도 가능
-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각각 받아야 함

##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개발의 입지수요, 주변의 도시개발 현황 및 계획, 미분양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대안을 설정
  - 상위계획에서의 해당지역 인구계획, 인구유입·유출, 사회·경제적 지표, 개발의 수요와 공급 전망, 시기와 순서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와 개발규모에 대한 대안을 설정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기간시설 활용도,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목적의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과의 완충공간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지구경계 대안을 설정
- 토지이용계획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 주변 공원·녹지체계, 환경적·생태적 자연 자원, 생태네트워크, 완충녹지,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 환경목표지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특히 상하수도 보급률 달성 가능성 등을 심층 검토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관련계획 >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권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계획, 기업도시건설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새만금 명품복합도시조성계획, 낙후지역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계획, 산업입지계획, 경제자유구역계획 등
- 관련계획의 주체,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사업목적 및 도시의 개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였는지를 검토
- 도시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상 보전축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
-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확장축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
- 주변의 개발계획(모도시, 도로, 철도, 택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
-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연계성을 고려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의 적정성 대안 >

- 상위계획, 법적제한사항, 간선도로 및 기반시설, 수요여건 등 종합적 개발여건과 사업성 분석 내용을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지정가능 여부와 각종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현황 및 계획을 통하여 과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검토

#### < 계획인구와 개발규모 대안 >

- 관련 개발사업의 법령이나 지침 상에서 제시된 인구계획을 반영하여 인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해당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수립한 도시인구 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계획인구의 적정성 검토
- 상주인구, 주간활동인구, 주야간 인구 및 가구 현황분석, 10년간의 인구증가추세와 가용토지 자원과 인구 수용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검토

- 인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이주 및 재정착 등도 인구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입지선정 대안 >

- 물리적 조건, 토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장애 여건 그리고 본 도시개발과 연관되는 개발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
  - 환경적 민감지역을 회피사항으로 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분포,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1, 2등급 등 생태 및 식생 우수지역, 법정보호종(동물) 서식지 및 법정보호종(식물), 희귀종 포함여부와 소음, 대기질 등의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정온시설 분포 여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 환경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지구계 설정 대안>

- 재해요인 및 자연적 환경, 인문적 요인, 도시기반시설,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사업 및 기타 개별사업에 의한 경계 및 관련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을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 자연생태적 우수지역의 지구계 포함하고 보전축 등의 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구계를 설정하였는지 검토

#### < 토지이용계획 대안>

- 도시개발에 입지하는 시설물의 특성 및 규모를 기준으로 자연지형의 최대한 활용, 기반시설(도로, 용수, 항만, 철도)과의 합리적 연계, 기존 도시개발지와의 상충기능(생산 대 주거)간의 최소한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공원녹지체계, 지형변화(원지형 보전 등), 원형보전지, 완충녹지, 시설물배치, 존치 대상시설, 존치 대상지역(환경보호지역, 문화재 등), 환경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교통체계(녹색교통 포함), 재해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

- 사업지구 내부의 자연지형(경사 및 표고분석도,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수계지도 등 이용)을 고려한 도시개발 조성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지형·경관, 급경사지, 습지, 녹지축 및 식생보전을 고려한 원형보전지 설정이 적정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지역의 분포 여부를 검토
- 도시개발 계획 수립시 지형 및 식생 훼손 과다여부, 대절토와 고성토 등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
- 인구계획, 장래 교통량 등을 종합하여 기반시설의 적정용량(면적)과 공급시기의 일치가능성, 타지역과의 연계가능성, 기존시설의 존치(중설 등)등의 적정성을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 등의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
- 중요한 생태자원인 녹지와 하천이 만나는 전이지대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생태연결거점,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검토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이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와 돌출 및 압박경관의 형성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층고 조정, 시설물 배치 등)을 검토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과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지하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수 이용시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용수 확보 및 이용 축소방안, 모니터링 등)을 검토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오염유발시설(산업단지 등) 주변으로 입지할 경우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계획(이격거리, 시설물 배치, 녹지조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조성 계획 수립여부 검토
-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인근지역과의 경계지역은 공원·녹지지역을 계획하여 상호이용 및 교류 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사. 참고사항

-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이행여부 검토 사항
  - 개발구역 안에서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할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 수립 여부
  - 개발구역 안의 공원·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대안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 및 사례는 아래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계획의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연구(Ⅱ)'(2016.12, 환경부) : 환경부홈페이지/ 발행물/ 환경간행물
  -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포럼(도시개발, 산업단지, 2016.12, 환경부) : 환경부홈페이지/ 발행물/ 환경간행물



##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 필요 지구
  -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나. 지정(입안)권자 및 지정요건

- 입안권자 : 시장·군수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재정비촉진사업지구 유형별 요건

유형	지정 요건
주거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구</li> <li>○ 면적기준 : 50만㎡이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0만이상 150만 미만 : 40만㎡이상,</li> <li>- 인구 100만미만 : 30만㎡이상</li> </ul> </li> </ul>



유 형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40이상 연접한 지역 또는 산지·구릉지 등과 같은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시행하려는 지역 : 15만㎡ 이상</li> </ul>
중심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li> <li>○ 면적기준 : 20만㎡ 이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0만미만 : 15만㎡ 이상</li> <li>-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40이상 연접한 지역 또는 산지·구릉지 등과 같은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시행하려는 지역 : 10만㎡ 이상</li> </ul> </li> </ul>
고밀 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li> <li>○ 면적기준 : 10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li> </ul> </li> </ul>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비 촉진지구의 유형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 자료
-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자료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축진지구의 지정 신청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축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축진지구 지정 후,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재정비축진지구 지정 절차도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 및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6. 재정비 촉진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정비 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 우선사업구역 : 재정비 촉진구역 중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
-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수립권자 : 시장·군수
- 승인권자 : 시·도지사
-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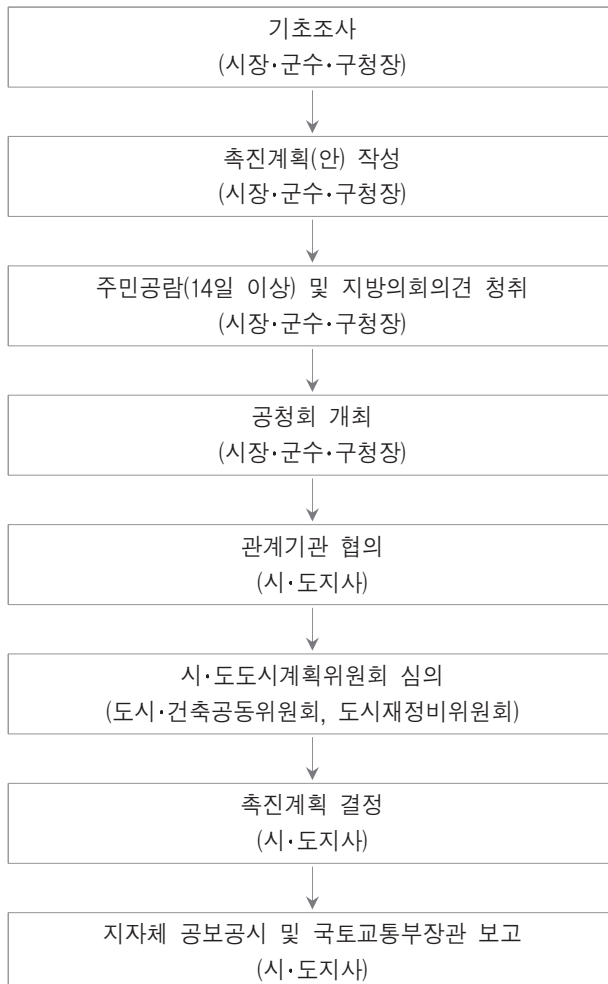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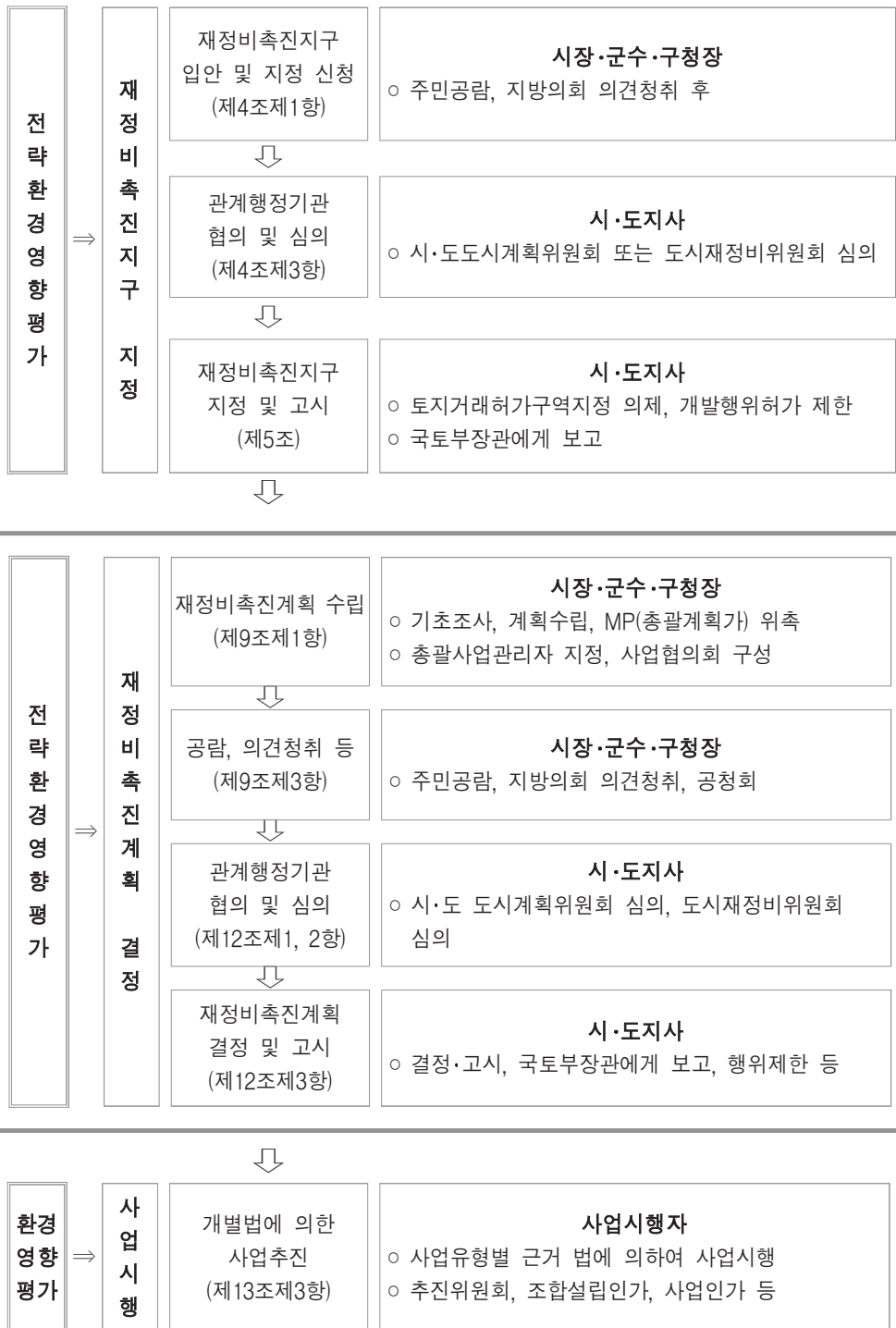


- 개별법에 의해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준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시)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도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 및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지역적 특성 고려 여부
    - 다양한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향후 개발수요 고려 여부
    - 현황 분석과 장래 예측 후 합리적 근거를 통한 계획 수립 여부
    -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고려, 상호 유기적 계획 수립 여부
    -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사. 참고사항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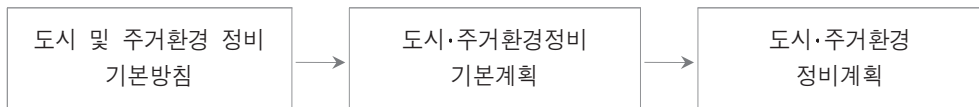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계획수립기간 : 10년
- 대상지역범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관한 구역
- 용어 정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나. 관련 계획 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절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계획의 주요 목표와 추진전략,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계획의 비교·검토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개발의 입지수요, 주변의 도시개발 현황 및 계획, 미분양율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지정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
- 수단·방법
  - 도시정비 대상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도시·주거환경정비를 달성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경제성과 실효성, 효율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수요·공급

- 상위계획에서의 해당지역 인구계획, 인구유입·유출, 사회·경제적 지표, 개발의 수요와 공급 전망, 시기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인구와 개발규모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입지대안

-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기간시설 활용도,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목적의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과의 완충공간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지구경계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

##### < 상위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관련계획 >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시군환경보전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

- 대안설정·분석의 적절성

- 기존 정비예정구역 단위 정비사업 중심의 주거지관리에서 탈피한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 관리를 위한 계획목표 및 전략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과 변화된 사회적 여건, 미래상 등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생활권계획의 세부 계획항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부적정한 지역과 완화된 지정요건으로 정비구역 지정, 부정형적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정비구역에 대한 다양하고 효용성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생활권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정비계획과 추진전략 등이 일관성 및 연계성이 있는지를 검토
- 정비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이하 도시개발사업(p.138)을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인구밀도 상승으로 인한 교통 등의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부하가 있는지를 검토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기능의 주거지 내 과도한 침투 방지와 과도한 주공혼재 지양, 공업시설 주변으로 완충공간 확보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정비구역에 대한 시설물은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주거생활권계획에 따른 주요 경관요소를 반영하였는지를 검토
- 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을 참조하여 작성

## 8.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주거환경개선사업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외에서 있는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 &lt; 정비구역 내 재건축사업의 대상 &gt;

구분	대 상
공동주택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영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	○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지역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하여 설치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 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 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li> </ul>

※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 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함(영 제6조)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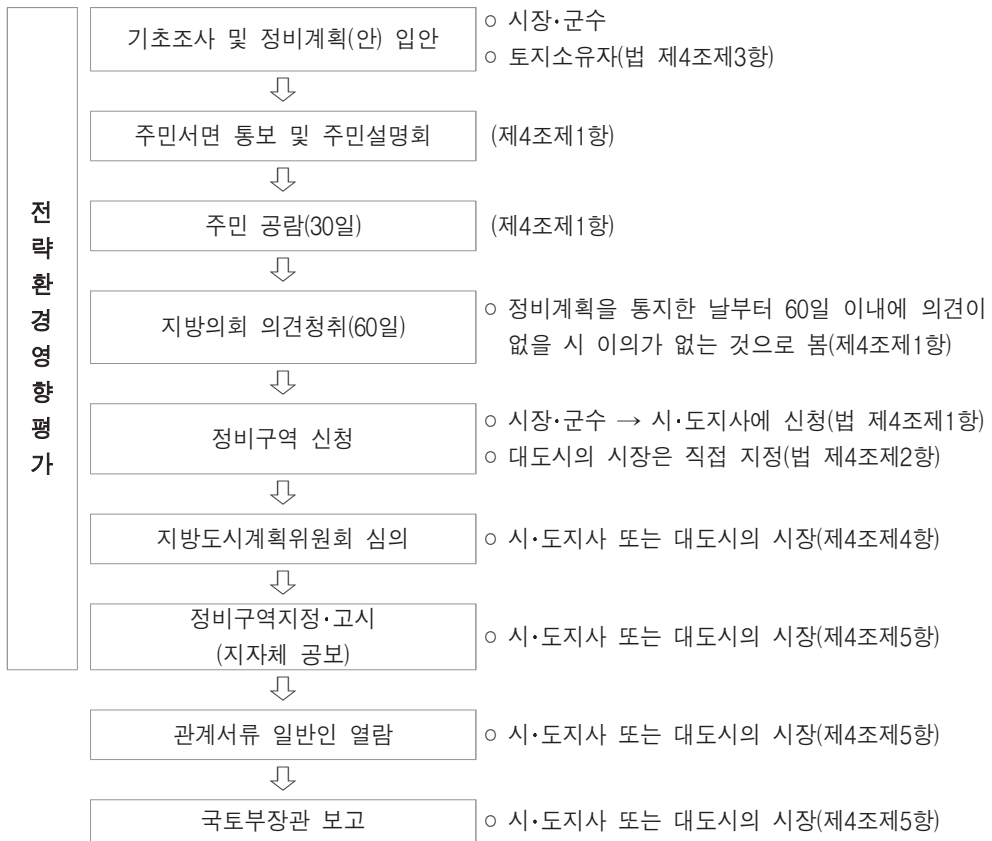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당해 지역안의 최저 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다)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2/3 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의 정비계획 수립
-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영별표1 제6호)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시장·군수는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음



### < 참고사항 >

-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정함(법 제4조제2항)
-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 정비기본계획 상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함)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기본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정비사업 유형별 목적을 분명히 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의 수립 여부
    - 도시 용량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밀도 유지 등 환경친화적 수립 여부
    - 주민설명회·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여부
    - 대상지내 및 주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과의 연계 여부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사. 참고사항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9.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 물류단지시설 : 화물의 운송·집하·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
- 지원시설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면적이 100만 $m^2$  이상인 물류단지
- 시·도지사 지정
  - 면적이 100만 $m^2$  미만인 물류단지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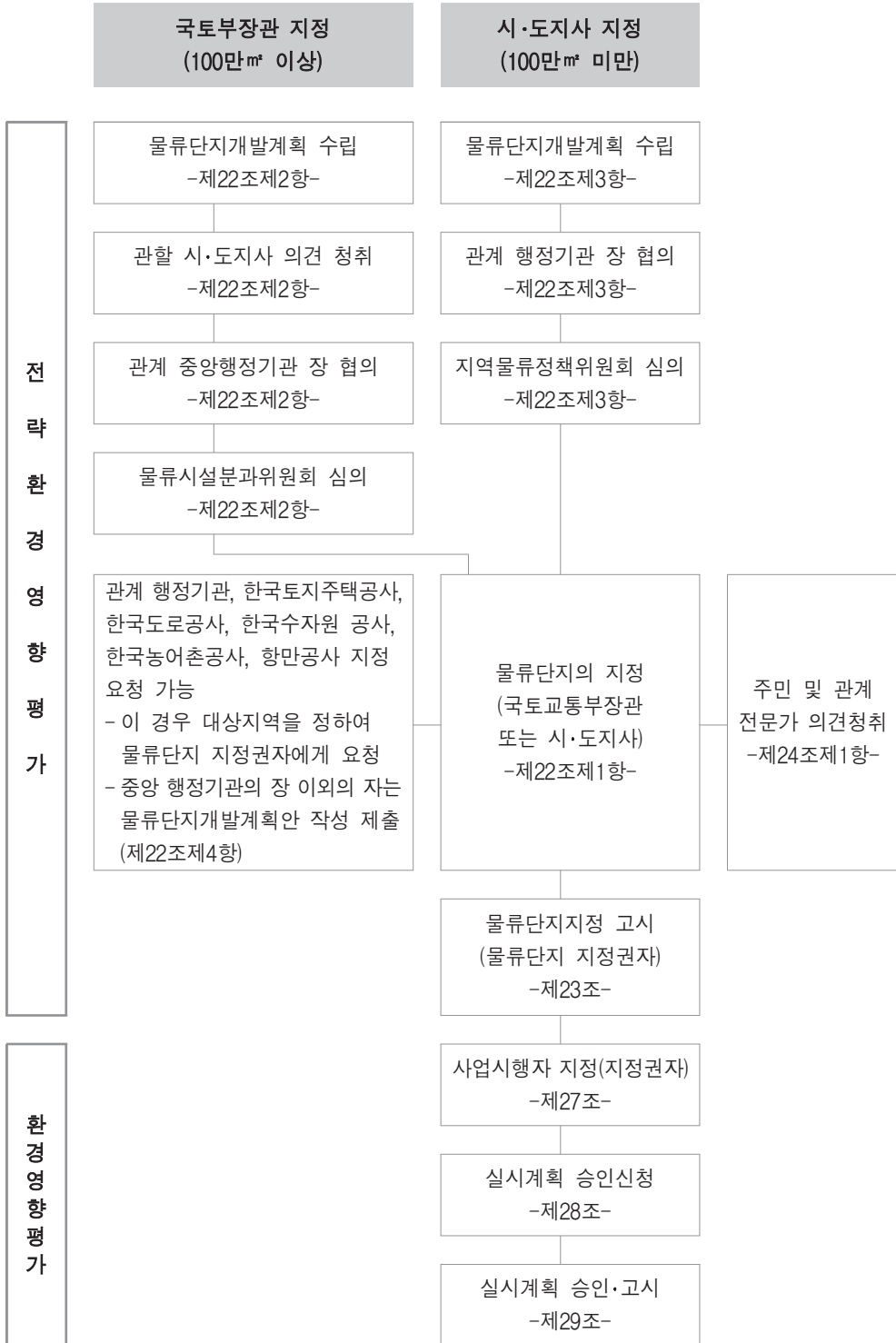
-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토지이용계획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계획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도지사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 및 개발이 가능하므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시에는 지정시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나,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추진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며, 물류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함.

<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물류정책기본법),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기존 물류단지시설,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중복추진 여부
-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수급상황, 지역 간 균형개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의 계획 여부
- 물류단지 입주수요의 사전조사 여부
-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 여부
- 물류단지 입지의 도시계획과의 부합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등에 입지가능지역 여부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 경우 우선 시가화예정용지로의 도시기본 계획 변경절차 이행 선행 여부



< 도시계획시설중 유통업무설비 설치가능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6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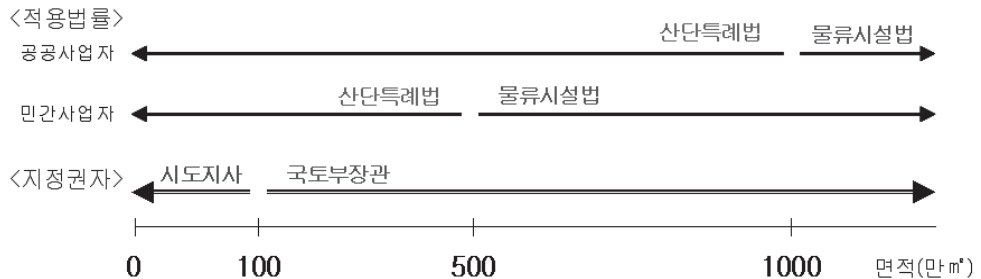
- 유통업무설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등
- 설치가능 용도지역
  - 주거지역중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전부)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공업지역 : 일반공업, 준공업
  -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에 한함.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사. 참고사항

- 「물류단지개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 관계
  - 물류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 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 특례법'을 준용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 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함(산단특례법 시행령 제59조의2)





## 10.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공공주택 :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임대 및 분양(국민주택 규모(84㎡ 이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주택지구 :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지정·고시하는 지구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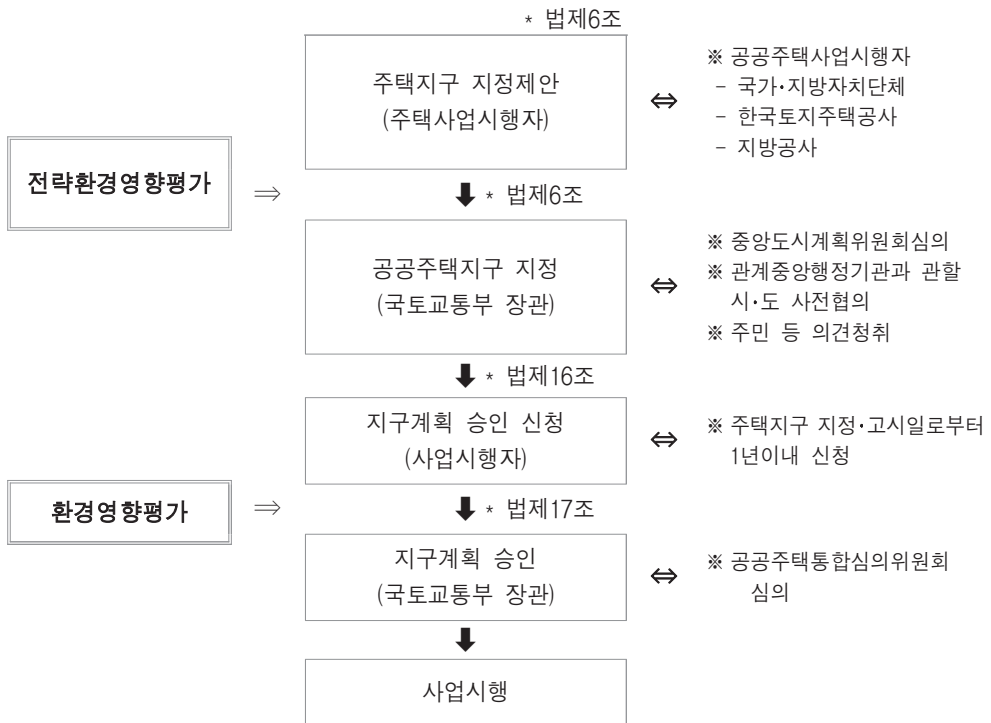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구조성사업
  -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지역에 지정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 시·도지사 지정
  - 면적이 30만㎡ 미만인 지구조성사업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공공주택지구는 타 법률의 절차와 달리 지구 지정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지구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특별법 제8조제3항)되어 일반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서 특히 보안(대외비)관리에 유의
  - 지구지정 후 주민공람시 까지 반드시 보안을 유지
  - 자문위원 검토시에도 우편물 발송은 지양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 의견을 듣고 검토서 등 관련자료 등은 즉시 회수하여 관리(보안각서 징구)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타법률 절차와는 달리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 불필요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법),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개발계획단계에서 확정되는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이 없으므로 입지지역 및 기본적 토지이용구상을 토대로 협의
- 수용인구 계획, 개발밀도, 공원·녹지 확보계획, 토지용도 배치, 주변지역 현황(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GB환경평가등급, 훼손지 복구계획 등

### < 공공주택 계획기준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조

1. 개발밀도 : 종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하되, 다음의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밀도(200인/ha 이상)로 개발가능
  - 역세권, 고밀개발 시가지 인접, 지자체장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필요
2. 평균용적률 : GB를 해제하는 경우 220% 이하, 그 이외는 220% 초과가능
3. 건설호수(생략)
4. 공원·녹지율 : 20퍼센트 이상(공원·녹지율 산정에 있어 공원·녹지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광장(일반·경관), 보행자전용도로(폭10미터 이상),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의미) 다만,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지구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함.
5.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구의 현황 및 계획내용, 지구인근의 개발상황, 주택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가능

- 공공주택지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및 제척기준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과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시 GB해제가 이루어짐)

※ GB해제 관련 환경적 기본 검토사항(국토환경정책과-1930호, '09.9.30)

**<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사. 참고사항**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공공 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공공주택 업무편람」(국토교통부)



## 11.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
- 용어
  - 사회기반시설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사회기반시설사업 :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유통, 문화관광, 교육, 국방, 주택, 보건복지, 산림 등의 사회기반시설

분 야	사회시설기반유형	분 야	사회시설기반유형
도 로 (3)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교통체계	유통 (3)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철 도 (3)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문화관광 (9)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과학관, 도시공원
항 만 (2)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 항 (1)	공항시설		
수자원 (3)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수도	교 육 (1)	학교시설
정보통신 (4)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국 방 (1)	군주거시설
에너지 (3)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주 택 (1)	공공임대주택
환 경 (5)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보건복지 (3)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 공공보건의료
		산 림 (2)	자연휴양림, 수목원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 민간부문 제안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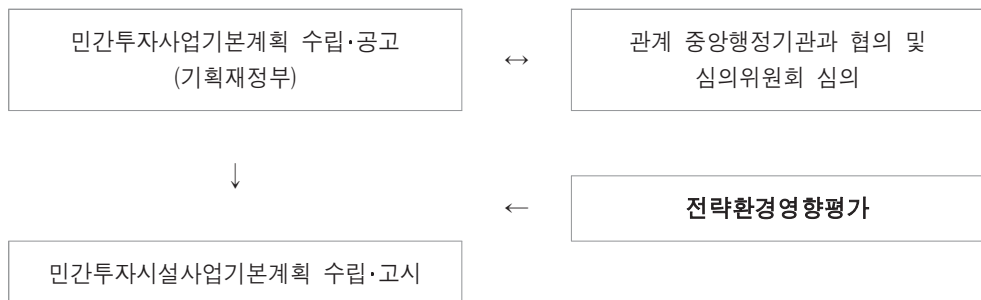
-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 사업계획 내용,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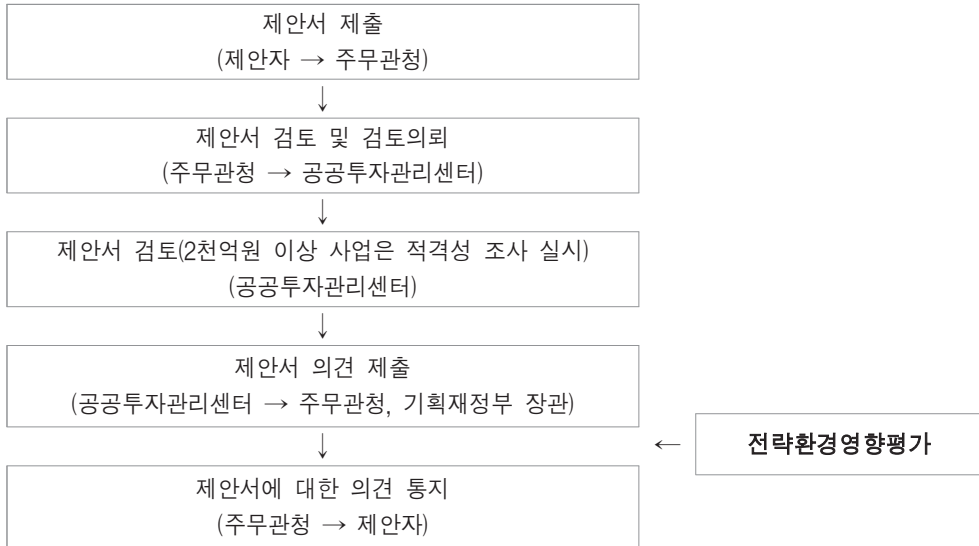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 민간부문 제안사업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민간부문 제안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제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12.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 용어
  - 역세권 :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함
  - 역세권개발사업 :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역세권개발구역 :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 국토교통부 장관 >

- 철도역(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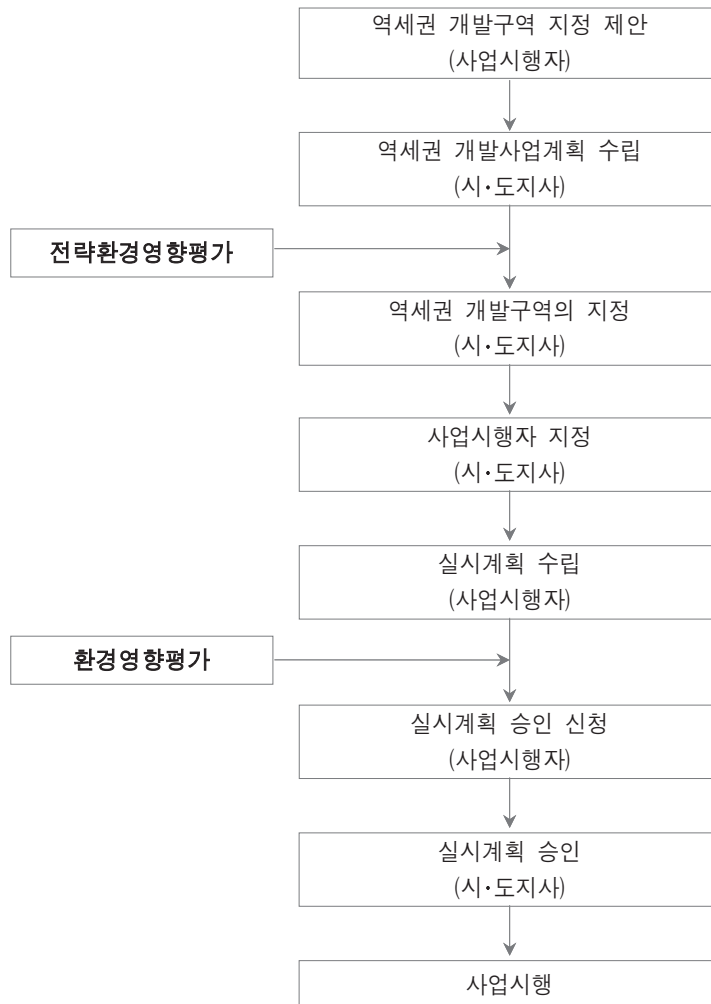
-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건폐율에 관한 사항
-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건폐율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사. 참고사항

- 환경영향평가 사업 대상 및 협의 요청 시기
  - (평가대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협의요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13.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용어
  - 집배송시설 :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
  - 공동집배송센터 :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
  -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추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13. 지역별 시행계획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참조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의 부합여부 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사. 참고사항

- 환경영향평가 사업 대상 및 협의요청 시기
  - (사업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협의요청)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14.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 용어
  - 택지 :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함
  -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 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
  - 택지개발사업 :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 간선시설(幹線施設)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시설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

-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 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

#### < 시·도지사 >

-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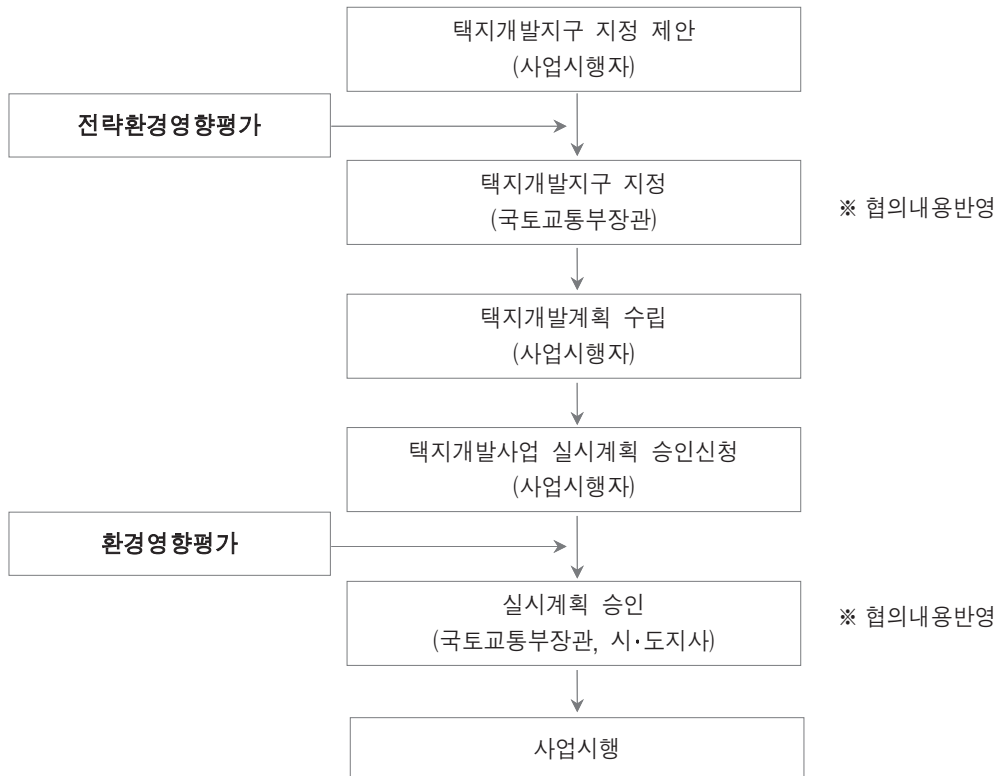


-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국토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
- 지정면적 330만제곱미터(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계획의 개요 및 개발기간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의 설정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택지수급계획(「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의 부합 여부 검토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주택용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용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등)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참조하여 작성



## 제2장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1.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0
  - 별표 20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행령 제71조 관련)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이 공장<sup>1)</sup>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것과 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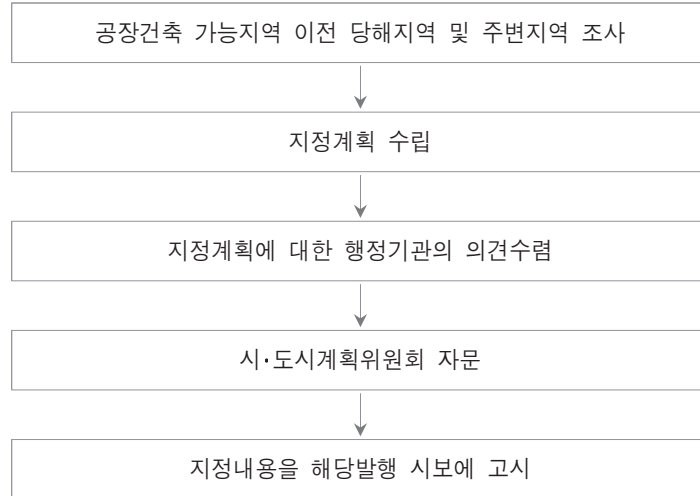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현재 토지이용 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 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 여부, 상습재해지역 여부 조사
-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 계획수립 절차



##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바.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 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8조의2

#### ○ 용어(같은 법 제2조 19호)

- 문화산업진흥지구 :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 문화산업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문화제와 관련된 산업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 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 박람회, 건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 상기한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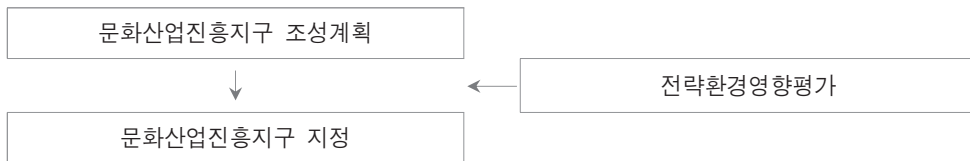
- 당해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위치하는 시·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시행령 제33조의2)
  - 진흥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지정의 목적
  -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 향후 지원·육성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절차



##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3.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 근거

- 국가산업단지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 일반산업단지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 ○ 용어(동법 제2조 제8호)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사업, 그 밖의 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당해 산업단지가 위치하는 시·도(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 이상의 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시를 포함한다)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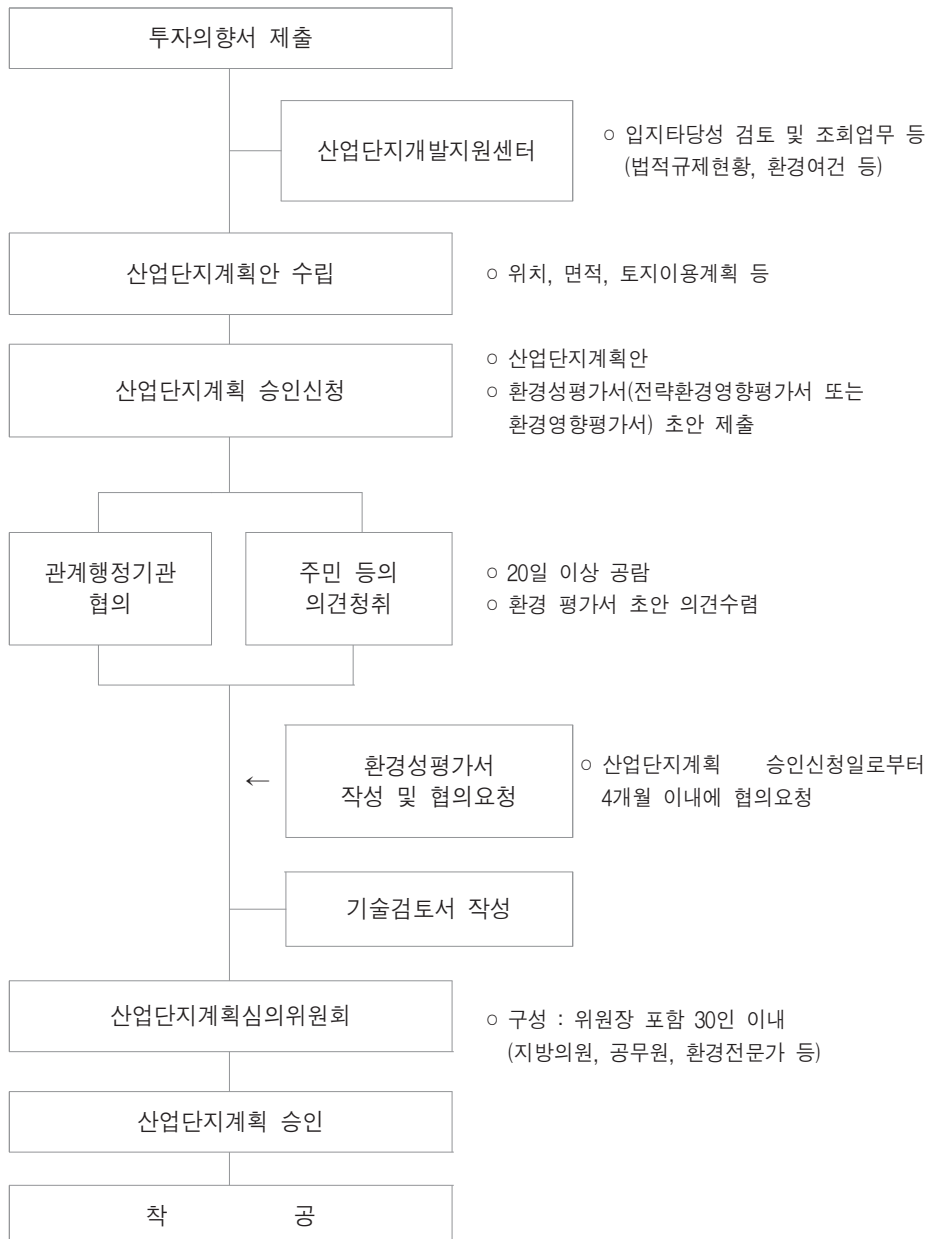
##### ○ 산업단지개발계획

- 산업단지의 명칭·위치·면적
-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 시행방법
- 주요 유치 업종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재원(財源) 조달계획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의한 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단지 개발의 입지수요,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인근 산업단지 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개발규모 등의 대안을 설정
  -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상의 추진 전략 업종, 환경오염 저발생 업종, 입지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의 대안을 설정



##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기간시설 활용도,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주거지역과의 완충공간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지구경계 대안을 설정

## ○ 토지이용계획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 주변 공원·녹지체계, 환경적·생태적 자연 자원, 완충녹지, 계획 생태면적률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설정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lt; 상위계획 &gt;

- 상위계획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국토의 보전 및 관리 방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 중 지역개발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권 개발 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산업분야 개발방향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

## &lt; 관련계획 &gt;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 관련계획상 제시된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입지여건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업종을 검토
- 해당 산업단지가 도시계획 상 보전축의 훼손 여부와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추가)
-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연계성을 고려(추가)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의 적정성 및 개발규모 대안 >

-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정한 공급규모 산정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가를 검토(추가)
-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의 입지수요, 주변 산업단지의 미분양율, 인근 산업단지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추가)
- 단계별 개발수요 고려한 산업용지 공급 시기의 적절성을 검토(추가)

### < 입주업종 대안 >

- 해당지역의 추진 전략 업종과 미래성장 유망업종,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 업종별 입지조건 등을 기초로 유치업종의 종류와 규모, 시기 등이 적정한지 검토

### < 입지선정 대안 >

- 물리적 조건, 토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제한 구역 등 개발 장애 여건 그리고 본 산업 단지와 연관되는 개발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
- 환경적 민감지역을 회피사항으로 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분포,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1, 2등급 등 생태 및 식생 우수지역, 법정보호종(동물) 서식지 및 법정보호종(식물), 희귀종 포함여부와 소음, 대기질 등의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정온시설 분포 여부를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 환경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지구계 설정 대안 >

- 재해요인 및 자연적 환경, 인문적 요인, 도시기반시설,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사업 및 기타 개별사업에 의한 경계 및 관련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을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 자연생태적 우수지역의 지구계 포함하고 보전축 등의 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구계를 설정하였는지 검토

#### < 토지이용계획 대안 >

- 산업단지 기능별 특성 및 규모를 기준으로 자연지형의 최대한 활용, 기반시설(도로, 용수, 항만, 철도)과의 합리적 연계, 배후도시, 기존 산업단지와의 원활한 연계, 상충기능(생산 대 주거)간의 최소한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사업지구 내부의 자연지형(경사 및 표고분석도,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수계지도 등 이용)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산업공해의 완화 및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완충녹지대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지형·경관, 급경사지, 습지, 녹지축 및 식생보전을 고려한 원형보전지 설정이 적정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지역의 분포 여부를 검토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지형 및 식생 훼손 과다여부, 대절토와 고성토 등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 등의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히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지하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수 이용시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용수 확보 및 이용 축소방안, 모니터링 등)을 검토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주거지와 근접 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정온을 요하는 시설(주거시설, 교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해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이격거리 확보, 이주,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

####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조성 계획 수립여부 검토
-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대체농지확보 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바. 참고사항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장 7조(검토기준) 참조
- **대안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 및 사례는 아래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계획의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연구(Ⅱ)'(2016.12, 환경부) : 환경부홈페이지/ 발행물/ 환경간행물
  -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포럼(도시개발, 산업단지, 2016.12, 환경부) : 환경부홈페이지/ 발행물/ 환경간행물



## 4. 농공단지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 용어(동법 제2조 제8호)
  - 농공단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당해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농어촌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서의 내용
  - 산업단지의 명칭
  -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주요 유치업종
    - ※ 첨부 서류 및 도면
      - 위치도
      -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지원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 농어촌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국가산업단지 지정절차 준용

###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5.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5항
- 용어(동법 제39조의2)
  - 재생사업지구 :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산업단지<sup>2)</sup>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재생사업지구가 위치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재생계획
  -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 재생사업의 시행자
  -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
  -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2)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 자원 조달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 재생사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 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국가산업단지 계획 절차 준용

##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6. 유치지역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 용어(같은 법 제2조5호)
  - 유치지역 :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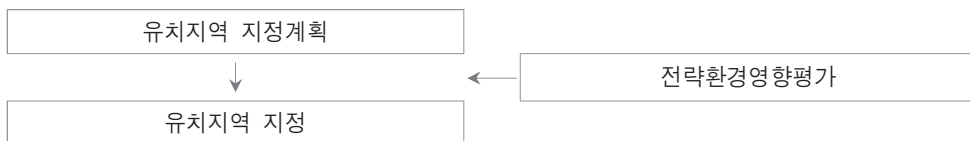
- 당해 유치지역이 위치하는 시·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위치 및 범위
  -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 기관
    -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절 차



###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7.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 용어

- 외국인투자지역 : 아래 각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외국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이 위치하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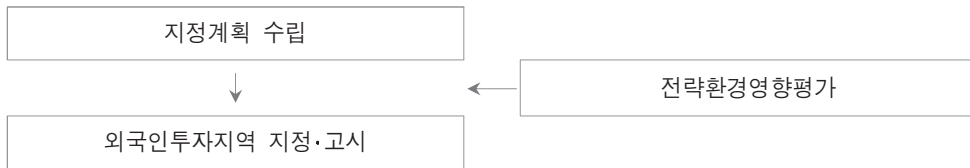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절차



##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8. 협동화 실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 용어(동 법 제2조 6호)
  - 협동화 :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협동화단지

### 다.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제3장 에너지 개발

### 1.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전원개발촉진법
- 용어(전원개발촉진법 및 시행령 등)
  - 전원설비 :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
  - 전원개발사업 :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
  - 전원개발사업구역 :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구역
    - ※ 이주 정착지,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된 도로·교량·항만·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돌·모래 또는 자갈 채취 구역을 포함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전원개발사업의 명칭,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위치 및 면적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전원개발사업은 전원개발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신청에 의하여 구역지정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나, 대부분의 경우 구역지정 없이 전원개발실시계획 수립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하여 진행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경우 구역지정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
- 구역지정 없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규모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인 경우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무관한 경우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내에서의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 마.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 관련계획 >
      - 전원사업개발 실시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입지의 타당성
  - 도시화된 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중화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주민 민원사항 중 환경관련사항 및 민원발생예방대책 검토
  - 송전탑 및 진입로 지형특성을 분석하여 임도·소로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불가피하게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식생우수지역에 대한 진입로 노선조정 및 도로 폭 최소화 등 검토, 지형 훼손(대절토사면 발생 등)이 심할 경우 헬기운반, 터널 등 제반 저감방안 검토
- 진입도로는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구계획 수립 유도
-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사시 정온시설(주거지역, 가옥, 교육시설, 요양시설, 문화재, 축사 등)에 소음·진동, 자기장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여부 및 저감대책 적정여부 검토
- 주변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산지의 정상부나 능선지역은 가급적 송전탑의 입지를 지양하고 자연적으로 차폐가 가능한 지역으로 유도
- 시설물 설치(풍력발전시설 등)에 따른 그림자·소음·결빙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영향여부 검토
- 해당 지역의 안개 등 기상특성 고려, 백연으로 인한 안개 가중으로 생활 환경 및 교통장애 발생 여부 검토

### < 풍력발전단지 조성 >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행정계획(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CO<sub>2</sub> 저감효과 등 검토
-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한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사업 특성으로 인한 입지여건(산지 능선부, 정상부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검토
  -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 시 노선 및 도로 폭 조정 검토
  -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에 따른 복구계획 검토
  - 도로 개설에 따른 생태계변화(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에 대한 저감방안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포함 시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식생, 지형 등의 전반적인 검토를 포함하고 중·장기적인 복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
  - 백두대간 보호구역, 정맥 등 보호가치가 있는 능선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
  -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 검토
    - 소음·저주파소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경관변화, 항공장애등 설치, 생태복원계획 등
-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2016.12, 환경부)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평가



## 제4장 항만의 건설

### 1.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어촌·어항법」 제7조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장관
- 대상지역범위 : 권역별 어촌 지역
- 용어정의
  - 어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어촌종합개발계획 주요 내용
  -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는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



###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어항 운영 현황과 기존시설 처리능력, 장래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연안시설 및 수산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신설, 활용, 기능변경 등의 개발 유형에 대한 대안을 설정
- 항내 정온도 유지를 위한 외곽시설과 물동량 처리를 위한 계류시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발규모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

###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어항기능 확보와 환경민감지역, 생활환경보호,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평면 배치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항만건설사업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유무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과의 적합성 여부(반영 여부 등) 검토
- 어촌종합개발계획과의 부합성(반영 여부 등) 검토

#### < 관련계획 >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법),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등에 부합한지 여부
-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의 적합성(반영여부 등) 여부 검토
-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등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개발계획 수립 대상 어항 내 시설의 변경 및 보수·보강·증축 등을 통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위치하는지를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항내 정온도를 평가하며, 정온도 미확보 시 확보가 가능한 규모로 산정되었는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보전해역 등의 용도지역·지구의 포함여부 및 영향을 검토
- 생태자연도 I 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I 등급 지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훼손 여부를 검토
- 해안선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
- 암석해안, 우수한 자연경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지형경관 I 등급 지역 등) 등의 존재여부, 생태계 보존 필요지역 및 풍부한 수산자원 보유해역 포함 여부를 검토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암반 조간대, 사빈, 갯벌, 사구, 습지, 잘피 및 해조류 서식 조하대 등의 자연자원 훼손 여부를 검토
-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원의 신규 개발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의 훼손을 지양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재료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지를 검토
- 환경영향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개발사업에 의한 직접영향 외에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 해수교환을 변화를 비교 검토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해양수질 : 생활환경기준,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역별 수질등급기준 유지·달성 여부를 검토
- 공사로 인한 부유사확산에 대한 영향을 검토
- 해양저질 : 해저퇴적물 해양환경기준(해양환경관리법) 유지·달성 여부를 검토



- 대기환경기준, 소음환경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유지·달성 여부를 검토
-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연안관리해역, , 연안오염총량관리지역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 여부를 검토

#### < 사회·경제 환경 및 기타 >

- 장래 어항 물동량 수요 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및 난개발 가능성을 검토
- 개발로 인한 주변 어업피해(어업권,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 영향 예측 및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2. 항만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항만기본계획
  -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항만기본계획을 변경(수정계획)
- 항만 :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 :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 항만구역 : 항만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전국의 무역항 및 연안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 무역항(31개) : 국가관리항 14개, 지방관리항 17개
  - 연안항(29개) : 국가관리항 11개, 지방관리항 18개

구 분	항 명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목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국가관리연안항 (11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대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지방관리연안항 (18개)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흥도항, 진도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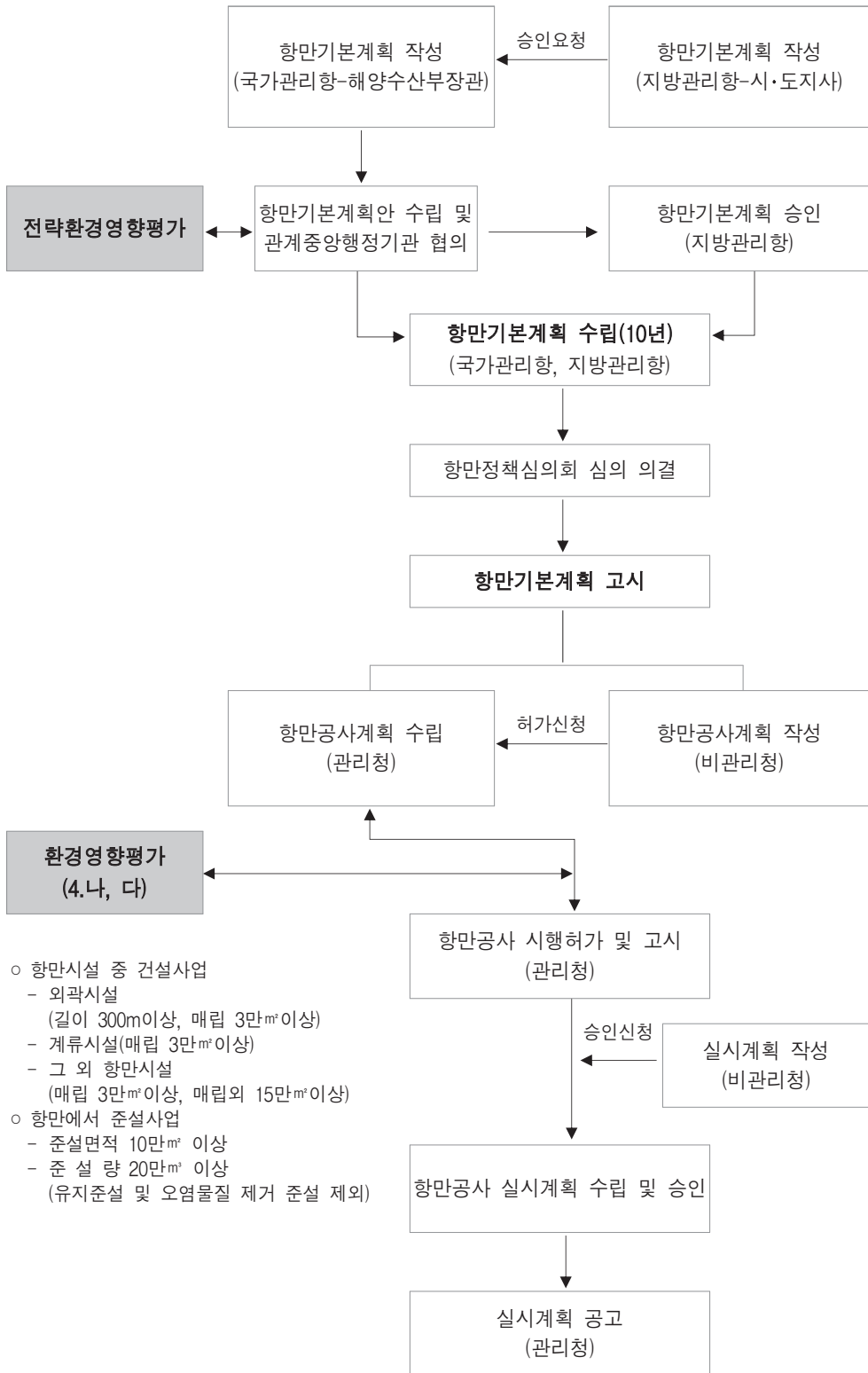
-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 포함)에 관한 사항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현재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 수정계획(2016.10) 수립·운영 중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2차 계획 수정계획	제3차 계획	제3차 계획 수정계획
수립일	1995. 4.	2001. 12	2006. 12	2011. 7	2016. 10
계획기간	1992~2001	2002~2011	2006~2011	2011~2020	2017~2020







##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추가)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추가)
  - 항만계획과 관련한 상위 및 관련계획, 항만별 개발방향, 장래 물동량 및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항만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기본방향에 대한 대안을 설정(추가)
  - 항만 운영 현황과 기존시설 물동량 처리능력, 장래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신설, 활용, 기능변경 등의 개발 유형에 대한 대안을 설정(추가)
  - 항내 정온도 유지를 위한 외곽시설과 물동량 처리를 위한 계류시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수역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발규모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추가)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추가)
  - 항만기능 확보와 환경민감지역, 생활환경보호,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평면배치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추가)
  - 항만건설 계획 수립 시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목표연도별 장래 수요 예측과 현재의 물동량 및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단계별 개발 대안을 설정(추가)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상위계획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국토의 보전 및 관리 방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추가)
      - 상위계획 중 지역개발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추가)

**< 관련계획 >**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추가)
  - 항만기본계획과 관련성을 갖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상충성 여부를 검토(추가)
  - 항만기본계획과 관련된 항만계획인 항만배후단지종합계획,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추가)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사업 유형의 대안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였는지를 검토(추가)
- 개발 계획 대상 항만의 항만법 상 부여된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국제 및 연안 화물 물동량 처리, 여객 수송, 영해 관리, 관광 활성화, 피항 등)에 부합되는 개발 방향이 설정되었는지를 검토(추가)
- 항만의 기본적 기능인 물동량 수송·처리 외 관광 활성화 등 기타 기능을 개발 목표로 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목적에 적합한 성격의 대안을 설정하였는지를 검토(추가)

**< 항만개발 유형 대안 >**

- 개발계획 수립 대상 항만의 세권력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만 시설의 위치 여부 및 위치할 경우 신규 발생 물동량의 처리 가능한지를 검토(항만선석별 처리능력 과부족 실태)(추가)
- 개발계획 수립 대상 항만내 기능 변경 및 보수·보강·증축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규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위치하는지를 검토(예시 모래 부두 → 시멘트 부두)(추가)

**< 항만시설 규모 대안 >**

- 개발계획 수립 대상 항만의 계획 목표연도 예측 물동량 및 여객 수요가 적정한지를 검토(추가)
- 현재 운영 중인 항만시설의 항내 정온도 및 항만가동률을 평가하며, 정온도 미확보 시 확보가 가능한 적정 규모로 산정되었는지를 검토(추가)



- 발생 물동량 및 여객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두 등 계류시설의 규모(접안시설 연장, 야적장 면적 등)가 적정한지를 검토(추가)
- 항내 운항 선박의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역시설 규모(폭원, 심도 등)와 수역시설 조성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추가)

#### < 입지선정 대안 >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추가)
- 환경적 민감지역 회피사항으로 환경관련 용도지역, 식생 및 생태우수지역(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법정보호종 서식지, 주요 자연 및 경관자원 등의 훼손 여부 등을 검토(추가)

※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 단계별 개발 대안 >

- 당초 항만의 물동량 및 여객 운송 수요 예측치와 현재의 물동량 등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항만의 추가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추가)
- 물동량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시기가 물동량 예측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추가)
- 단계별 대안의 선정시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단계는 후순위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추가)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보전해역 등의 용도지역·지구의 포함여부 및 영향을 검토(수정)
- 생태자연도 I 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I 등급 지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추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훼손 여부를 검토

- 해안선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
- 암석해안, 우수한 자연경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지형경관 I 등급 지역 등) 등의 존재여부, 생태계 보존 필요지역 및 풍부한 수산자원 보유해역 포함 여부를 검토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암반 조간대, 사빈, 갯벌, 사구, 습지, 잘피 및 해조류 서식 조하대 등의 자연자원 훼손 여부를 검토(추가)
-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재료원의 신규 개발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의 훼손을 지양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재료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지를 검토
- 환경영향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개발사업에 의한 직접영향 외에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 해수교환율 변화를 비교 검토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해양수질 : 생활환경기준,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역별 수질 등급기준 유지·달성 여부를 검토
- 항만공사로 인한 부유사확산에 대한 영향을 검토
- 해양저질 : 해저퇴적물 해양환경기준(해양환경관리법) 유지·달성 여부를 검토
- 대기환경기준, 소음환경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유지·달성 여부를 검토
-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연안관리해역,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 항만, 연안오염총량관리지역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 여부를 검토

#### < 사회·경제 환경 및 기타 >

- 장래 항만 물동량 수요 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및 난개발 가능성을 검토
- 개발로 인한 주변 어업피해(어업권,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 영향 예측 및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수정)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추가)



### 3.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제5조)
  -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으로서 고시하는 지역
- 신항만 : 수출입화물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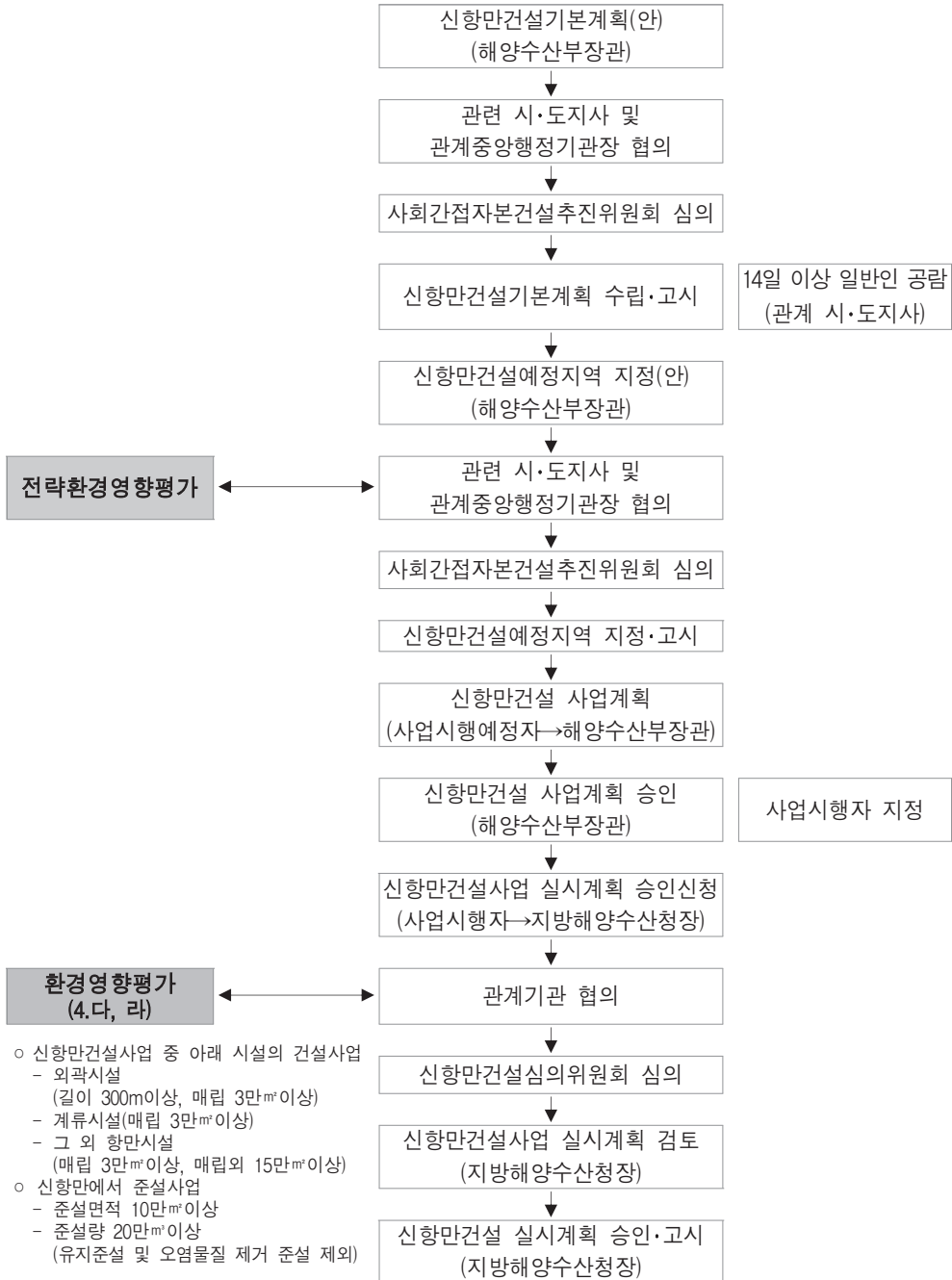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구 분	항 명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예정지역(10개)	인천북항,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목포신외항,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만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예정지역의 명칭
- 지정목적 또는 변경목적
- 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 지정연월일 또는 변경연월일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마. 대안의 설정 및 주요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4. 어항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어촌·어항법 제17조(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어항 :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
  - 국가어항 :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 :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 어항구역 :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어항지정 :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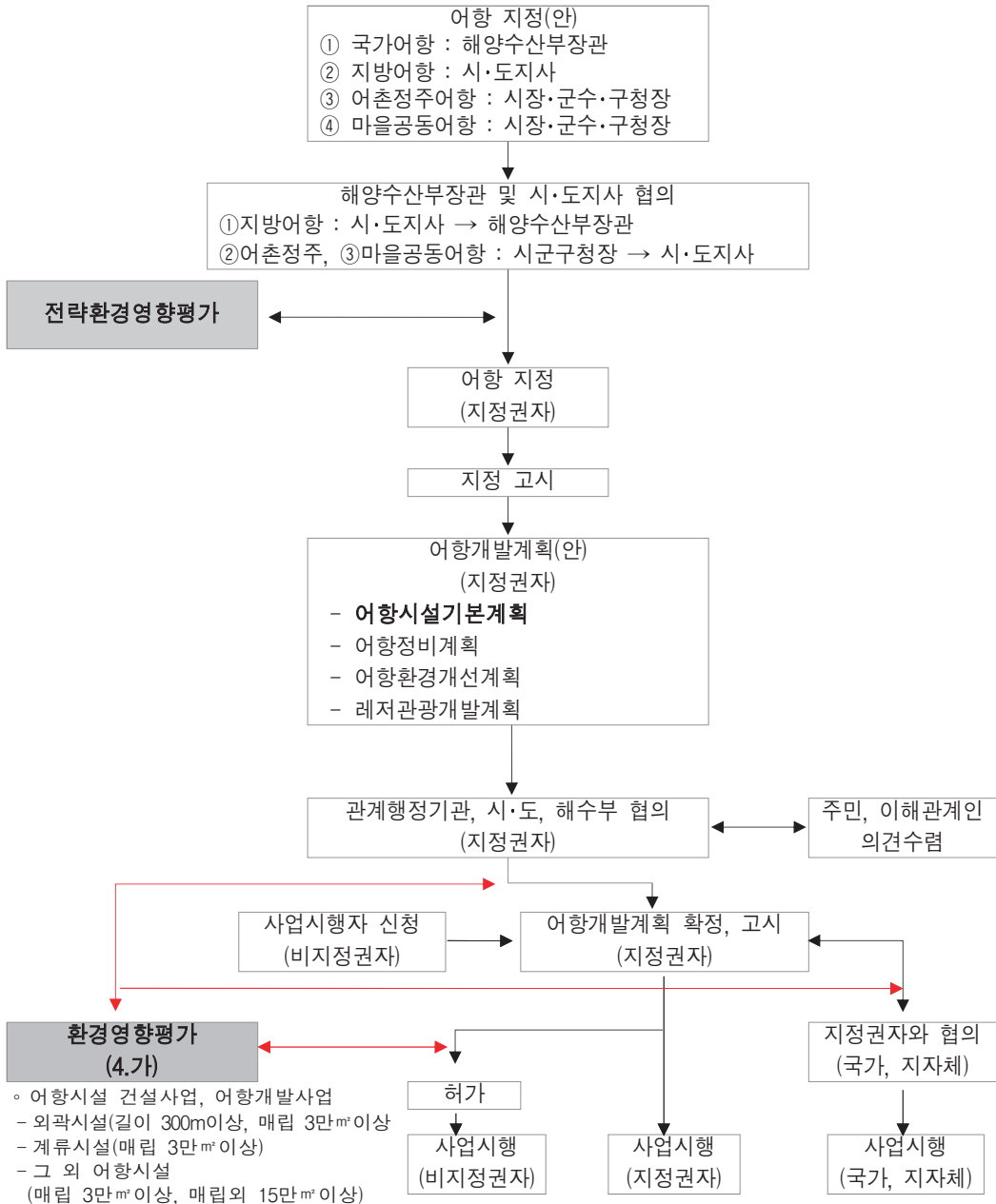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어항은 지정권자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므로 지정권자에 따라 협의기관을 달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 환경부장관
  - 지방어항 : 시·도지사 ↔ 유역(지방)환경청장
  -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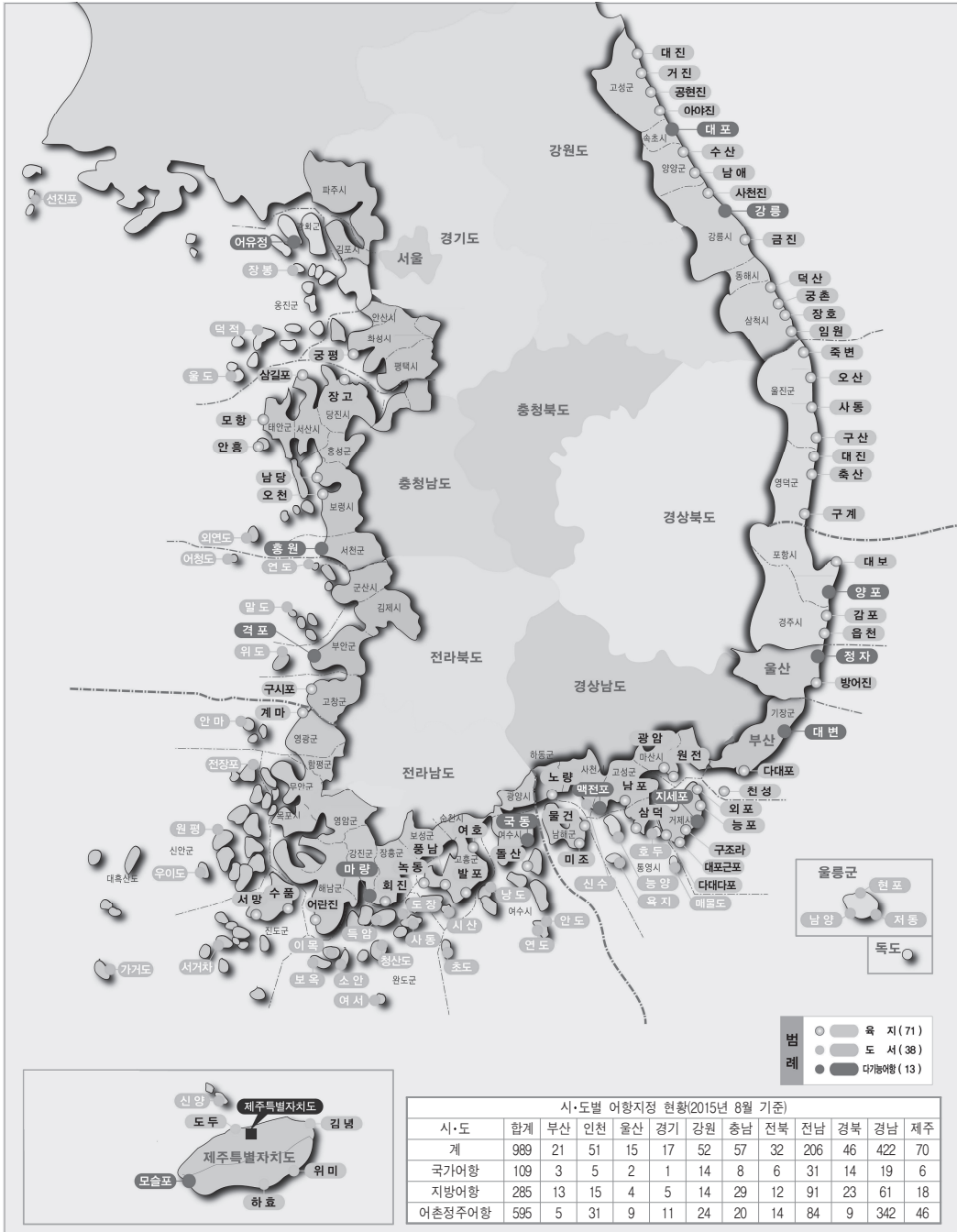
## 마.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유무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3차 수산 진흥종합대책과의 적합성 여부(반영 여부 등) 검토
    - < 관련계획 >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법),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등에 적합한지 여부
      -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의 적합성(반영여부 등) 여부 검토
      -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 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어촌·어항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참조

# 국가어항 관할 및 위치도





## 5.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 마리나항만 사업계획(제8조)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마리나항만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공모를 통해 수립
  - ※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수립은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 입지지표 등을 포함하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함(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참조)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대상항만 : 62개 항만(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립 완료)

구 분		항 명
마리나항만 구역 (6개소)	수도권	김포터미널, 제부, 왕산(추가)
	전남권	목포
	경남권	총무
	제주권	중문(변경)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수도권	전곡(변경), 덕적도(변경), 서울(추가), 인천(추가), 시화호(추가), 영종(추가), 흘곶(변경), 방아머리(변경)
	충청권	홍원(변경), 창리(추가), 왜목(추가), 안흥(추가), 무창포(추가), 장고항(추가), 원산도(추가)
	전북권	고군산(변경), 비응(변경)
	전남권	목포(변경), 소호(변경), 여수엑스포(변경), 웅천(추가), 화원(변경), 계마(추가), 진도(변경), 완도(변경), 광양(추가), 남열(변경)
	경남권	총무(변경), 삼천포(변경), 명동(변경), 당항포(변경), 지세포(추가), 동한(추가), 구산(변경), 하동(변경)
	부울권	부산북항(변경), 진해(변경), 수영만(변경), 운촌(추가), 고늘(변경), 백운포(변경), 동암(추가), 다대포(추가)
	경북권	양포(변경), 후포(변경), 두호(변경), 감포(추가), 강구(추가)
	강원권	수산(변경), 강릉(변경), 속초(변경), 덕산(변경)
제주권	김녕(변경), 도두(변경), 이호(변경), 신양(변경), 화순(추가), 강정(변경)	

주) 목포, 총무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추가 개발예정으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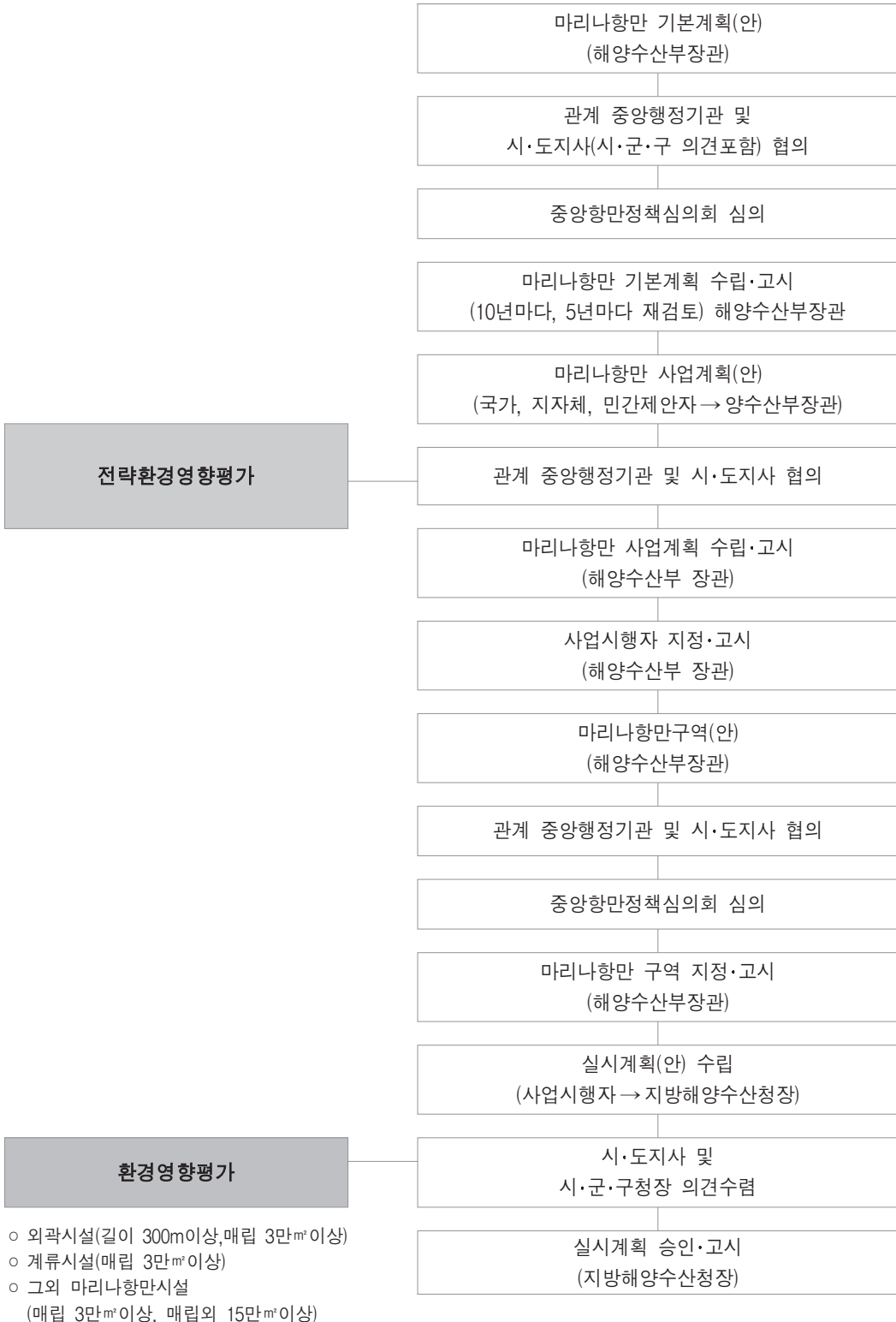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사업의 명칭
-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개발사업 시행기간
- 채원조달계획
-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 절차

- 현재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수립·운영 중에 있으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마리나항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행

구 분	제1차 계획	제1차 계획 수정계획	제2차 계획(예정)	비 고
수립일	2010. 1	2015. 7	2020.	
계획기간	2010~2019	2015~2019	2020~2029	



## 마. 대안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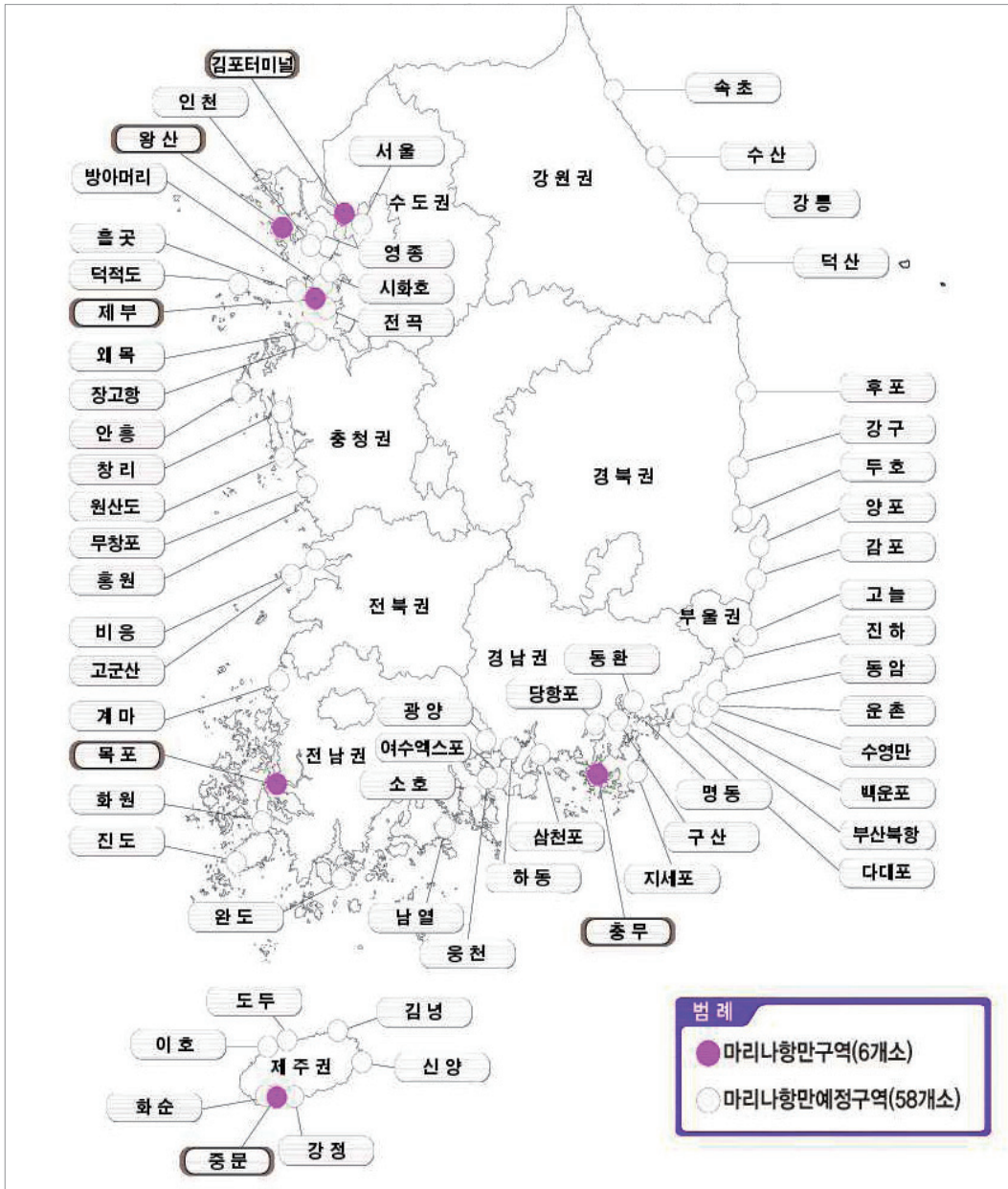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적합성 여부(기본방향 등) 검토
      - 제1차 마리아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반영여부 등) 검토
        - ※ 실제 상위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지, 상위계획 등의 기본방향에 부합한지, 연계성 여부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
    - < 관련계획 >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법),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등에 적합한지 여부
      -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의 적합성(반영여부 등) 여부 검토
      - 해양환경종합계획(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적합한지 여부
      -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입지의 타당성
  -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참조



<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 위치도 >





## 제5장 도로의 건설

### 1. 도로기본계획(농어촌도로)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 용어(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시행령 등)
  - 농어촌도로 :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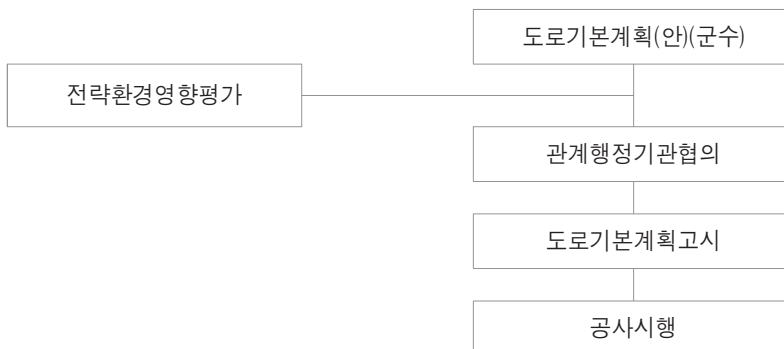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로의 건설공사(p.238)를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국토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 관련계획 >
      - 도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 반영,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 기타 계획의 적정성
    - 교통수요 및 지표의 타당성, 도로망계획의 대안 검토
    -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연계성 고려
    - 계획지구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 환경보전관련 입지규정 준수, 각종 보호지역 보전대책, 환경적 여건 변화와 이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고려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
    -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1등급, 녹지자연도8등급, 주요종 서식지(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존재유무 등
    - 특정 보호 동·식물 서식 및 분포지역 통과시 보호 방안 수립 및 대체·이주 서식지 조성 방안
    - 특이한 지형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등) 및 자연자원(주상절리 등)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의 보전여부

- 교량공사, 제방축조 등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이 하천, 습지 등의 담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
- 생활환경
  - 주거 밀집지역, 도심지 통과시 소음, 대기 등 환경영향 노출인구의 최소화 방안
  - 인접하여 운영중인 기존도로 활용여부 및 개설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도시의 추가건설로 인한 도로소음 등 환경상 악영향 누적여부 및 대책
- 사회·경제 환경 및 기타
  - 주거 밀집지역, 도심지 통과시 소음, 대기 등 환경영향 노출인구의 최소화 방안



## 2. 도로의 건설공사계획(고속도로 이외 도로 등)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로법」(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용어(도로법 및 시행령 등)
  - 도로 :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도로
    - ※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는 시설이나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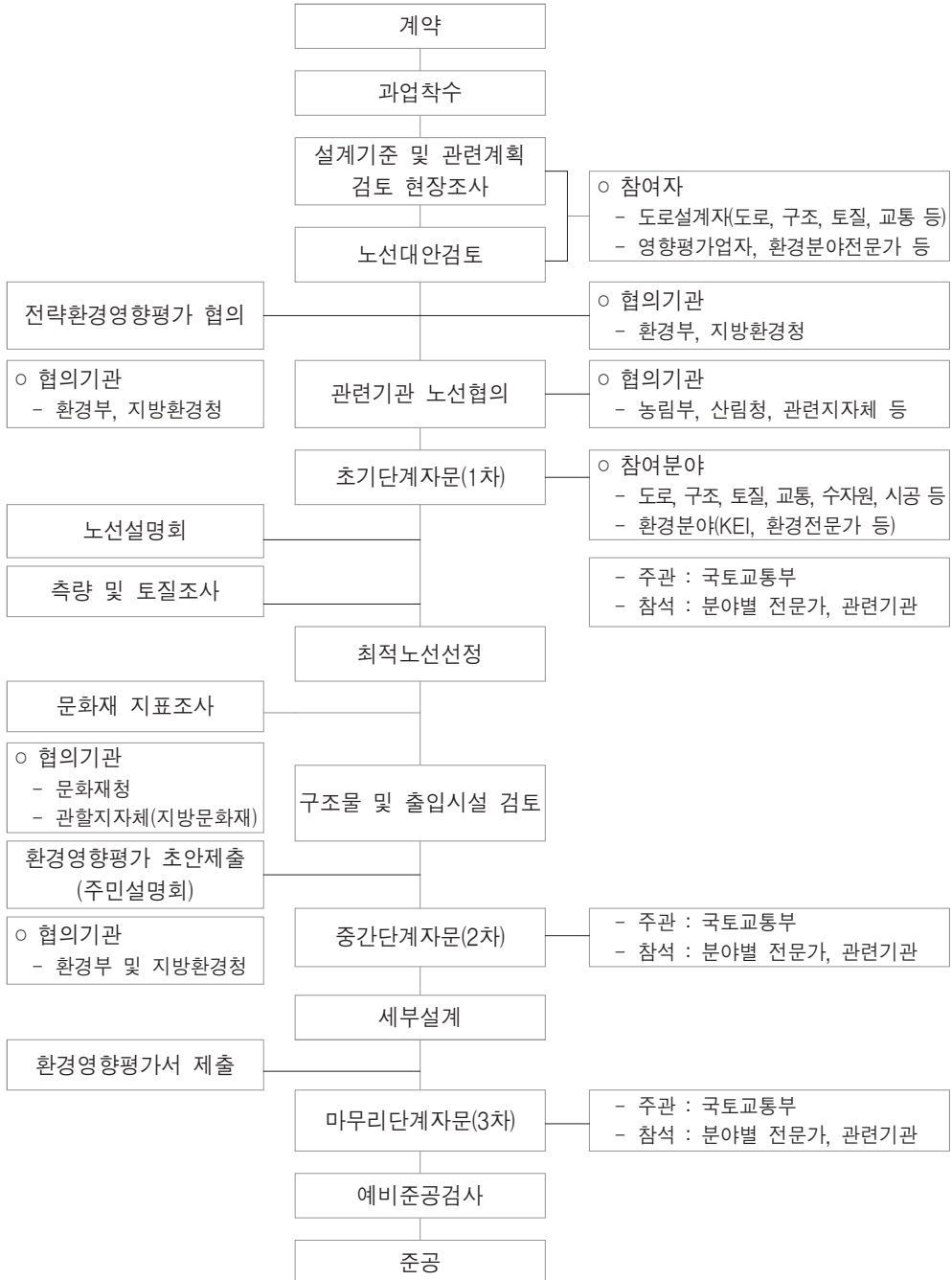
-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고속국도는 제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전국도로망의 확충 방향·목표 및 건설계획
- 사업의 개요 및 사업기간, 사업우선순위
- 공사비·보상비 등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계획
- 설계기준·기술개발,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로건설공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절차는 동일





##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교통량 현황, 장래 교통량 추정, 분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존도로 활용, 도로의 신설, 주변도로 연계 등의 도로건설 종류의 대안을 설정
    - 교통수요량 추정과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2차로 유지, 2+1차로, 4차로 확장 등의 도로 규모(차로수)에 대한 대안을 설정
    - 도로의 기능과 통과지역의 여건, 지형적 조건, 교통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표준설계속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10km/hr, -20km/hr)을 설정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 환경민감지역 등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
    - 생태축 단절과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의 훼손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를 회피, 최소화,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상위계획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국토의 보전 및 관리 방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 중 지역개발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
      - 상위계획 중 교통관련계획에 해당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차수정계획, 2001~2020),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

**< 관련계획 >**

- 도로기본계획 및 도로망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 관련계획의 주체,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사업목적 및 본 도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였는지를 검토
  - 주변의 개발계획(도로, 철도, 택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
- 기타 계획의 적정성
- 교통수요 및 지표의 타당성, 도로망계획의 대안 검토
  -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연계성 고려
  - 계획지구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 환경보전관련 입지규정 준수, 각종 보호지역 보전대책, 환경적 여건 변화와 이에 대한 저감방안
  - 계획의 규모·수요·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고려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로건설 유형 대안 >**

- 총량교통수요 추정, 사회경제지표 예측, 교통수단 분담율 예측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
- 기존도로의 현재 교통량과 장래 교통량에 대한 설계서비스 수준이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
- 장래 도시발전, 도시 성장 속도,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존도로 활용과 우회노선 계획 등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를 검토

**< 도로 규모(차로수) 대안 >**

-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 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년도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로수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
- 교통량 예측 추이를 반영한 단계별 차로수 확장 계획(2+1, 4차로 확장 등) 등 시기별 대안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 < 도로 설계속도 대안 >

- 도로사업의 추진 목표와 지형적 특성(평지, 구릉지, 산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서비스 및 도로설계속도를 결정하였는지를 검토
- 계획노선의 기하구조가 지형여건과 계획 교통량 등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를 검토
- 지형 및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계속도와 설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검토

#### < 전체 및 구간별 노선 대안 >

- 국가 및 지역차원의 도로사업 계획과의 연계성, 장래 도시 발전축의 저해, 교통소통 및 안전, 주변의 개발계획과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
- 환경적 민감지역 회피사항으로 환경관련 용도지역, 주요 산줄기 및 생태축, 식생 및 생태우수지역(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법정 보호종 서식지, 주요 자연 및 경관자원 등의 훼손 여부와 대규모 절·성토 발생, 정온시설에 대한 환경기준 분포, 생활권 단절 등을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 환경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 등의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근접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화, 교량화,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근접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화,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범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근접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화, 교량화,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 교량화,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이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근접통과 여부 및 대안(노선변경, 터널, 교량화,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과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장대터널을 계획한 경우 터널굴착에 의한 지하수 변동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과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차수, 모리터링 등)을 검토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피암터널설치,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
- 대규모 절·성토 구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가 발생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설계기준완화, 터널, 교량화 등)을 검토

#### < 생활환경 >

-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근접통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정온을 요하는 시설(주거시설, 교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해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이주,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
- 주거 밀집지역, 도심지 통과 시 소음, 대기 등 환경영향 노출인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
- 인접하여 운영중인 기존도로 활용여부 및 개설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도시의 추가건설로 인한 도로소음 등 환경상 악영향 누적여부 및 대책
-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근접통과로 인해 조망이 차단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교량화 등)을 검토



#### < 사회·경제 환경 및 기타 >

- 기존 도로가 인접한 경우 기존 도로의 활용방안(설계기준완화 등)을 검토
- 주거지를 관통하여 생활권의 단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이주, 통행로 확보 등)을 검토
- 도로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교량화 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노선이 변경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사.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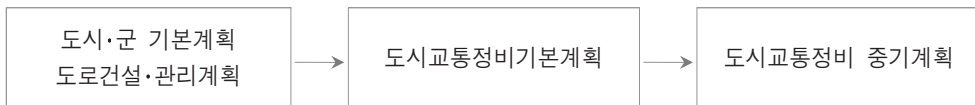
- **대안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 및 사례는 아래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계획의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연구(II)'(도로, 하천, 2016.12, 환경부) : 환경부  
홈페이지/발행물/환경간행물

### 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수립권자 : 시장·군수
- 계획수립기간 : 20년
- 대상지역범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
- 용어정의
  - 도시교통정비지역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시설의 개선
  -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의한 절차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 (자료요청)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 (협의)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대상지역이 도 내인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
  - (심의 및 의견수렴)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
  - (제출)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에게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
  - (의견제시)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확정·고시)시장·군수는 제시받은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도시교통에 대한 주요 목표와 지표,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선정 및 목표치(지역간 이동속도 단축, 비개발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수단 및 녹색교통수단의 확충 비율 등)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체계나 정비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수단·방법

- 환경 및 에너지 문제, 장기적 교통체계,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 교통 수단별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도시기간 교통시설의 비중에 대한 대안을 설정
- 다양화, 복잡화, 연쇄화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통시설확충 등 양적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 등 질적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수요·공급

- 교통수단별 한계용량과 수송 분담율, 교통 서비스, 경제성장, 도시공간구조 개편,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 수요 예측과 공급에 대한 대안을 설정

#### ○ 시기·순서

- 도시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 전략에 대해 수송수요와 부족재원 등을 감안한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대안을 설정
- 도시개발 등의 개발수요 및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과거에 계획되었지만 현재 타당성이 부족한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설정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

##### < 상위계획 >

- 국토종합계획, 국가도로망기본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 관리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 관련계획 >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기후변화협약대응의 종합대책 등 국가환경정책 및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절성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이 교통기반시설의 확보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
-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각의 추진전략이 구체성과 실효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교통수단별 교통문제와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오염물질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수송 분담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교통 수단별 연계성 강화, 교통수요관리 등의 질적 교통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수단별 합리적으로 수요가 예측되고 적정하게 공급계획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 목표연도의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질, 생태단절, 서식지 훼손 등의 환경질의 변화가 현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감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 개인 승용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간선철도, 광역전철, 광역버스 등 대중 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
- 교통망 구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생태서식지 지형 및 생태축, 자연경관, 수자원 등을 보전하고 환경보호 등 질적 교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친환경적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도로교통 수단에 따라 대기환경 등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므로 도시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도로교통 수단의 비율이 적정한지와 대기질 개선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 등의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근접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화, 교량화, 보호방안 등)을 검토(수정)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근접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화,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근접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화, 교량화,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히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근접통과 여부 및 대안(노선변경, 터널, 교량화,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과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통과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노선변경, 터널, 교량화,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수정)

#### < 생활환경 >

-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근접통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정온을 요하는 시설(주거시설, 교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해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이주,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수정)

#### < 사회·경제·환경 및 기타 >

- 주거지를 관통하여 생활권의 단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노선변경, 이주, 통행로 확보 등)을 검토



## 제6장 수자원의 개발

### 1. 댐건설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용어정의
  - 댐 :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기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서 여수로·보조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
  - 다목적댐 :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하는 댐(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
  - 홍수조절용댐 :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홍수조절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댐
  - 용수댐 :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
  - 댐건설기본계획 :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수립·승인

#### 나. 적용범위 및 규모

-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하는 높이 15m 이상의 다목적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높이 15m이상의 생활용수·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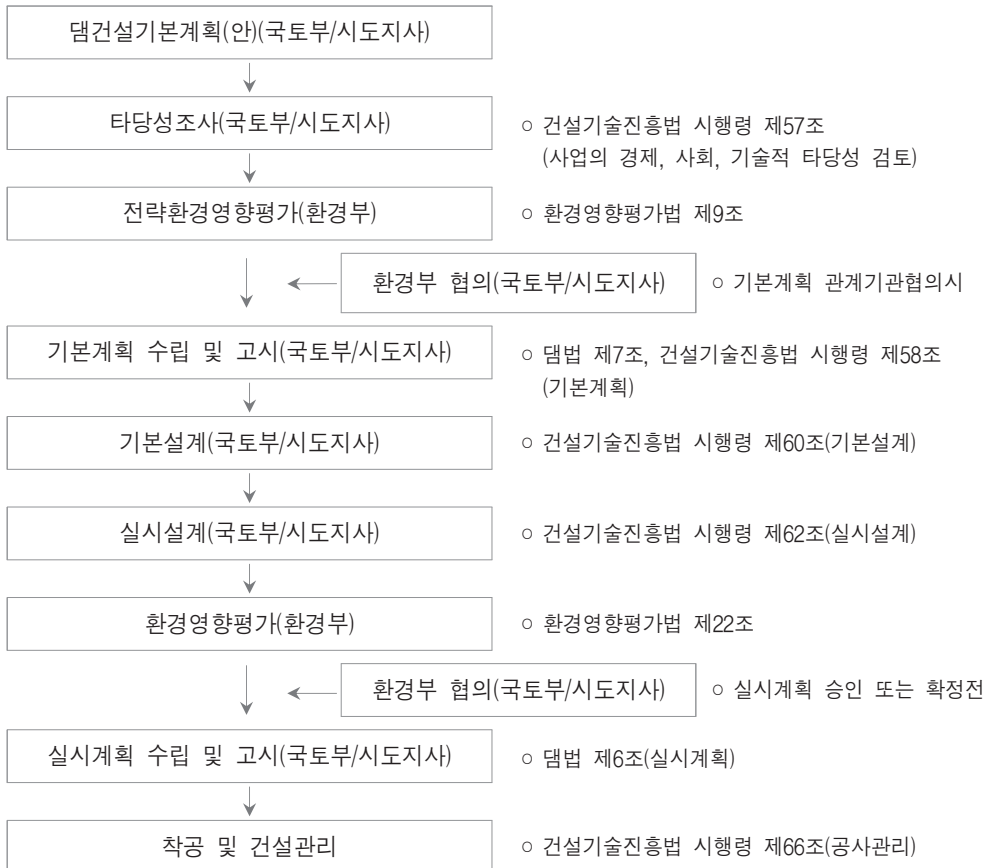
- 건설의 목적,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규모와 형식,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 댐건설비용(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댐건설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수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
-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과 댐의 수질보전 사항
-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댐건설 여부 및 위치, 규모, 수혜지역 등 타당성조사 성과를 토대로 댐건설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고시





## 마.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로의 건설공사(p.238)를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댐건설과 관련한 상위계획 부합여부 검토
    - 댐건설장기계획(국토교통부)
      - ※ 일부계획은 댐건설장기계획에서 미포함(1,000만톤 미만 농업용수댐 등)
  - 댐건설과 관련한 관련계획 부합여부 검토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교통부)
    - (전국)수도정비계획(환경부,국토부)
    - 유역종합치수계획(국토교통부)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댐건설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과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수립여부를 비교,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검토
      - ※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운용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결과(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등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로의 건설공사(p.238)를 참조하여 작성

## 사. 참고사항

-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 제7장 철도의 건설

### 1. 도시철도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도시철도기본계획 : 시·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
- 도시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된 교통권역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 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
- 도시철도건설 :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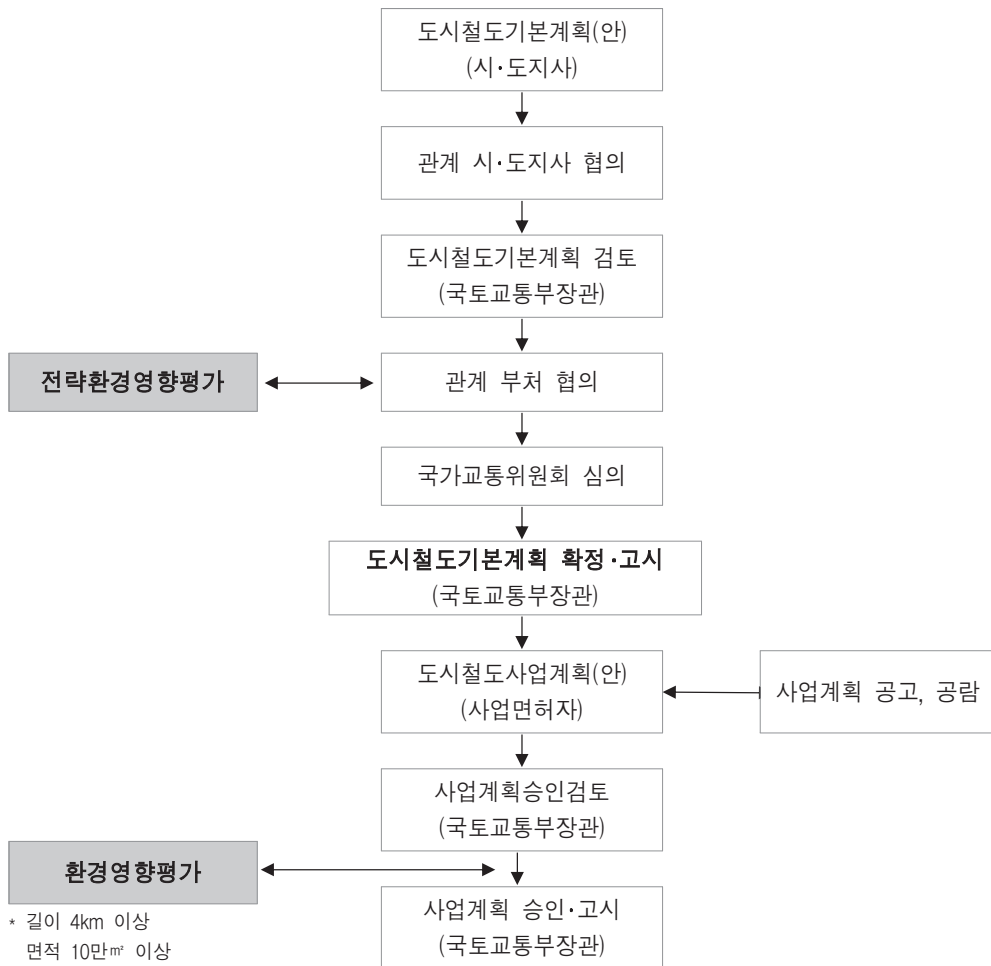
- 도시교통권역내의 도시철도로 지정·고시된 건설계획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과 그 밖에 타당성의 평가
-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해당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조달 방안, 건설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부장관에게 전략 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협의 요청



### 마.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로의 건설공사(p.238)를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물관리 종합대책,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 여부



-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교통 대체기능 확보, 수송체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도시의 균형개발 등 도시개발방향과의 부합여부
- 교통체계측면, 이용자 측면,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노선별 분석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도시철도 상호간 및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대중교통수단별 상호보완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여부 등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지구 포함 여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기념물(경승지 포함), 천연기념물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지역
  - 해안의 조간대 지역(암반, 사빈, 사구, 갯벌 등)
- 터널굴착 등으로 지하수맥의 차단,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위 변화로 지반안정 및 자연·생활환경영향 검토
- 절·성토 통과구간 주변경관과의 이질감 및 차폐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관을 고려한 지형변화 최소화 검토(터널 및 교량 등)
-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므로 대기환경기준 준수 및 대책의 적정성
- 대도시 지하터널구간은 공사중, 운영중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이를 최소화되도록 주변지역을 고려한 위치선정 및 공법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사. 참고사항

구분	상위계획	관련계획	
철도	○ 국토종합개발계획(국토교통부)	교통시설 관련계획	○ 지자체별 교통기본계획
	○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교통부)		○ 기타 관련교통시설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토교통부)	지역관련 계획	○ 지자체별 종합개발계획
	○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국토교통부)		○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 교통시설투자계획(국토교통부)		○ 기타 해당지역과 관련된 계획

-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고시)의 내용 위주로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2. 철도건설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철도건설법(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철도건설기본계획 :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철도건설사업 :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건설사업
- 철도시설
  - 철도의 선로,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역사 등)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등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사업별 건설 기본계획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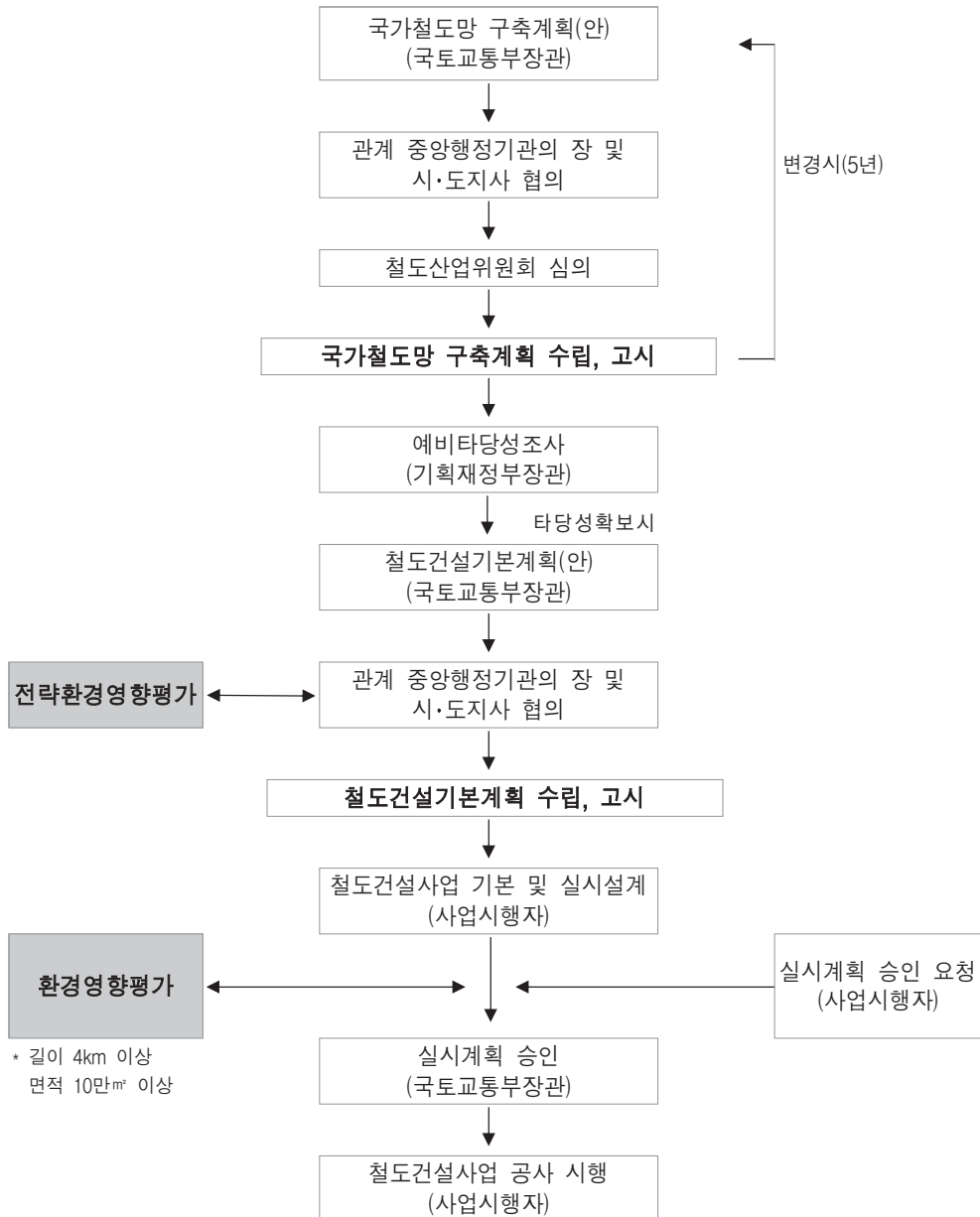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예측,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 평가
-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 공사내용, 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진대책
- 예정노선을 포함한 지형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 건설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소요량 및 확보계획
- 철도교통 수요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고시(단,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협의 요청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
- 환경보전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한 복수 대안노선의 비교 분석의 적정성 검토
- 철도노선 및 정거장 주변지역의 여건 및 특성, 장래개발계획과의 일치성 등 토지이용계획이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여부
- 교통시설간의 연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노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 주변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고려한 노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지구 포함 여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기념물(경승지 포함), 천연기념물
  - 해안의 조간대 지역(암반, 사빈, 사구, 갯벌 등)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지역
- 하천횡단, 대절토 구간에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이 하천 및 농경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방지대책
- 터널굴착 및 과도한 절토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위 변화로 지반안정 및 자연·생활환경영향 검토
- 절·성토 통과구간 주변경관과의 이질감 및 차폐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관을 고려한 지형변화 최소화 검토(터널 및 교량 등)
-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의 경우 환경기준 준수 및 대책의 적정성 등

## 바. 참고사항

-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고시)의 내용 위주로 검토



## 제8장

# 공항의 건설

## 1. 신공항건설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수도권신공항 :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비행장
- 신공항건설사업 :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사업
  -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에서 신공항 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수도권 신공항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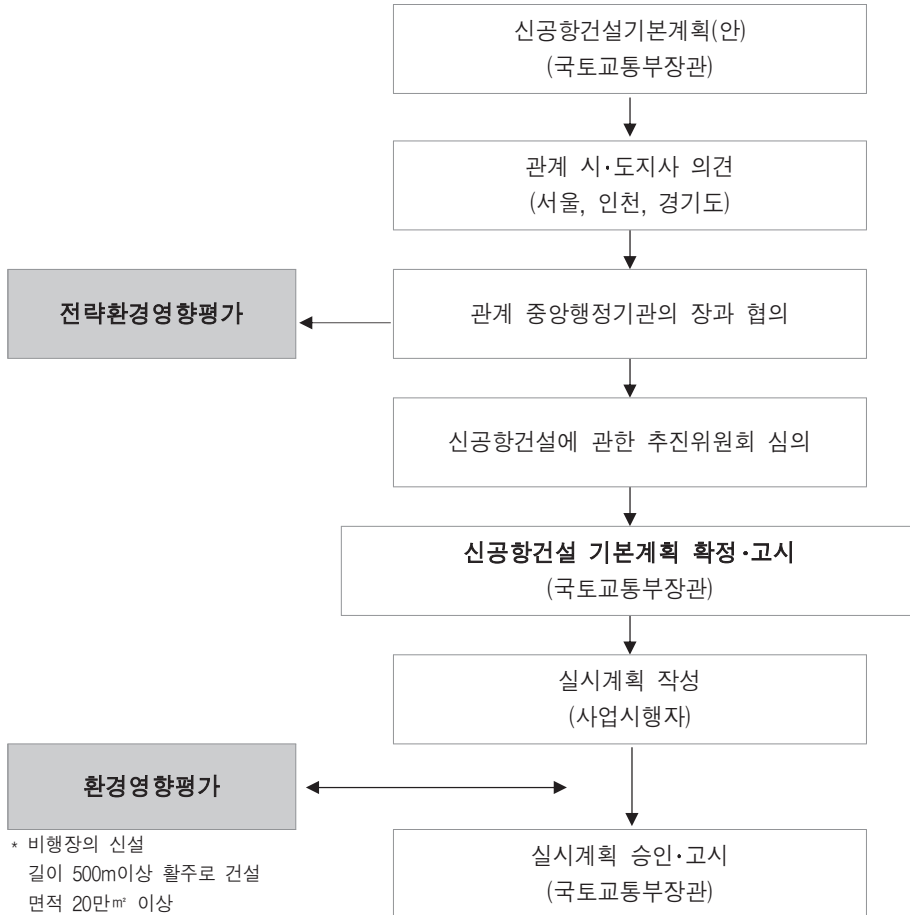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건설의 기본방향
- 건설계획의 개요

- 건설기간
- 자금계획 등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신공항건설기본계획 수립시 미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협의 요청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항공정책기본계획, 도로망, 철도망 계획 등 상위·연관계획 및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
- 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경관계획 등 지역의 환경기준 및 시책 등과의 연관성 또는 부합 여부 검토
- 환경보전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한 복수 대안지구의 비교 분석의 적정성 검토
- 공항 주변지역의 여건 및 특성, 장래 개발계획과의 일치성 등 토지 이용계획이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여부
- 주변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지구 포함 여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기념물(경승지 포함), 천연기념물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지역
  - 해안의 조간대 지역(암반, 사빈, 사구, 갯벌 등)
- 공항시설 운영 및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영향과 이를 고려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 여부, 소음초과지역에 대한 적정대책(이주, 방음벽, 방음림 설치, 공항운영계획 등) 수립 여부 검토
- 항공기 소음평가(등소음도 곡선, WECPNL) 및 영향권 내 지역별 대책
- 발생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운영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의 적정성 검토 등

## 2. 공항개발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항공법
- 공항개발기본계획 :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려는 공항의 공항개발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
- 비행장 :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공항 :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곳
- 공항시설 :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공항구역 :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 공항개발예정지역 : 공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
- 공항개발사업 :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공항개발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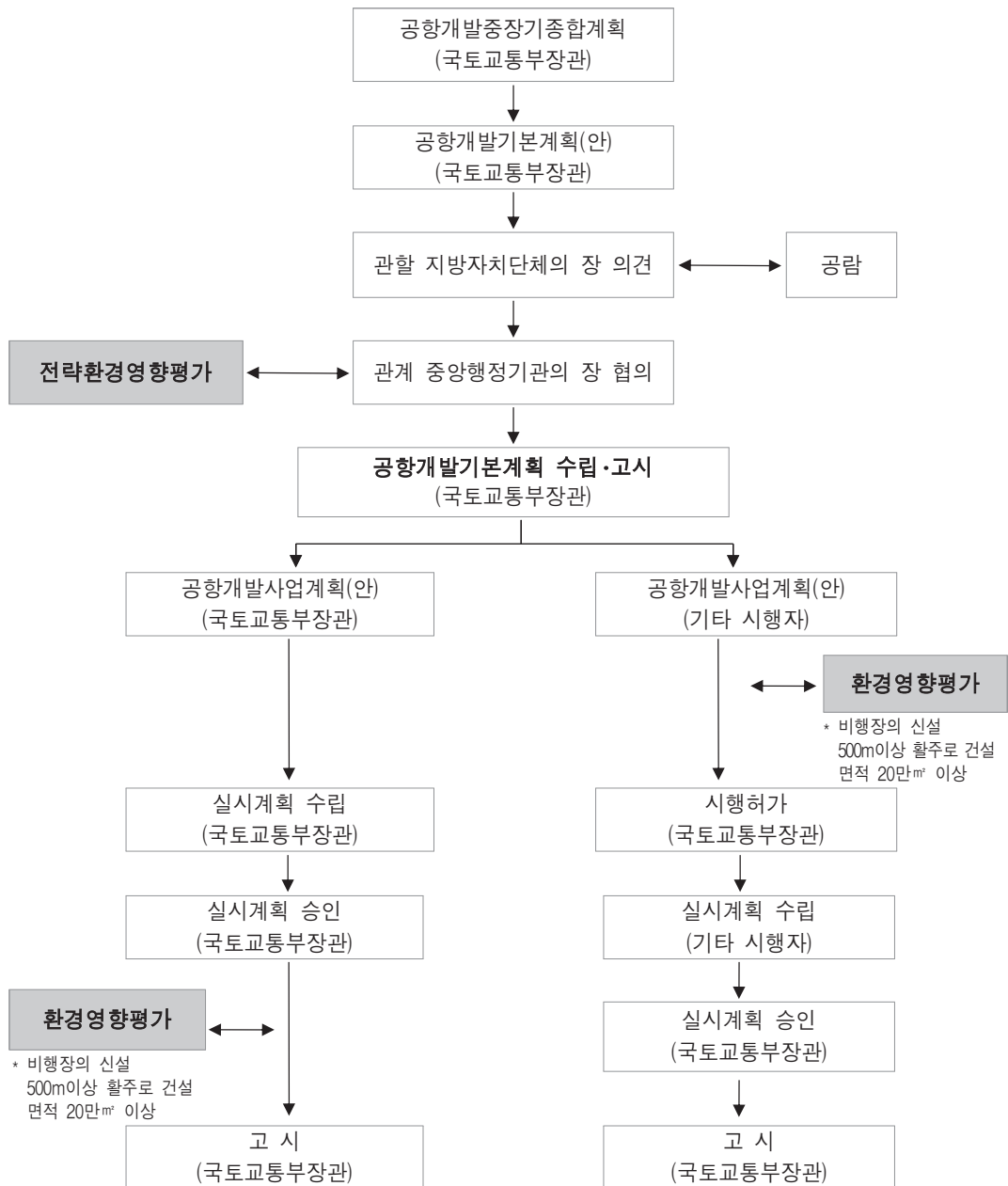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공항개발예정지역, 공항의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자원조달방안
- 환경관리계획, 공항 이용에 필요한 관련 교통계획
- 공항안의 상하수도시설, 가스·전력·통신시설 등의 개략적 시설계획 등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협의 요청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항공정책기본계획, 도로망, 철도망 계획 등 상위·연관계획 및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
- 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경관계획 등 지역의 환경기준 및 시책 등과의 연관성 또는 부합 여부 검토
- 환경보전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한 복수 대안지구의 비교 분석의 적정성 검토
- 공항 주변지역의 여건 및 특성, 장래개발계획과의 일치성 등 토지이용 계획이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여부
- 주변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지구 포함 여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기념물(경승지 포함), 천연기념물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지역
  - 해안의 조간대 지역(암반, 사빈, 사구, 갯벌 등)
- 공항시설 운영 및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영향과 이를 고려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 여부, 소음초과지역에 대한 적정대책(이주, 방음벽, 방음림 설치, 공항운영계획 등) 수립 여부 검토
- 항공기 소음평가(등소음도 곡선, WECPNL) 및 영향권 내 지역별 대책
- 발생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운영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의 적정성 검토 등

## 바. 참고사항

구분	상위계획	관련계획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교통부)</li> <li>○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li> <li>○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li> </ul>	교통시설 관련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li> <li>○ 지자체별 도로정비기본계획</li> <li>○ 지자체별 교통정비기본계획</li> </ul>
		지역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 종합개발계획</li> <li>○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li> <li>○ 기타 해당지역과 관련된 계획 (공항주변 위락·복합단지개발계획 등)</li> </ul>



## 제9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 :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관리하는 하천
- 소하천정비 : 소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 등에 관한 공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시·군·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승인

#### 나. 적용범위 및 규모

- 하천법에 적용받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제외한 하천으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는 구역으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전체거리가 500m 이상인 하천(소하천 지정기준)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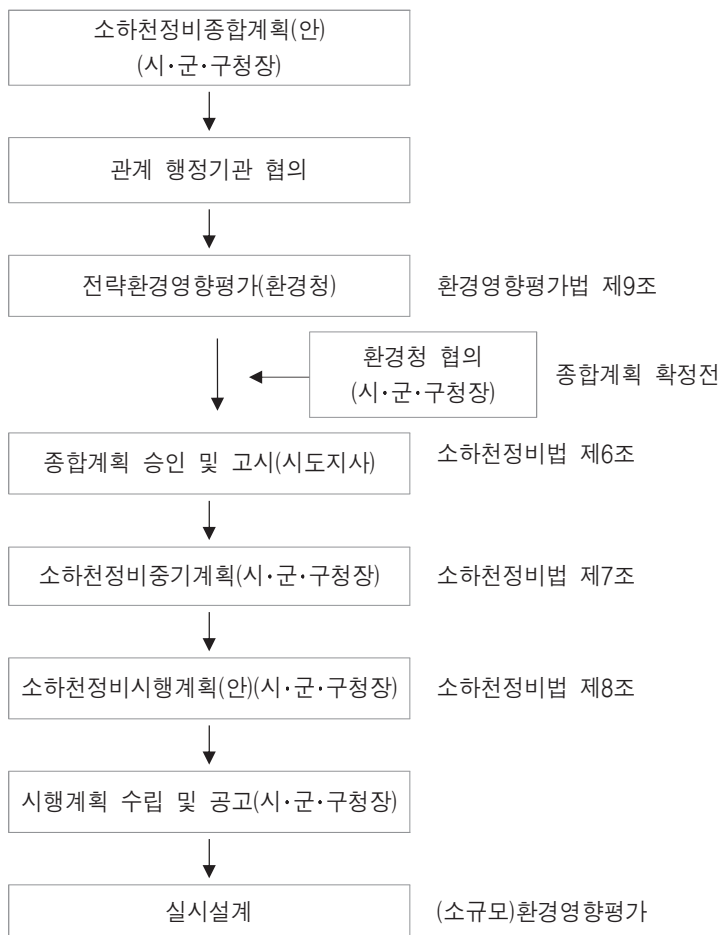
-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 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정비·보전·복원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 성격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p.269 참조)**

- 계획의 적정성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과 관련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공간계획(국토종합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검토
- 소하천유역의 특성과 환경보전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 계획하천 상하류의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검토
-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대안 설정 및 검토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목적, 기대효과, 소하천별 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등으로 고려하여 하천계획의 시행 및 미시행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 소하천별 치수사업 수요와 하천 및 사업지구 현황, 하천관리 목표 등을 고려하여 무계획을 포함한 소하천 설계빈도(30년, 50년 등) 선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각종 보호구역 등의 포함여부 및 영향
    - 각종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훼손 여부
    -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존재여부를 파악, 영향 검토 및 보전방안 수립 여부
  - 하천 공간관리(지구지정)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대안 설정 및 검토
    - 하천구역별 용도지구 지정 필요성 및 수요, 하천 현황, 하천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대안 설정
  - 사업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 대안 설정 및 검토
    - 치수안정도와 하천공간지정 현황,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설정

## 바. 참고사항

-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지침(해당년)
- 소하천 설계기준(2012)

## 2. 하천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하천법
-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 국가하천 : 국토보전 및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하천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
- 하천구역 :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있는 곳은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없는 구간은 계획하폭(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에 해당하는 토지
  -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 보전, 효용 증진,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
  -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댐·하구둑(방조제 포함)·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운항 관련 시설
- 하천기본계획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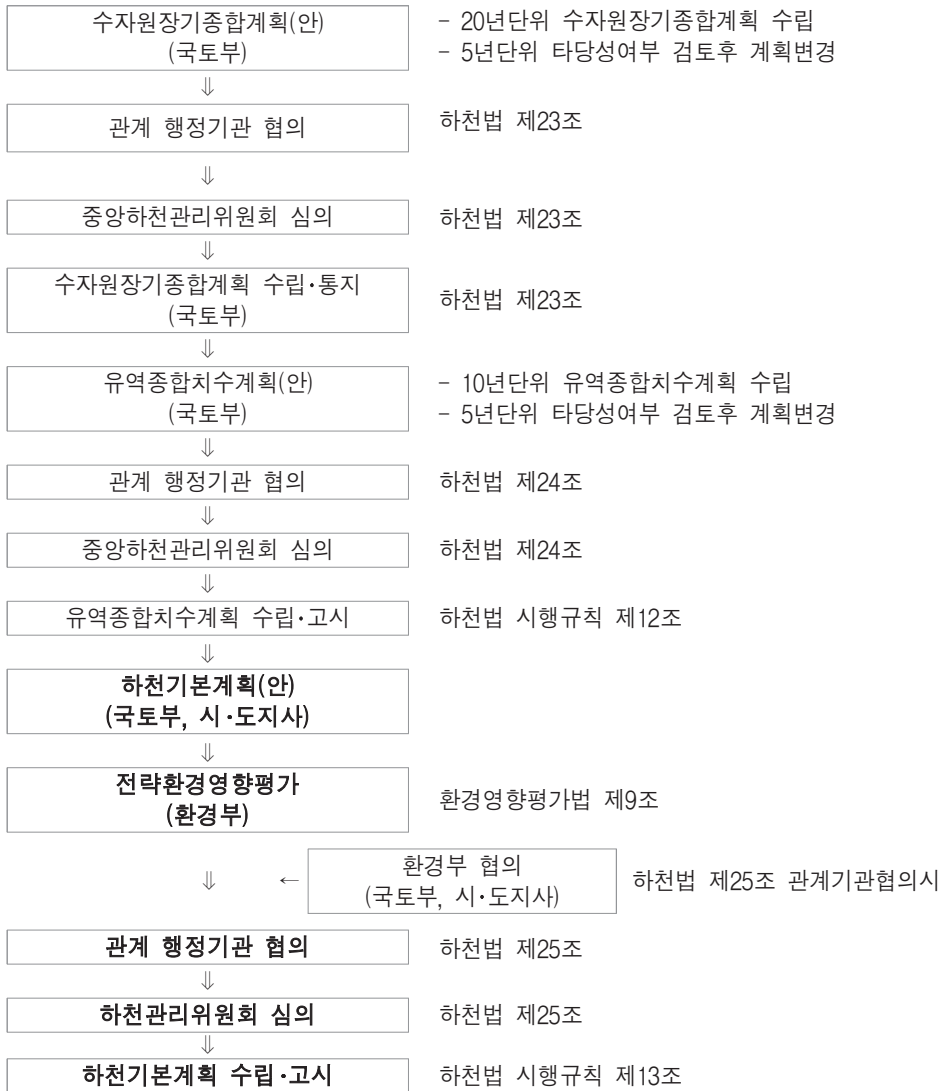
## 나. 적용범위 및 규모

- 하천법에 적용받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 하천의 개황(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하천의 수질 및 생태,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하천수의 이용현황,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의 배분,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그 경계,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의 시행 및 미시행에 대한 대안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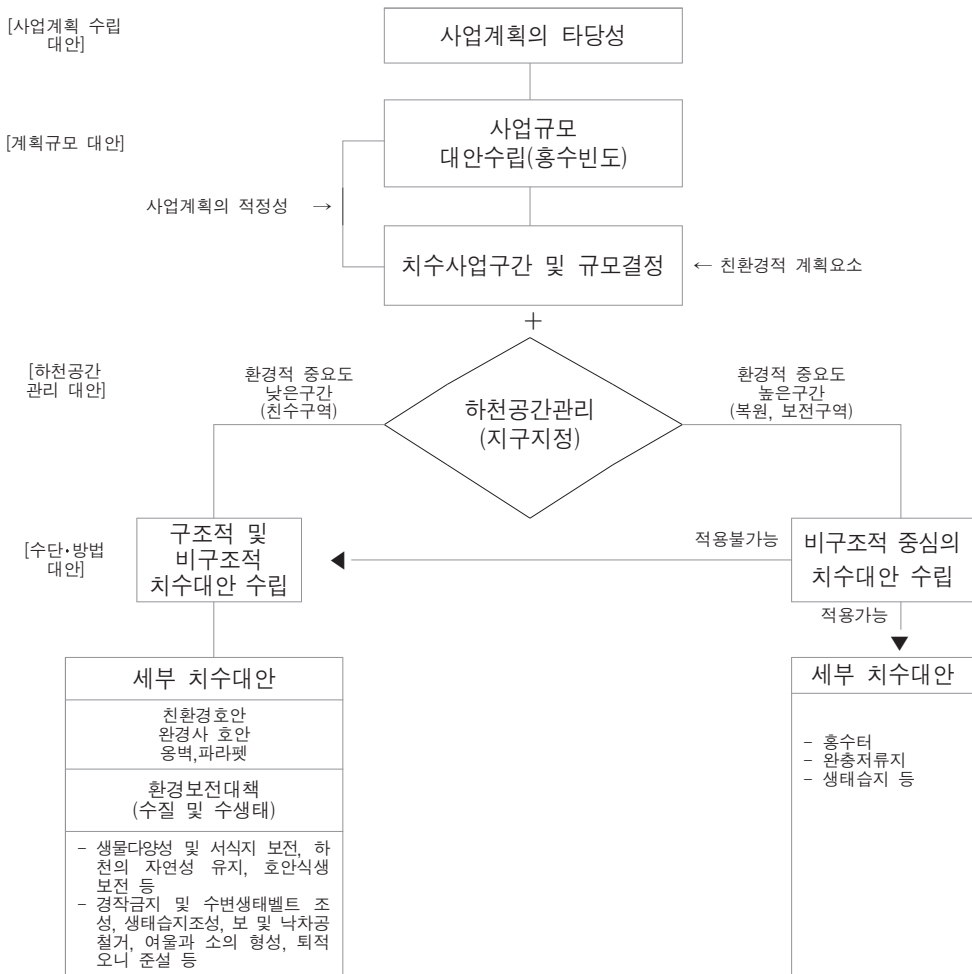


- 하천별 치수사업 수요와 하천 및 사업지구 현황, 하천관리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설계빈도를 30년, 50년, 80년 등의 다양한 대안을 설정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 하천구간별 용도지구 지정 필요성 및 수요, 하천 현황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의 대안을 설정
- 치수안정도와 하천공간지정 현황,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설정

< 하천계획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수단/방법) >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하천 정비와 관련한 관련계획과의 부합 여부 검토

##### < 상위계획 >

- 공간계획(국토종합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
-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할당된 지역별 홍수량 배분계획과의 중·장기적 하천관리의 일관성 확보 여부를 검토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환경목표의 반영 등 국가 및 지역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 < 관련계획 >

- 관련 계획(지역개발계획 등) 상 주변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10~20년 후의 하천 정비의 목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지를 검토
- 계획하천 상·하류에서 현재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

####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하천계획 수립/미수립 대안 >

-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목적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부정적인 요소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를 검토
- 하천 및 유역 현황 및 하천의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사회기반 시설의 설치현황 등 실태와 기왕의 홍수흔적, 가뭄피해 지역(사진 등), 홍수 및 가뭄 피해 실태, 가뭄 및 홍수피해 원인 분석 등이 적정하게 수행·평가되었는지를 검토
- 대안 선정 시 사회적 수용성과 경제성보다는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

##### < 계획규모 대안(하천설계빈도) >

- 사업규모에 대한 대안으로 하천의 중요도, 치수안전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조하여 다양한 사업규모(하천설계빈도) 대안(무계획, 30년 빈도, 50년 빈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등)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치수안전도, 이수안전도, 중권역별 목표수질 등 하천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수안전도(하천설계빈도) 등을 조사하여 계획하천에 대하여 적절한 설계빈도가 결정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의 규모(하천연장 및 유역면적), 중요도(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특성(도시하천, 전원하천, 자연하천 등), 토지이용현황(임야, 농경지,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하천별 계획규모가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하천유역의 특성과 환경보전 시책과의 부합 여부 등 검토
- 자연환경의 보전
  -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포함 여부 및 영향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훼손 여부
  -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존재여부를 파악, 영향검토 및 보전방안
- 하천 공간관리의 적정성
  - 하천구간별 용도지구 지정 필요성 및 수요, 하천내 시설물현황,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보전, 복원, 친수)지정의 적정 여부 및 대안 설정

#### <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여야 할 사항 >

- 하천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지구의 세분화·완화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 친수지구 지정계획이 있는 경우 명확한 수요 및 사전계획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친수지구로 지정·변경할 경우에도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일반 및 완충보전지구를 포함한 보전지구는 하천시설물 설치 지양하고, 하천지구내에 하천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원형보전지로 제시
  - \* 4대강의 경우 '16년 하천기본계획(변경) 전의 지구지정 현황을 확인·대조



## 사. 참고사항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15.12)
- 생태공간 조사평가 지역(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주관)의 경우 동 조사결과 참조
- **대안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 및 사례는 아래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계획의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연구(II)’(도로, 하천, 2016.12, 환경부) : 환경부 홈페이지/발행물/ 환경간행물



## 제10장 개간·공유수면 매립

###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법),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도시·군관리 계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 공유수면 :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바닷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

#### 나. 대상 지역 및 규모

- 전국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 < 매립기본계획 수립현황 >

-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92~'10년, '91.12)
  - 261개소 960.7km<sup>2</sup> 반영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02~'11년, '01.7)
  - 355개소(390.3km<sup>2</sup>) 신청 → 186개소(38.2km<sup>2</sup>) 반영(9.8%)
  - ※ 이후, '06년까지 개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으로 42개소가 추가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07.6)
  - 188개소 신청 → 46개소(7.3km<sup>2</sup>) 반영
-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11.7)
  - 53개소(2.3km<sup>2</sup>) 반영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준용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조선시설의 설치, 조력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 제8조제1항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적용배제
  -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매립기본계획
  -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 매립목적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 ○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
- 사업계획서
-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후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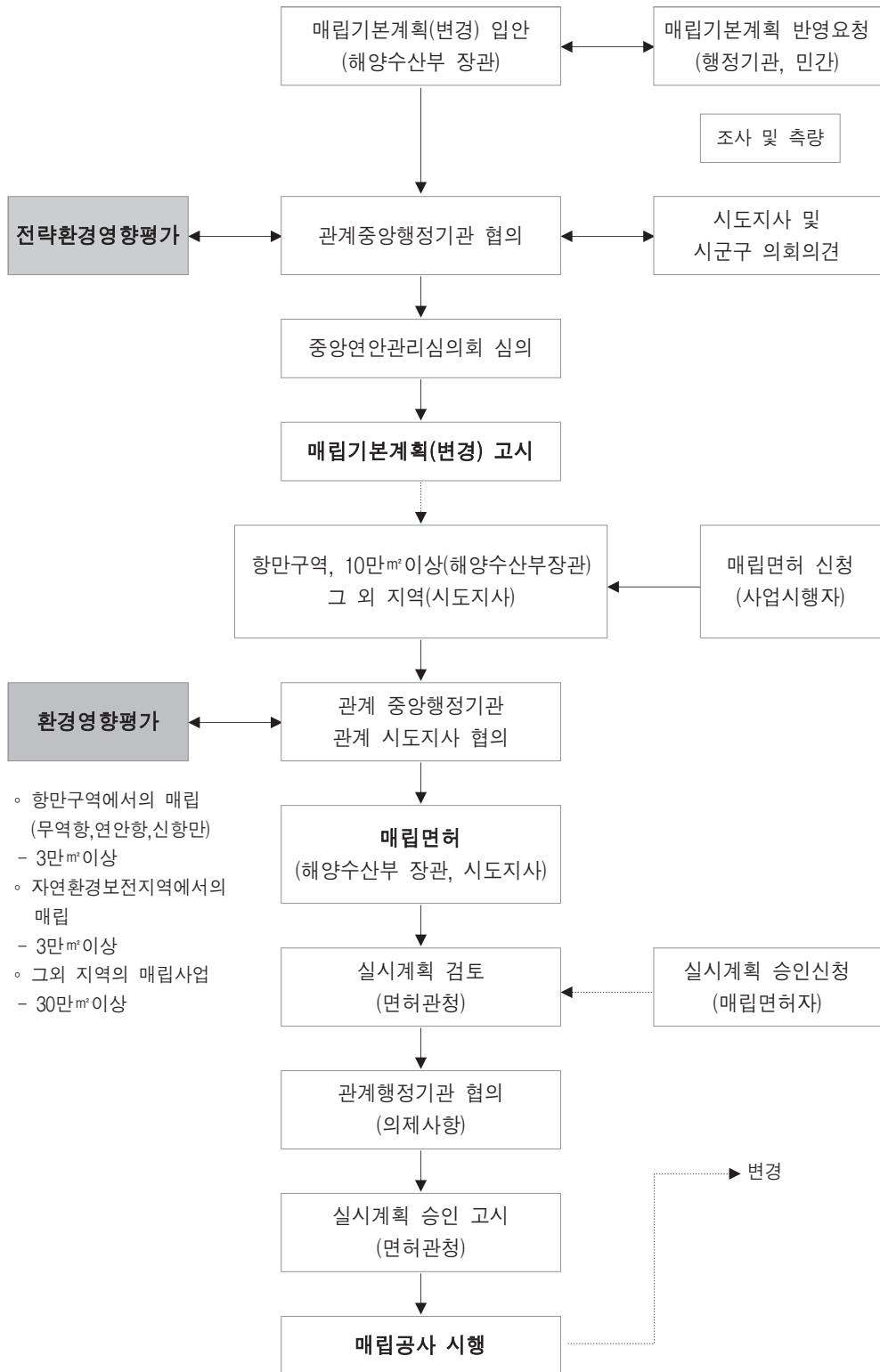
### ○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 변경사유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 매립목적의 변경
- ※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반영 규정을 준용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 대상 및 협의요청 시기

대상계획	수립주기	협의요청시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10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22조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5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수시	





## 마.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반영여부 등) 검토

※ 실제 상위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지, 상위계획 등의 기본방향에 부합한지, 연계성 여부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

##### < 관련계획 >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법),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등에 적합한지 여부

####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공통사항 준용

### ○ 입지의 타당성

#### -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참조

#### - 중점검토 대상지역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II등급이상 권역내인 지역
-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해양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방류지점 연안의 수질오염을 증가시켜 수질환경기준 달성에 지장이 있는 지역
- 기타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매립목적 및 필요성, 매립규모 등 계획의 범위, 주변 개발지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등 검토
- 연안지역의 인공화로 인한 육상·해양 생태자원의 훼손 최소화 및 생태적 연결성 유지 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 이전 매립계획 부동의 또는 미반영 지역여부 및 자연환경, 개발상황 등 주변여건 변화상태를 파악

## 바. 참고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대부분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의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수시)하는 경우에 해당
  - 이 경우 신규로 매립기본계획 변경절차로 진행되나 매립예정지를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신규협의로 진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지역으로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재(변경)협의로 진행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 수립이 의제되는 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의제를 받기 위한 협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의제되는 행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는 협의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되도록 협의 진행
  - 의제되는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상위 계획 협의시 공유수면매립의 적합성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
    - ※ 상위계획 협의시 매립에 대한 계획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의견수렴, 평가서 등에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
    - ※ 매립의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실시계획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매립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의견을 제시
  - 의제되는 행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비대상인 경우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반영)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 ※ 행정계획 승인신청시 계획승인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협의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필요)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에 제출



##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지 등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관광진흥법 제52조(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 관광사업 :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
-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
-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지정된 곳(50만 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 구비 의무)
- 지원시설 :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유원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중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 지역
- 관광(단)지는 공히 공공편의시설을 갖추되,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이상(시·도지사가 지정목적 등을 감안 일부 완화가능)이며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함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직접 관광자원을 지정·개발하고, 숙박 및 상가·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이용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제도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추가)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추가)
-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 여건 및 동향, 정책적·계획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개발사업 컨셉에 대한 원안 유지, 수정, 지양 등의 대안을 설정(추가)
-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현황과 개발계획, 관광수요 조사, 유사사례 분석 등의 관광수요 추정을 통해 개발규모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추가)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추가)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추가)
- 토지이용계획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추가)
-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용도지역 및 지구 경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 경계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추가)
- 생태계 및 지형, 경관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용지와 개발용지 선정에 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추가)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계획>
      - 상위계획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국토의 보전 및 관리 방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추가)

- 상위계획 중 지역개발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추가)
- 상위계획 중 관광 관련 계획에 해당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추가)

#### <관련계획>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 주변의 개발계획(도로, 철도, 택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지 등)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추가)
- 기타 계획의 적정성
- 수익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계획의 수립 여부(수정)
  - 개발을 원활히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의 확실성 여부(수정)
  - 주변의 관광지와 관광루트가 체계화 되어 있는지의 여부
  -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계획 여부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개발 컨셉의 대안>

- 관광자원의 유형 및 지역의 환경적·관광적 이미지와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 및 성격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
- 개발목표와 개발컨셉의 부합성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발방향, 개발전략 등이 관광 매력성 및 고유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국내외 관광 환경 현황 및 전망분석을 통해 지역의 관광 욕구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개발전략, 도입시설 등이 계획되었는지를 검토
- 지역 내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시장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관광자원의 잠재력, 제약요인, 문제점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
- 장래 주변의 긍정적(공원 및 도시개발, 도로 및 철도 건설)/부정적(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개발을 고려한 개발전략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관광개발이 지역균형발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관광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
- 주변의 유사사업에 따른 여부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개발규모의 대안>

- 지역 관광수요 추정을 위한 적절한 자료(직접조사자료 및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등)와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와 수요 예측 결과가 적정한지를 검토(추가)
- 관광수요예측의 과정이 타당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유사사례 분석결과 및 직접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예측결과의 보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추가)
- 다양한 수요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된 다수의 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최종 예측결과를 채택하는 과정이 타당한지를 검토(추가)

### <입지선정 대안>

- 물리적 조건, 토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장애 여건 그리고 본 관광개발과 연관되는 개발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
  - 환경적 민감지역 회피사항으로 환경관련 용도지역, 주요 산줄기 및 생태축, 식생 및 생태우수지역(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법정 보호종 서식지, 주요 자연 및 경관자원 등의 훼손 여부 등을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 환경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구계 설정 대안>

- 재해요인 및 자연적 환경, 인문적 요인, 도시기반시설,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의한 경계,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와 토지이용현황,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 <토지이용계획 대안>

- 관광지 등에 입지하는 시설물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자연지형의 최대한 활용, 기반시설(도로, 용수, 항만, 철도)과의 합리적 연계,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 상충기능(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등)간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생태적·지형적·경관적 환경현황을 고려한 보전 및 개발용지의 설정, 원형 보전녹지와 공원, 완충녹지, 수환경 등을 고려한 공원·녹지체계,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재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지형·경관, 급경사지, 습지, 지형축 및 식생보전을 고려한 원형보전지역 설정이 적정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지역의 분포 여부를 검토
- 관광지 등의 개발시 식생 및 경관 훼손의 과다 여부, 대절토와 고성토 등 대규모 지형 훼손 발생 여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여 대안을 검토(수정)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범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범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수정)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히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지하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수 이용시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용수 확보 및 이용 축소방안, 모니터링 등)을 검토(수정)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추가)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추가)

#### <생활환경의 안정성>

- 수질 등에 대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추가)

#### <사회·경제 환경 및 기타>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추가)
-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추가)
-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대체농지확보 등)을 검토(추가)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추가)

## 2. 온천공 보호지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온천법 제5조(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 온천 :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일본, 남아공이 섭씨 25도 이상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섭씨 20도, 미국은 21.1도(70°F) 이상)
  - \* 성분 : 질산성질소(NO<sub>3</sub>-N) 10mg/ L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C<sub>2</sub>Cl<sub>4</sub>) 0.01mg/ L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C<sub>2</sub>HCl<sub>3</sub>) 0.03mg/ L이하
- 적정 양수량 : 한 개의 우물에서 장시간 지속적인 양수에도 급격한 수위 강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량
  - 양수시험(pumping test) : 양수로 인한 수두의 시간적 변화를 측정·분석함으로써 대수층의 투수량계수와 저류계수를 결정
  - 대수층(aquifer) : 공극체 중에서 필요한 양의 지하수를 우물이나 샘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
  - 투수량계수(transmissivity) : 투수계수에 대수층의 포화된 두께를 곱한 것  
T = Kb, T=투수량계수, K=투수계수, b=대수층 전체두께
  - 저류계수(storage coefficient) : 공극체가 물을 저류 또는 방출할 수 있는 능력  
S= (물의 부피)/(단위기준면)(단위수두변화) = (m<sup>3</sup>)/(m<sup>2</sup>)(m)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3만m<sup>2</sup> 미만)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적정 양수량, 개발가능 부지의 확보 등)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조건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시장·군수는 온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 온천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온천수 폐열 이용계획 반영 여부
  - 과도한 온천수 양수로 수위저하 및 온폐수로 인한 주변 영향여부
  - 온천 폐수 재활용 계획 반영 여부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참고사항

- 「온천발전종합계획수립연구」(행정안전부/한국지역진흥재단, 2011)



### 3. 온천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온천법 제10조(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 보양온천 : 1일 이용가능 온천수량이 210m<sup>3</sup>로서 용출된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있는 온천수가 있는 곳에서 수영욕장 등 5종 이상의 운동욕장, 응급조치실, 숙박시설 등이 구비된 온천
- 1일 적정 양수량 : 양수시험에 따라 수위강화 범위는 48시간 동안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1일 적정 양수량은 양수시험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하강량의 95%의 수위 회복율을 고려하여 산정 (『온천전문검사 지침』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참조)
- 온천수의 온도 : 온천수는 42℃ 로 공급되고 있으며, 고도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질환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온용(42℃ 이상)금지하며, 세부적 용도의 표준급탕 온도는 목욕용은 42~45℃, 샤워용은 43℃, 세면 및 수세용이 40~42℃임
- 온배수 폐열이용 : 온천 폐수방류시 약 10~30℃의 열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온천 폐수가 사용후에도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하여 난방 혹은 에너지 생산 등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나, 폐온천수를 난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방수의 온도인 60℃까지 가열이 필요
- 온천수 폐수 재활용 : 일반적으로 온천폐수의 오염농도는 낮으나 세제성분, 온열 등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자연 수계에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온천 폐수는 수질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처리가 용이하므로 중수 등으로 적극적인 재활용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용도를 개발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 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 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에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 등 조성계획·개발계획, 산업집적 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온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3)
  - 온천개발면적( $m^2$ ) =  $66.2 \times$ 일일적정양수량(톤)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주변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
- 온천 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폐기물·하수처리 등 주변 환경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시장·군수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 온천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온천수 폐열 이용계획 반영 여부
  - 과도한 온천수 양수로 수위저하 및 온폐수로 인한 주변 영향여부
  - 온천 폐수 재활용 계획 반영 여부

###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관광 및 생태적 수용능력의 타당성
  - 경관생태학적 분석결과의 타당성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계획 여부



## 바. 참고사항

### ○ 보양온천 시설 지정기준(필수사항)

(보양온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보양온천 지정기준)

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온천수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성분	총고형물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형물함량 1000mg/ℓ 이상
		유황	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H <sub>2</sub> S, S <sub>2</sub> O <sub>3</sub> , HS <sup>-</sup> ), 함량 1mg 이상
		유리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mg/ℓ 이상
수량	이용허가수량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보양온천시설	시설 (총연면적 1,000㎡ 이상)	건강시설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2. 운동욕장(5기능): 보행욕, 보디 샤워, 넥샤워, 플로팅, 릴렉스 라이닝 3. 운동실, 4. 릴렉스 존, 5. 수영장
		기본시설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 4. 사우나실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부대시설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보양온천환경	주변환경	필수사항	1. 야외공기 청정도 2. 실내공기 청정도 3. 실내 소음도
		권장사항	1. 경관이 수려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상태 양호

## 4. 도립·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자연공원법 제12조·제13조(환경부/공원생태과)
- 도립공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 군립공원 :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자연공원 지정기준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보호대상 야생생물 등이 서식할 것(자연생태계)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자연경관)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문화경관)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지형보존)
  -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위치 및 이용편의)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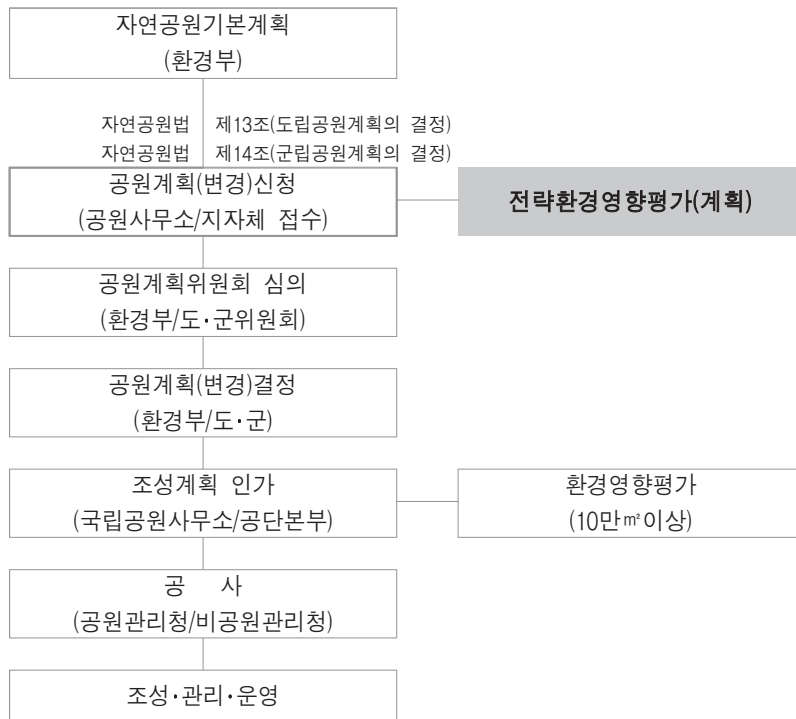
-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은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주민과 관할군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거쳐 결정



- 국립공원은 군수가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공동, 또는 대표군수가 입안)
-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유무(구역의 타당성 포함)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 자연공원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생물권 보전지역 전략에 따른 핵심·완충·전이지역의 설정의 적정성
  - 고유의 지형, 수계, 식생 등의 보존을 위한 대안의 적정성
  - 공원마을지구 주민의 경제권 보호를 위한 계획반영 여부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참고사항

- 용도지구별 주요 허용행위(자연공원법 제18조)
  - 공원자연보존지구
    - 학술연구 등 보호, 보존, 관리를 위한 행위
    - 해당지역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 군사시설 등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사찰시설 등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 공원관리청과 주민 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임산물 채취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
    - 허용 규모의 공원시설의 설치
    - 허용범위 내 농지조성 등
    - 임도설치, 사방사업 등
    - 군사훈련, 제방 등 공공시설 등



- 공원마을지구
  - 허용범위내 주거용 건축물 등
  - 마을 기능상 필요한 일정시설
  - 마을 기능상 필요한 일정행위
  - 환경오염이 없는 가내공업
- 공원문화유산지구
  - 불교의식 시설, 수행행위 등

○ 공원자연보존 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구 분		규 모	구 분		규 모
공공 시설	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000 m <sup>2</sup> 이하	교통 운송 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12m이하 (일방통행식의 지하차도, 터널은 편도2차, 폭12m이하, 구난·대피공간 추가가능)
	매표소	부지면적 100 m <sup>2</sup>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 m <sup>2</sup> 이하		탐방로	폭3m이하(차량통과 폭 5m 이하)
안전시설		별도 제한없음		교량	폭 12m 이하
조경시설		부지면적 4,000 m <sup>2</sup> 이하		궤도 (삭도제외)	2 km이하, 50명용 이하
휴양 및 편익 시설	야영장	부지면적 6,000 m <sup>2</sup> 이하		삭도	5 km이하, 50명용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000 m <sup>2</sup>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00 m <sup>2</sup>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00 m <sup>2</sup>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 m <sup>2</sup> 이하	
	야생동물 관찰대	부지면적 200 m <sup>2</sup> 이하	공원사업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대피소	부지면적 2,000 m <sup>2</sup>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 m <sup>2</sup> 이하			

○ 생물권보전지역 설정 전략

- 핵심지역(Core area): 엄격히 보호되는 지역
- 생태계 조사연구 및 생태적 영향이 적은 이용(예: 생태교육)
  - 완충지대(Buffer area): 핵심지역을 둘러싸는 지역
-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등 건전한 생태적 영향이 적은 활동
  - 전이지역(Transition area): 농업, 주거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필요

1971년 유네스코(UNESCO, 유엔 산하 교육, 과학, 문화기구) 산하로 설립된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MAB)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고안

생물권보전지역

○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적 분석 전략

- 시초 : 1939년 Troll이 동부아프리카에서 토지 이용과 개발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발
- 총체적이고 시공간적인 실체를 강조
  - 평가방법
    - 1) 동·식물, 물, 바람, 에너지 이동과 흐름·분포 파악(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종다양성 관리 용이)
    -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간적 패턴의 역동성 파악(분석도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하여 가능)

경관생태분석도 작성방법 :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 후,

- ① 바탕(Matrix),
- ② 조각(Patch),
- ③ 통로(Corridor)의 3가지의 토지환경 모자이크로 구분

▼경관생태분석도

자연경관 ▶

➔



## 제12장 산지의 개발

### 1.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 진흥계획 (10년 마다 수립) (산림청/산림자원과)
- 용어정의
  -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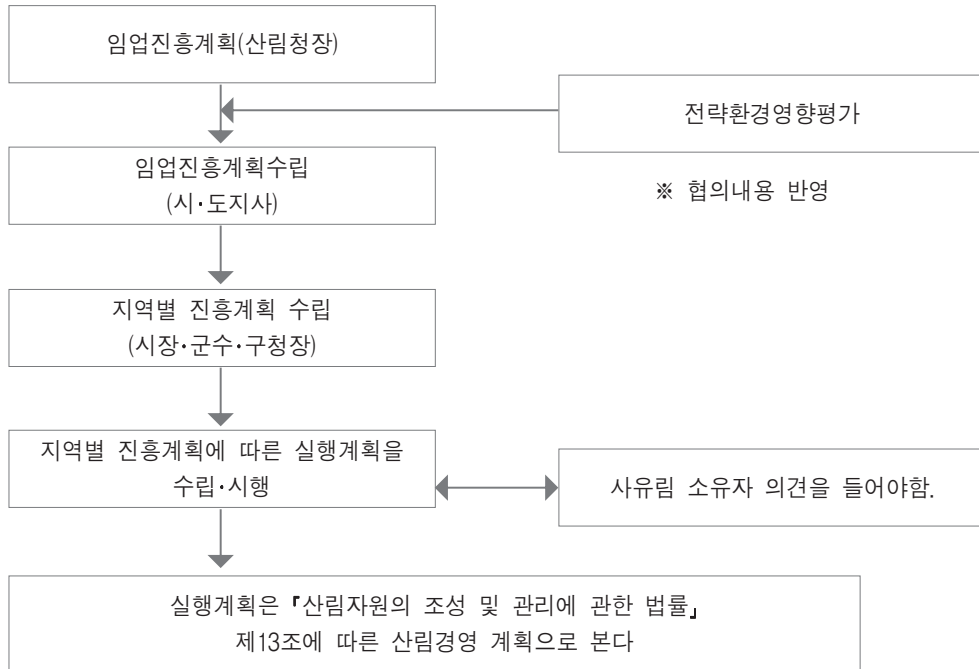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임업진흥권역 내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조림과 육림계획
- 주벌계획과 간벌계획
- 임도시설 설치계획
- 병해충 방제계획
- 임업 경영구조 개선계획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
- 임산물 가공업 지원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 상위계획 >

- 입업진흥권역의 지정(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① 대안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분석 되었는지 여부

- 설정된 대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등에 부합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②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의 적정성

- 대상계획의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시기와 순서, 입지 등 여러가지 다른 조건으로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병해충 방제계획의 적정성
  - 화학적 방제로 인한 환경영향
  - 조림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종 선택
  - 임업진흥권역 인근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임도시설 설치에 따른 타 시설과의 연결성 등)
- 입지의 타당성
  - 입지 타당성 중점검토 지역(공통사항)의 포함 및 고려유무 검토 (조림, 육림, 주벌, 간벌, 임도 계획 등에 서는 7부능선 저축여부 제외)
  - 별목으로 인한 토양침식, 산사태 가능성 파악
  - 조림, 육림 계획 시 과거 병해충 이력 파악
  - 주벌계획 및 간벌계획 시 과거 수해 이력 파악

## 바. 참고사항

- '07년말 제3차 임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추진중
- 전차기 임업 진흥계획 기간 [1차(88~97), 2차(98~07), 3차(08~17)]

## 2. 산촌개발 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 개발사업계획(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 용어
  -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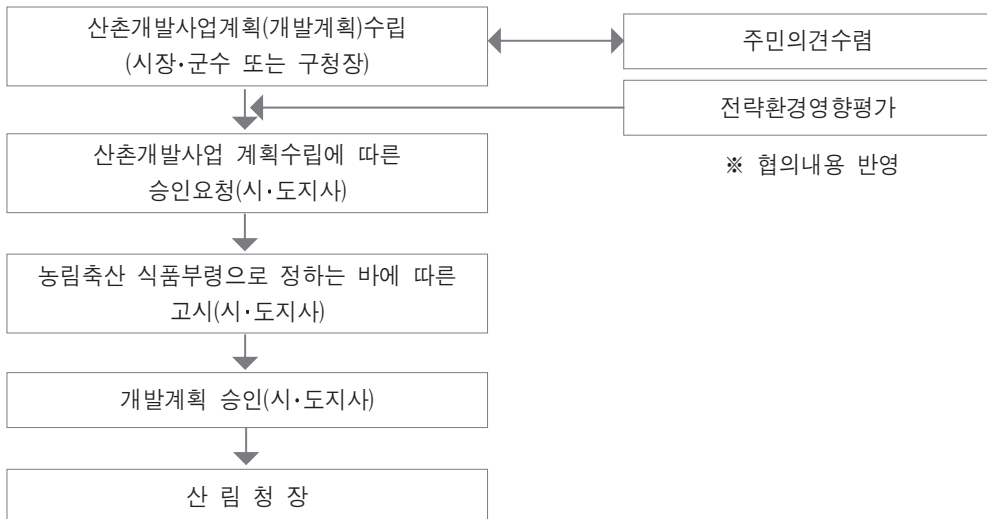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산촌진흥지역 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계획의 목적과 개발방향
- 산촌개발사업의 사업비·시행기간·효과 등 사업개요
-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
- 농림업 생산기반시설의 현황 등 개발 여건에 관한 사항
-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 상위계획 >

- 산촌진흥기본계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① 대안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분석 되었는지 여부

- 설정된 대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등에 부합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②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의 적정성

- 대상계획의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시기와 순서, 입지 등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 지역환경기준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반영

#### - 생태적환경 및 지형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여부 검토

#### -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 분석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 ○ 입지의 타당성

- 입지 타당성 중점검토 지역(공통사항)의 포함 및 고려유무 검토
-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등 시설물 설치 시 지형의 과도한 변화 지양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 발생 여부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 여부(난개발 가능성)



### 3.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용어정의
  - 묘지 등의 수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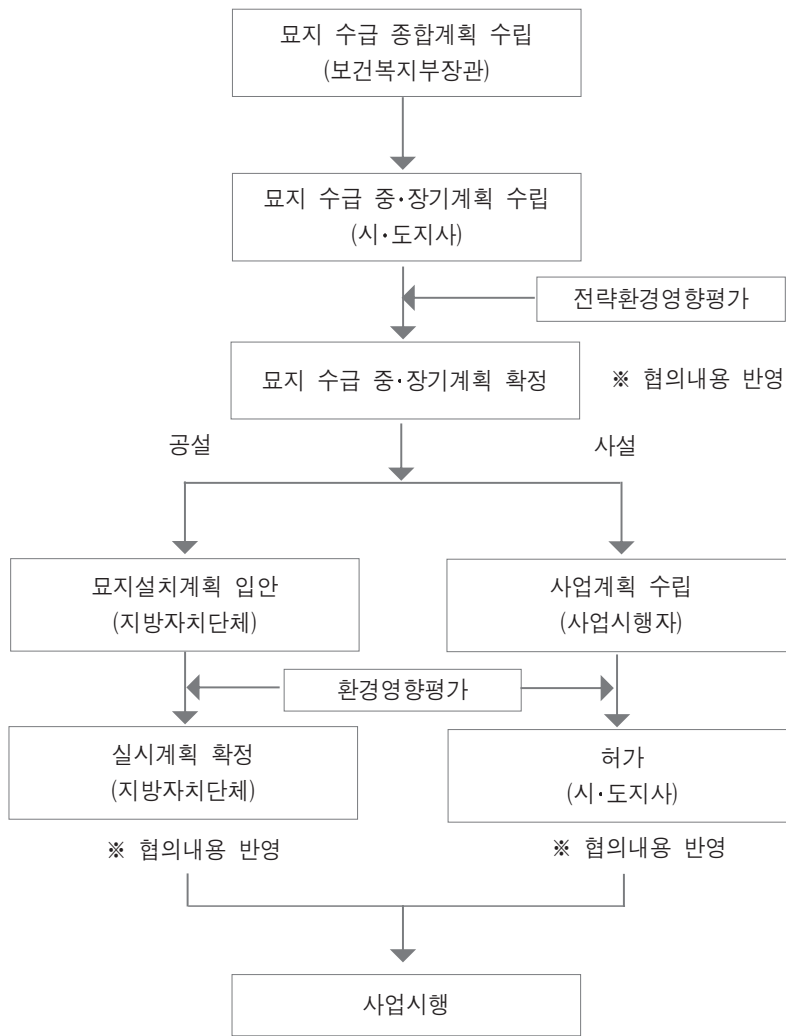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종합계획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중장기 계획 기본 방향
-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본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자아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상위계획 >

- 묘지계획·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 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제5조제2항)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① 대안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분석 되었는지 여부

- 설정된 대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등에 부합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②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의 적정성

- 대상계획의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시기와 순서, 입지 등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반영

- 지역의 각종 조례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 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

○ 입지의 타당성

- 입지 타당성 중점검토 지역(공통사항)의 포함 및 고려유무 검토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 발생 여부

- 주거, 문화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시설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계획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관광지 등 상징적 지역, 각 시·군 진입지역 등)에서는 지역과의 조화에 따른 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

**<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 바. 참고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13년 하반기 완료)
  -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을 설치·구성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추진  
(1시군 1화장시설 →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설치)
- 화장시설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근거 마련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자연장치 조성 불가
- 자연장치제도 개선방안 조성면적 및 구역 등 규제완화 지속추진
  - 종·문중 자연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12. 8. 2 시행)
  - 법인 자연장치 조성면적(10만 $m^2$  → 5만 $m^2$ ), 문화재 보호구역내 자연장치 조성면적(5천 $m^2$  → 3만 $m^2$ )확대 등('12. 11. 1시행)



##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 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 단위개발사업지구 :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
-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2013년 현재]

명 칭	위 치	완료시기	면적(km <sup>2</sup> )	중점 유치업종
합 계	총 8개 구역		335.85	-
인천('03.8)	인천	2022년	132.91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부산진해('03.10)	부산, 경남	2020년	52.90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휴양
광양만권('03.10)	전남, 경남	2020년	77.71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황해('08.4)	경기, 충남	2020년	4.39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부품소재
대구경북('08.4)	대구, 경북	2020년	22.01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새만금군산('08.4)	전북	2020년	28.6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동해안('13.2)	강릉동해	2024년	8.25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충북('13.2)	청원충주	2020년	9.08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 변화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마다 중점유치업종 조정 추진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개수(3개) 및 중점유치업종 범위(한국표준산업 분류-세세분류 15개 내외)는 유지

-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 경영환경·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등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지역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 규모는 정해진 사항이 없음

## 다. 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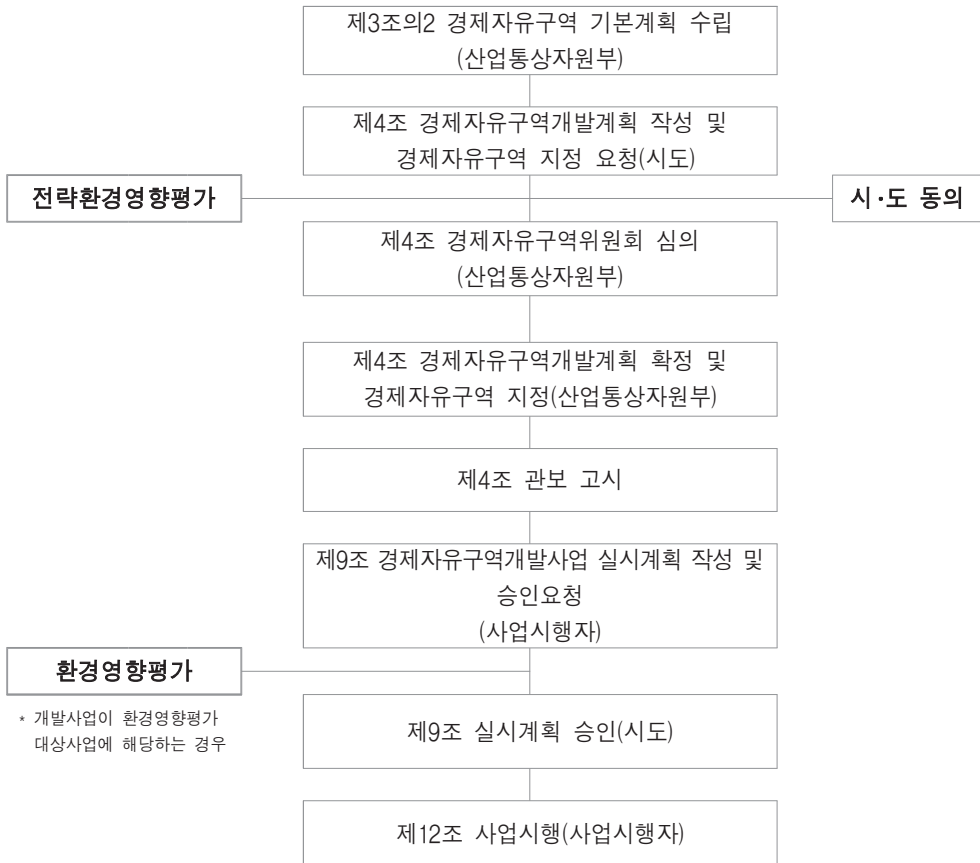
-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자원조달방법
-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주거시설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환경보전계획,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도시경관계획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정책수립 :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개발사업 추진 : 시·도(경제자유구역청)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 국토종합계획에서의 국토발전방향, 비전, 지역별 기능분담 등과의 연계성 검토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 국토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대책, 사업과의 부합성 검토
  -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 공간환경 관리전략 및 보전목적 공간설정과의 부합성 검토
-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참고사항

- 경제자유구역 관련 자료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 에서 파악 가능
- 경제자유구역내 도입 가능한 주요 시설은 주거시설, 산업단지, 골프장등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임
- 도입되는 사업 및 시설에 따라 다음의 지침 참고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5호)
  -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환경부, 2014.01.01)
  -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01.01)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등 검토 지침(환경부, 2014.01.01)
  -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01.01)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농어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읍·면의 지역, 그 외에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준농어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농어촌용수
  -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 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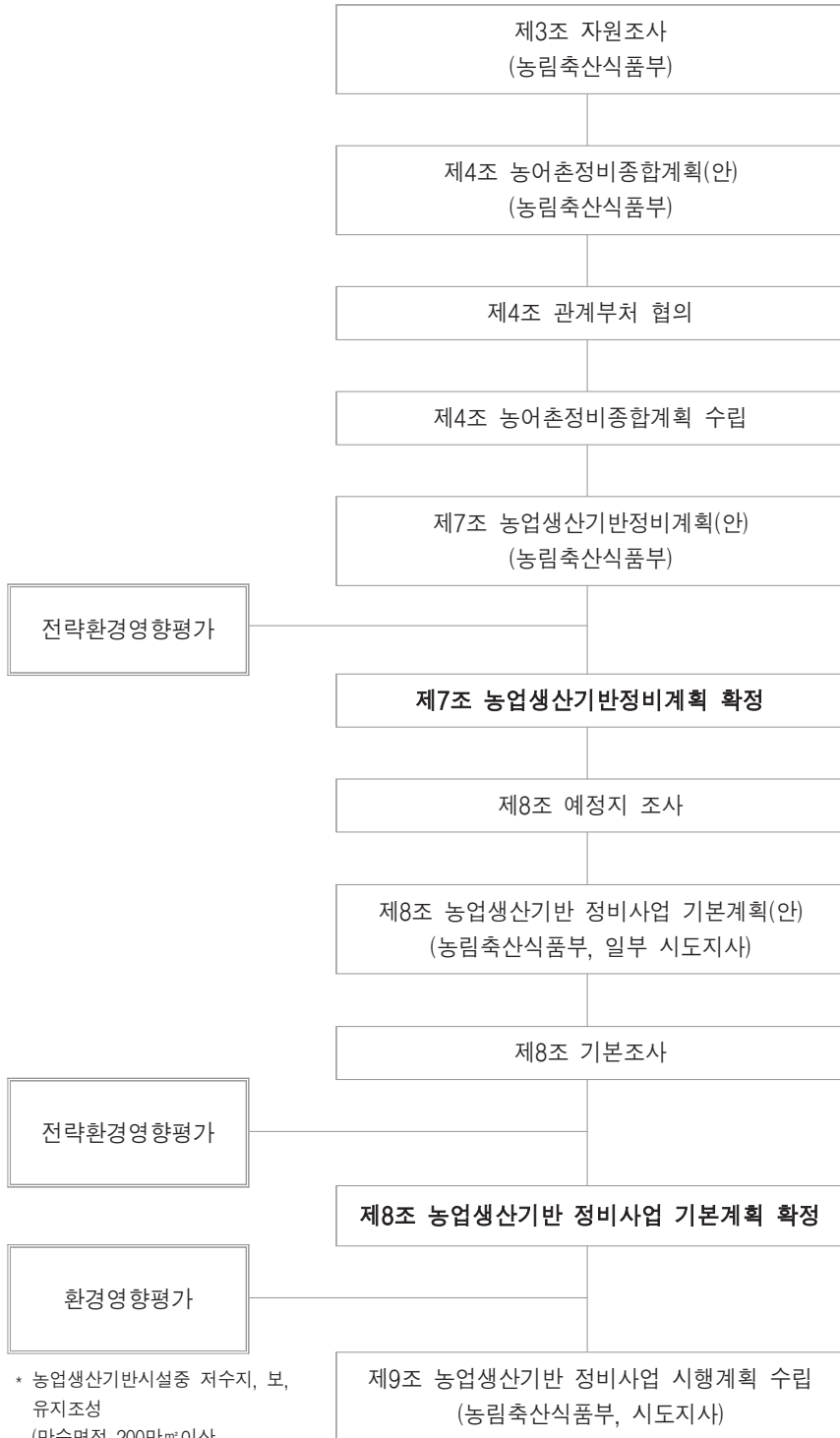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규모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음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10년빈도 이상의 가뭄 상습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배 작목,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의 확보 및 공급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농어촌정비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법)과의 부합성 검토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참고사항

### ○ 2015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2014.12)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변천사

- 2006.06.01 이전에 기본조사가 착수되었거나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구 분	2000.08.17 이후	2006.06.01 이후	2012.07.22 이후
제도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도입	전략환경평가 체제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근거	해당 없음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환경성평가 대상	보전지역내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3. 생활환경정비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
- 생활환경정비계획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5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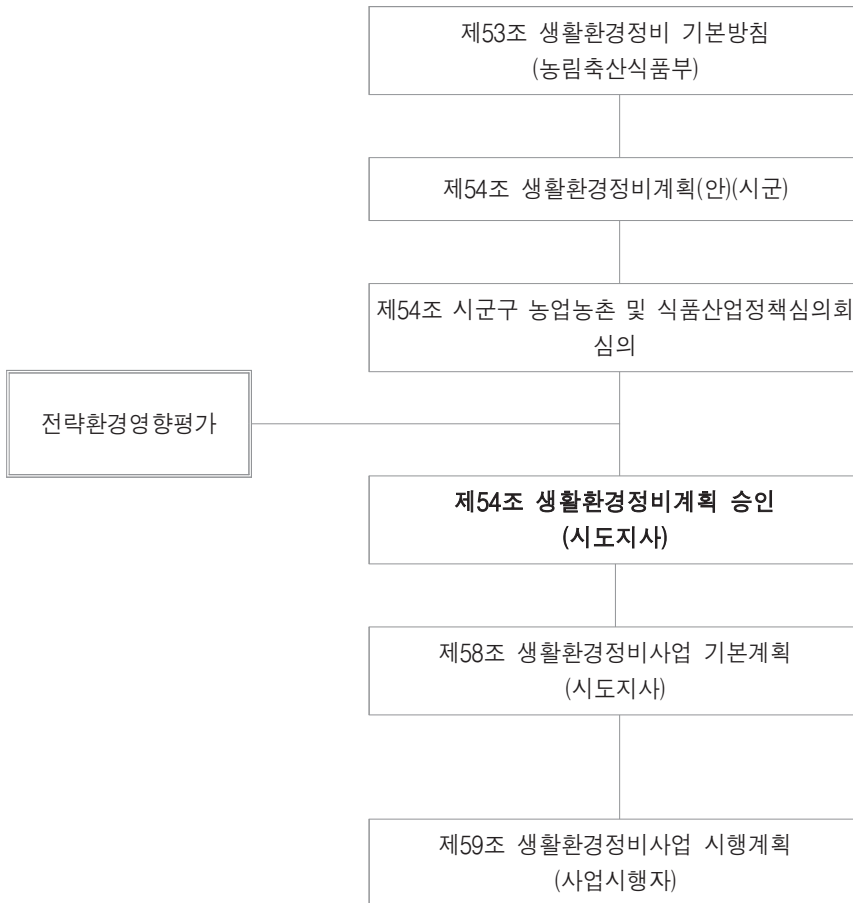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대상지역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 규모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성과 목표 및 지표
-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의 개량(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사업 포함),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생활환경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정비·확충,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참고사항

- '09.04.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됨
- 즉,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특회계 지역개발계정 210개 단위사업이 24개 사업군으로 통폐합되어 운용되고 있음
- '14년 이후 다양한 시·군단위의 농촌계획 체계를 일원화하여 시·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한계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농지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규모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음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단,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20%미만으로 함
  - 또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그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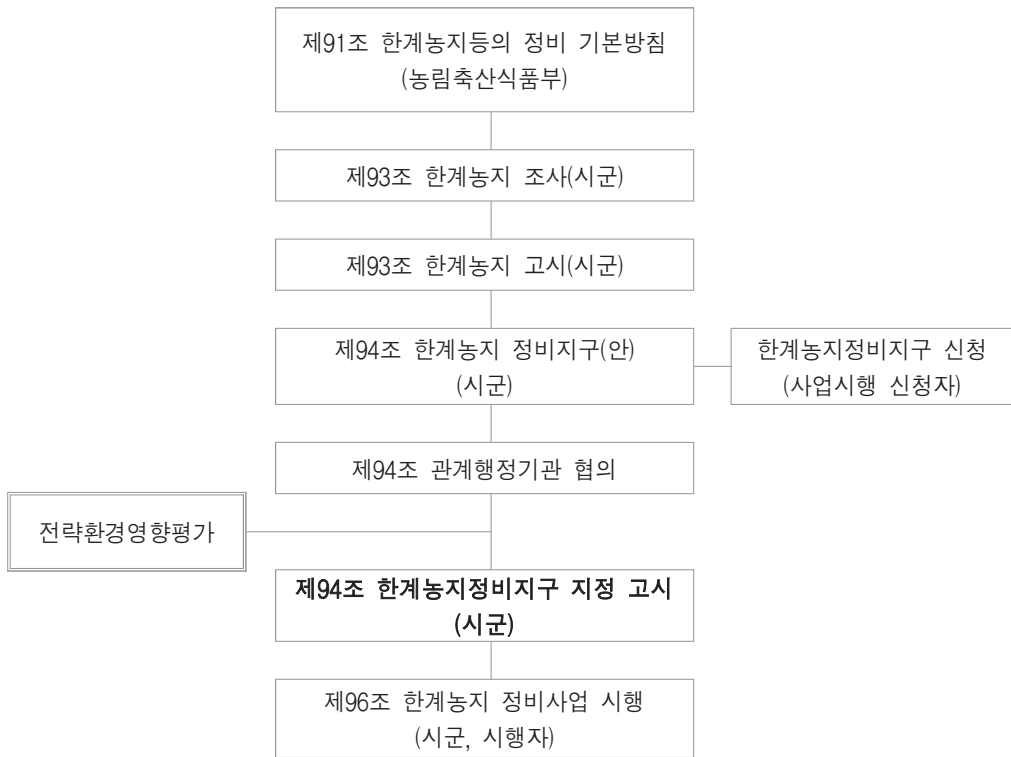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및 업무시설의 설치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마. 참고사항**

-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개발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음(국고지원 대상이 아님)
  - '94년 12월 농어촌정비법에 사업의 근거 조항을 도입
-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도입이후 '97년부터 총 4개 지구의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음



## 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마을정비구역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농어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읍·면의 지역, 그 외에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지역
- 준농어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집단화된 마을조성은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신규마을 조성시 국고지원 대상은 사업부지가 100% 확보된 지역으로 사업부지면적이 최소 2만 제곱미터 이상 이고 농림지역이 50%이내 포함되고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사업추진 유형
  - 입주자 주도형
    - 동호회, 지방이전기업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계획을 시장 군수가 마을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장·군수가 수립한 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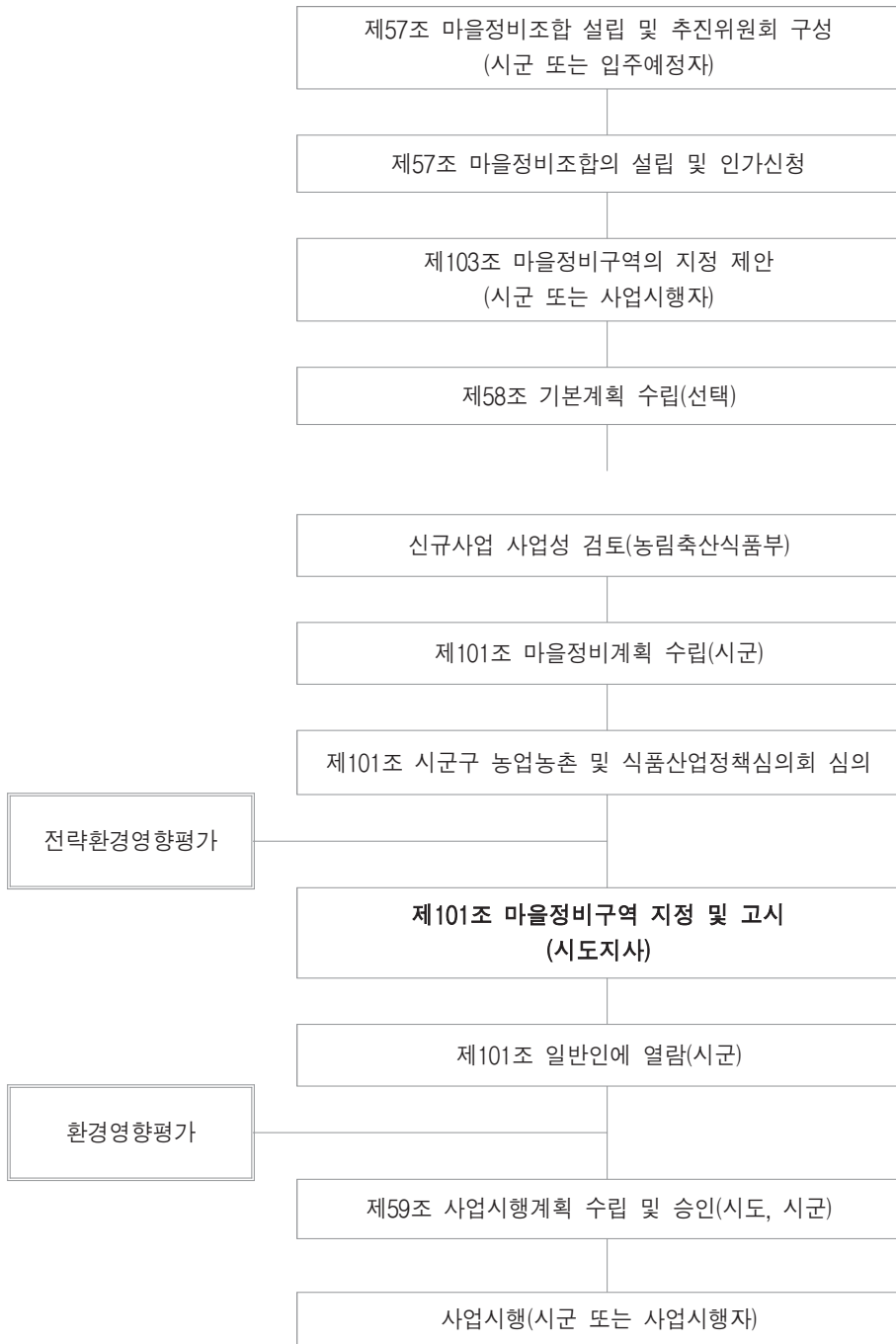
- 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이 사업부지 확보 및 마을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 임대사업을 일괄하여 시행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
- 토지이용계획, 농어촌 주택 개량, 농어촌 경관관리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 재해예방
-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지역특화발전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
-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 농업생산기반정비,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 시설의 설치
-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등의 이행여부 검토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환경용량)와의 부합성 검토

## 바. 참고사항

-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2012)
-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3)
-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참조



##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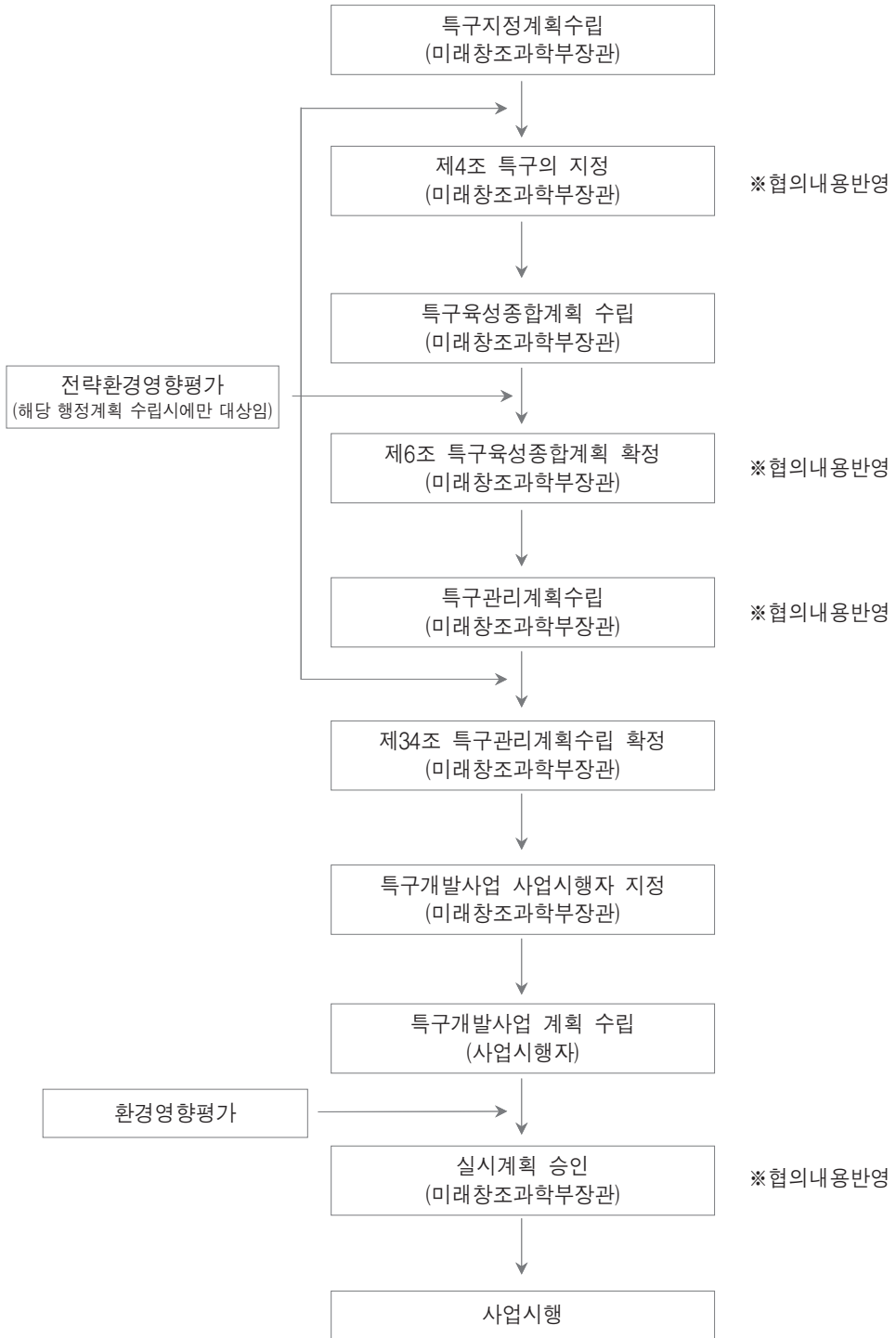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대상지역 : 특구 지정 지역
- 약 15 ~ 70 km<sup>2</sup>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특구의 명칭·위치
-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특구의 개발 필요성
-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자원조달방법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교통처리계획
- 대학·연구소·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환경보전계획,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 관련계획 >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의한 해당지역 시·도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 대안설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대안종류 선정의 적극성과 적정성 검토(예시): 계획 비교, 수용공급 대안 지향, 입지의 경우 다른 대상입지 지향하나 경계일부 조정 대안의 경우 지양

- 계획 비교: 개발 대비 No Action의 긍정적 효과 도출 가능성 검토
- 수요·공급: 수요대비 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입지: 입지 타당성 중점검토지역(공통사항) 포함 유무 및 비율의 비교검토

####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참고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00호, 2015.8.24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 2014.8.20



## 7.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 특구육성종합계획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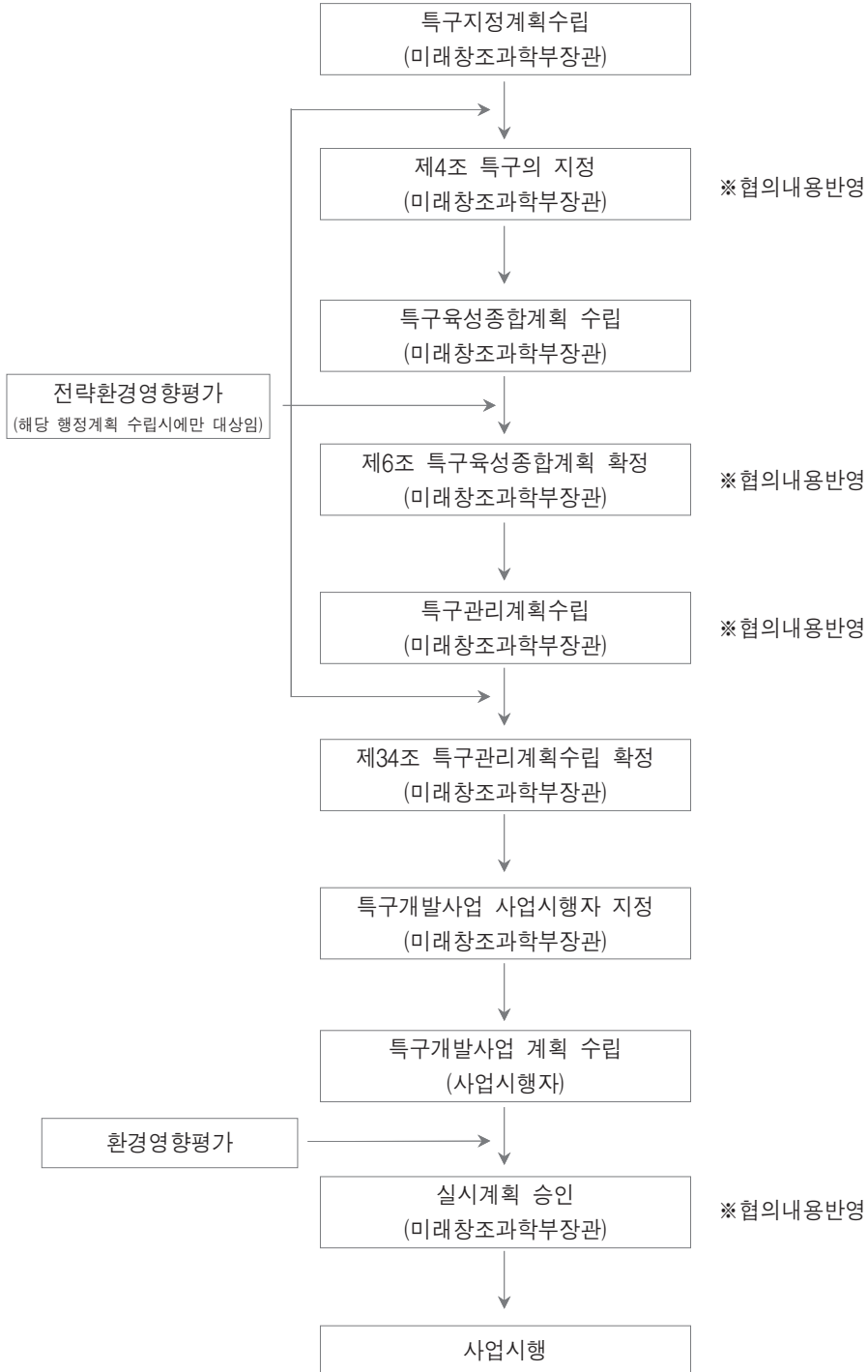
- 대상지역 : 특구 지정 지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과의 연계성

##### < 관련계획 >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의한 해당지역 시·도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대안종류 선정의 적극성과 적정성 검토(예시): 계획 비교, 수용공급 대안 지향, 입지의 경우 다른 대상입지 지향하나 경계일부 조정 대안의 경우 지양

- 계획 비교: 개발 대비 No Action의 긍정적 효과 도출 가능성 검토
- 수요·공급: 수요대비 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입지: 입지 타당성 중점검토지역(공통사항) 포함 유무 및 비율의 비교검토

####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입지의 타당성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상위 단계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한 계획으로 본 단계에서는 필요 없음

## 바. 참고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00호, 2015.8.24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 2014.8.20.



## 8.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 특구관리계획 : 연구개발특구의 기본 관리방향과 특구내의 세부적인 토지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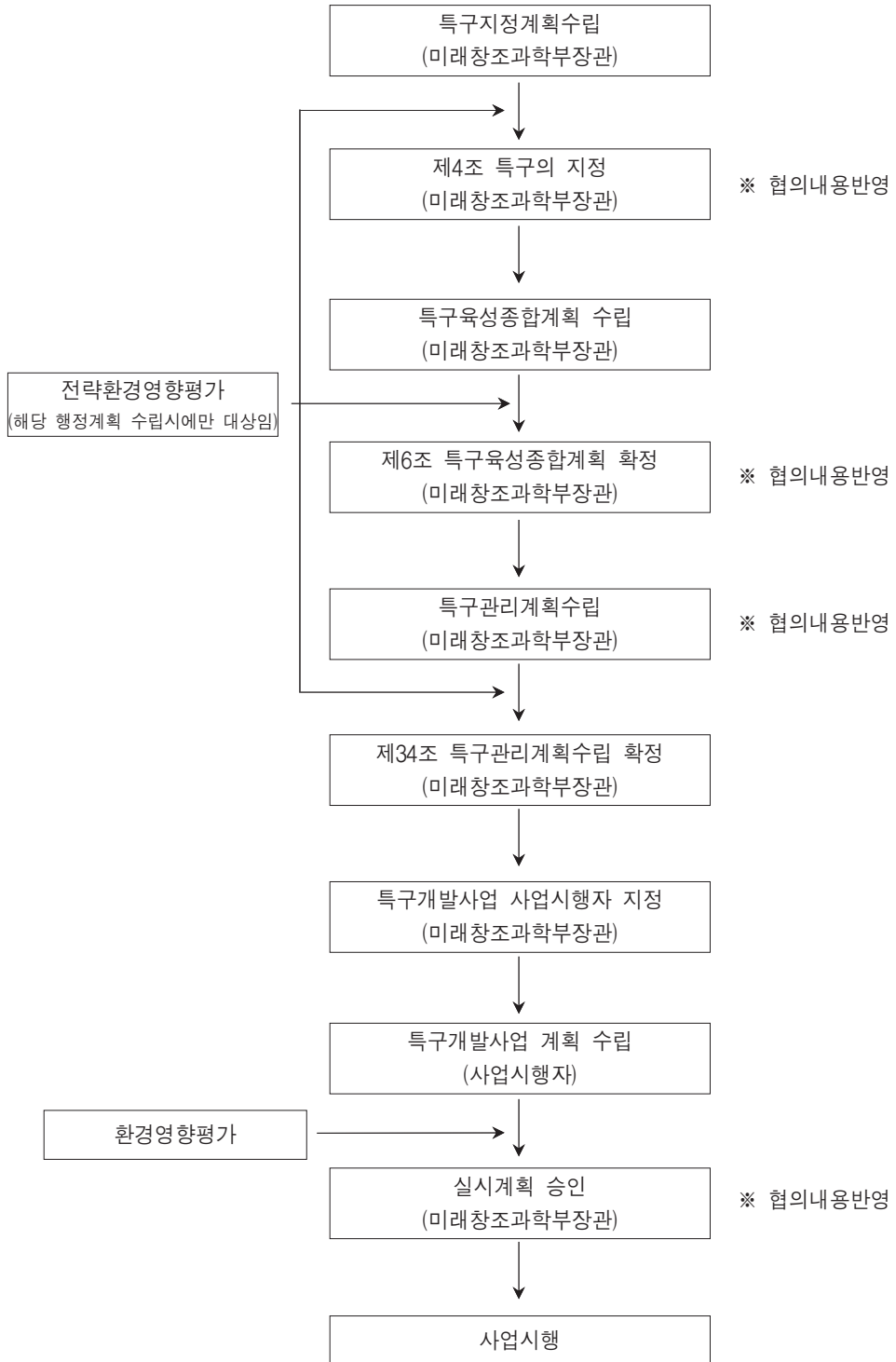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대상지역 : 특구 지정 지역
- 약 15 ~ 70 km<sup>2</sup>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 특구의 위치 및 면적
-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과의 연계성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 계획과의 연계성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대안종류 선정의 적극성과 적정성 검토(예시): 계획 비교, 수용공급 대안 지향, 입지의 경우 다른 대상입지 지향하나 경계일부 조정 대안의 경우 지양

- 계획 비교: 개발 대비 No Action의 긍정적 효과 도출 가능성 검토
- 수요·공급: 수요대비 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입지: 입지 타당성 중점검토지역(공통사항) 포함 유무 및 비율의 비교검토

####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입지의 타당성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상위 단계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한 계획으로 본 단계에서는 필요 없음

## 바. 참고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00호, 2015.8.24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 2014.8.20

## 9. 개발대상도서 지정 및 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 제6조(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 도서 :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 개발대상도서 :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 나.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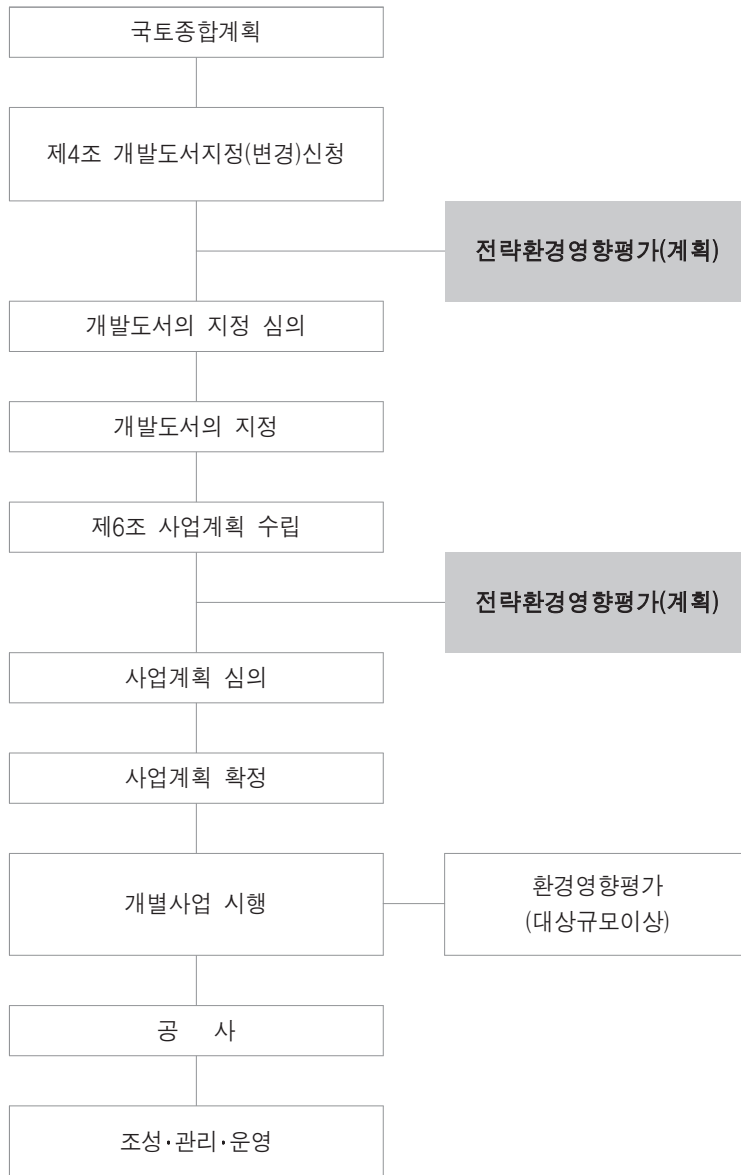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 개발목적, 개발방향, 개발사업의 개요
-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사업별 투자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국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 관련계획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무인도서종합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대안종류 선정의 적극성과 적정성 검토(예시):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대안 지향

- 수단·방법: 도시관리 차원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의 검토(예: 동일 지역의 전면개발과 도시재생 대안, 용도지역의 적절한 위계 설정, 제2종 일반주거와 제3종 일반주거 용도변경시의 예측 및 비교 등)
- 수요·공급: 인구증가 동향, 도시환경관리, 주택 및 개발수요 등에 기반한 대안 설정 검토
- 입지: 개발 및 관리대상 입지와 경계 적절성 등의 대안 검토
- 시기·순서: 계획 및 개발의 추진가능성, 가능시기를 고려한 대안의 현실성 검토 등(예: 개발추진의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용도지역만 변경코자 하는 경우, 개발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제시)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10.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탄광지역진흥 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 제39조의9(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 석탄산업 :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
- 석탄광업 :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
- 석탄광업자 :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 석탄가공업 :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석탄가공업자 :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 :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
- 석탄가공제품 :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광해(鑛害) :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
- 탄광지역 :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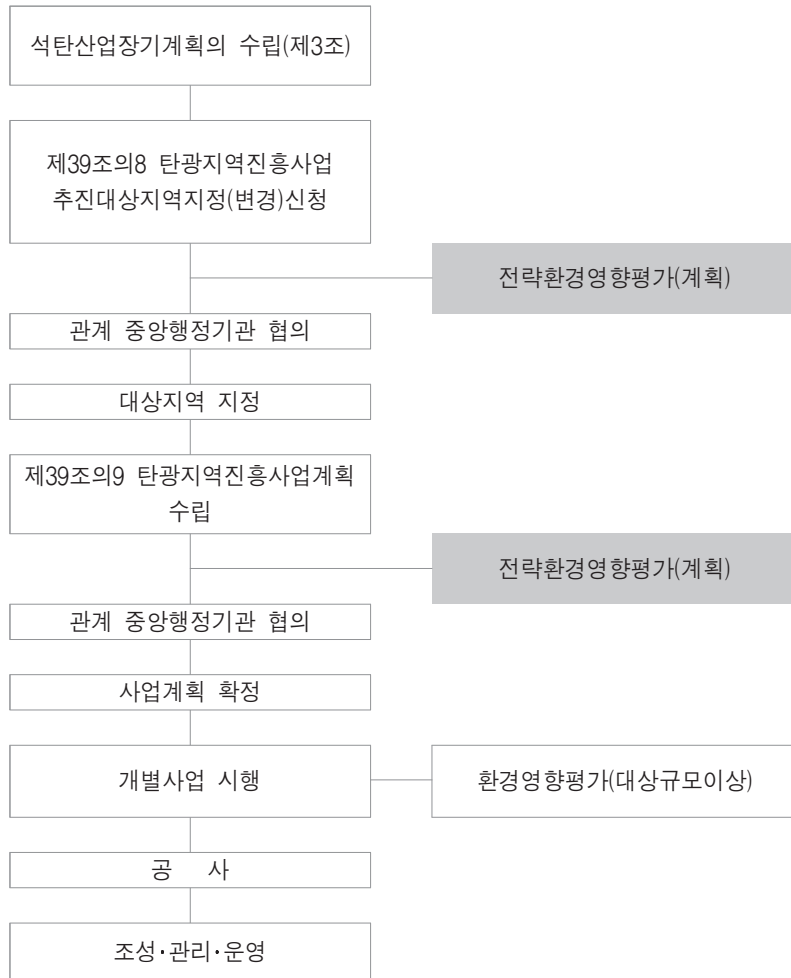
-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석탄산업법 제3조에 의한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과의 연계성



### < 관련계획 >

- 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대안종류 선정의 적극성과 적정성 검토(예시):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대안 지향
      - 수요·공급: 도시환경관리, 주택 및 개발수요 등에 기반한 대안 설정 검토
      - 입지: 개발입지와 경계 적절성 등의 대안의 검토
      - 시기·순서: 계획 및 개발의 추진가능성, 가능시기를 고려한 대안의 현실성 검토 등
- 기타 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기타 탄광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의 파괴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바. 참고사항

- 석탄산업장기계획 내용
  -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 석탄산업의 지원·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 지역개발계획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 지역개발사업 :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투자선도지구 :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
- 낙후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 거점지역 : 산업·문화·관광·교통·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
- 지역활성화지역 :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나. 대상지역

-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국계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국계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협의요청시기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 제외)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지역
- 예정지역 :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 주변지역 :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 나. 대상지역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일대(구,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일부,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부)
- 사업규모 : 72,908,221㎡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72,908,221	100.0	
주 택 용 지	15,337,793	21.0	
상 업 업 무 용 지	1,537,110	2.1	
산 업 용 지	854,583	1.2	
공 원 녹 지	37,942,614	52.0	
유 보 지	1,127,487	1.6	
시 설 용 지	16,108,634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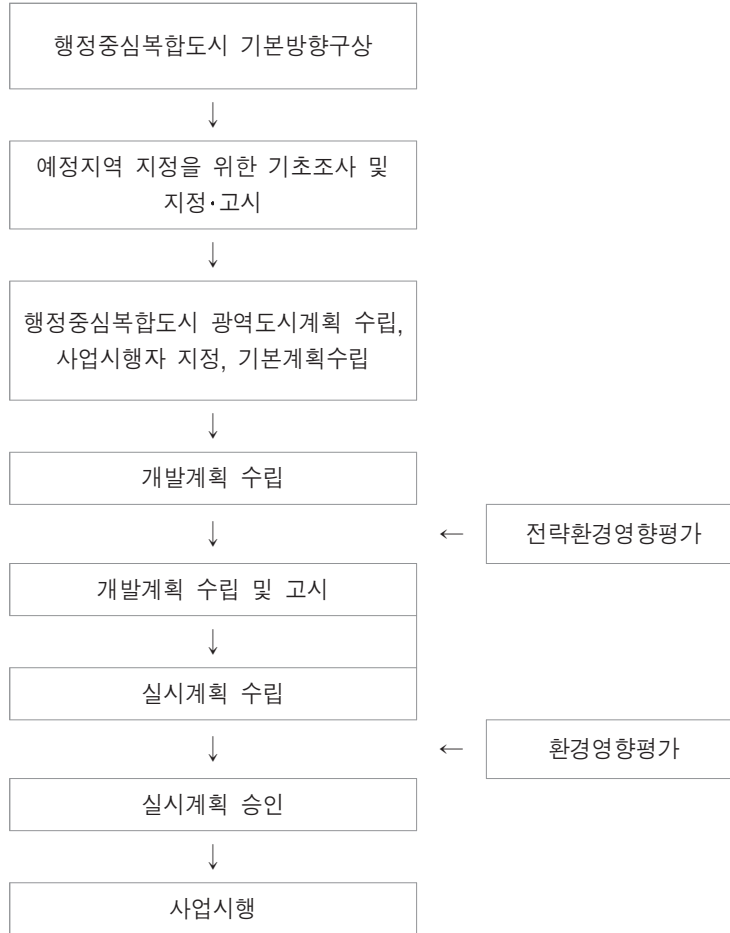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인구수용계획,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도시문화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 교육·문화시설, 보건의료·복지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예정지역 중 「국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재원조달계획,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 도시정보화계획, 문화재보호계획,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지하매설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요청시기 :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철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13.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
- 국제화계획지구 :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위치·면적 : 경기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km<sup>2</sup>
- 주택·인구 : 54,499세대 / 134,680인
- 사업기간 : '08. 5.30(개발계획 승인) ~ '20.12월
  - 1단계(4,479천m<sup>2</sup>, 서정리역세권 중심) : '08. 5 ~ '18.12
  - 2단계(4,394천m<sup>2</sup>, 행정타운 중심) : '08. 5 ~ '19.12
  - 3단계(4,548천m<sup>2</sup>, 국제교류특구 중심) : '08. 5 ~ '20.12

### 다. 계획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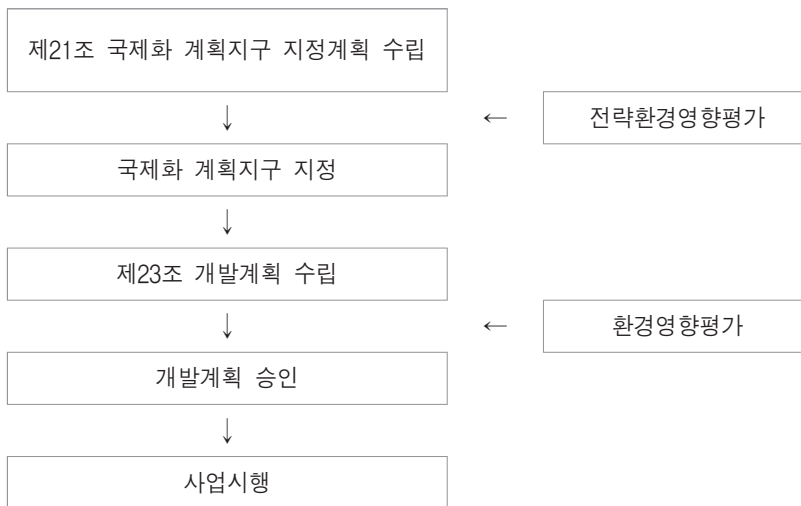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및 자원조달방법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 교육·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협의요청시기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법 제6조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1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
-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 특구토지이용계획 :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특화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특화사업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

### 나. 계획의 주요내용

-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 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 재원조달방법
-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등



### 다.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협의요청시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민간기업·법인·개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구계획을 제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구계획안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포함)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 및 계획 승인



### 라.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난개발 유도 가능성 여부(생태축, 지형·지질, 토지이용계획, 경관)
  - 특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한 특구지정 범위(면적) 설정의 적정성

## ○ 입지의 타당성

- 특구지정으로 인한 규제특례 사항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분석
- 특화사업과 지역 환경과의 적합성
-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수질·대기(악취)·소음 등)
-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보호종, 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대책

**마. 참고사항**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전부개정('12.7.22)에 따라 추가된 협의대상 사업으로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지원정책/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정 현황 등 파악 가능



## 15. 광역시설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 관련용어
  - 광역시설계획 :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국제자유도시 :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목적 및 필요성
- 위치·면적 등 사업개요
-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별 사업추진 프로세서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 내 광역시설계획안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계획을 확정·고시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시설별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 적절한 수요예측 등을 통한 시설계획 수립여부
  - 계획의 범위(지역) 설정의 적정성

#### < 참고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8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된「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토록 규정함



## 16. 친수구역의 지정 및 조성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6조(국토교통부/친수공간과)
- 목 적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관련용어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국가하천 :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
  - 친수구역 :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이상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
  - 친수구역조성사업 :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
  - 저영향 개발기법 :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국가하천 인근 지역으로 사업면적 10만㎡이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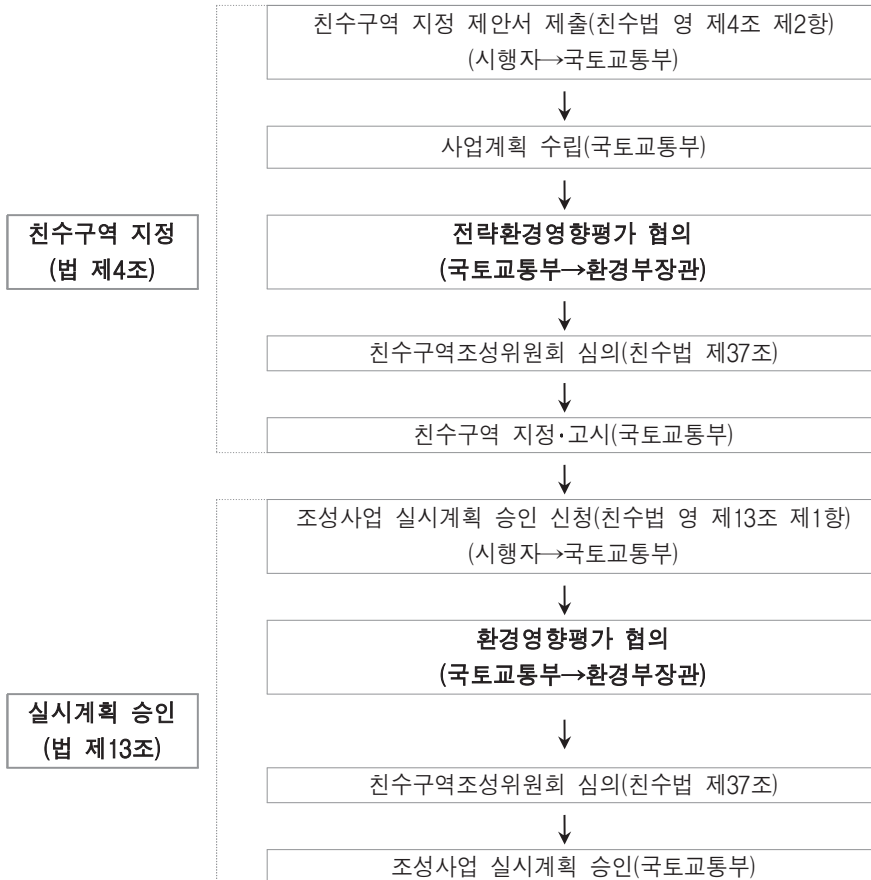
### 다.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 및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하천 고유의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 저영향 개발기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적용할 것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보전토록 할 것

### 라.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여건, 공간구조의 특징,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인구수용계획
- 접근성 및 연계성과 친환경적 시설 이용 등을 위한 수변중심 공간계획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탄소배출 저감계획, 입체녹화계획 등을 고려한 시설물 특화계획
- 경관 및 역사문화 보전계획
- 생태 및 녹지계획, 물순환계획, 교통계획
- 주택용지 및 자족시설용지 등 계획
-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마.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저촉여부
- 사업지역 중 해당지역(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수변구역, 철새 등 멸종 위기종 도래지 등)을 제외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 설정 여부

### ○ 입지의 타당성

- 환경현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 (수질·대기(악취)·소음 등) 가능성 여부
-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부합여부(목표수질 달성여부, 미달성 시 기본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
- 철새이동경로 및 서식공간 확보, 법정보호 동식물의 서식지, 수경관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 수변생태계의 양호한 녹지축 보전 등 수변녹지 확보 여부

## 사. 참고사항

- 친수구역 조성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87호, '14. 6. 13)

## 17.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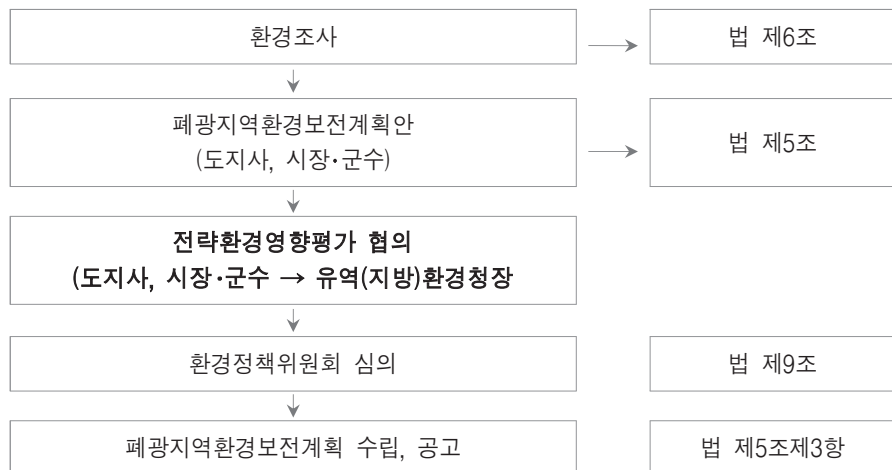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 관련용어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

### 나. 계획의 주요내용

-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달성 계획
-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 환경보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라. 환경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산림·식생·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
-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
-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
- 광해 및 산림 피해 현황
- 폐가, 공가,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실태
- 보존·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식물의 서식현황
- 지형 및 생태·자연도
-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 폐광인근 지역에 대한 중금속의 토양·하천 등 오염 현황 및 개선대책
  - 폐가, 공가 등 폐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석면발생물질 유무 및 처리 계획 포함)

## 18.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 기업도시 :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 기업도시개발구역 :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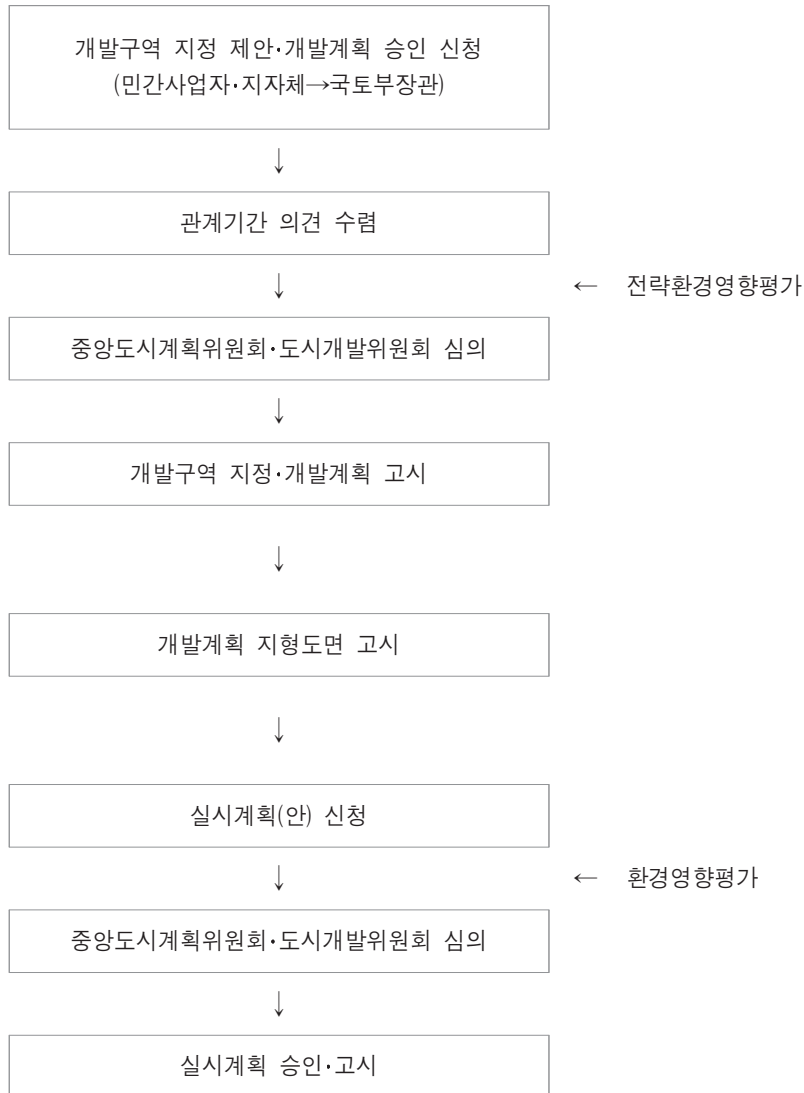
### 나.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상수도·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 포함)
-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 조성토지, 원형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한다)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다.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라.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국토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 검토
  - ※ 국토종합계획에서의 국토발전 방향, 비전, 지역별 기능분담 등과의 연계성 검토

##### < 관련계획 >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 국토환경보전 목표 및 대책과의 부합성 검토

####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 설정된 대안이 지역지정의 계획비교, 입지선정에 따른 비교, 개별사업별 유형 및 규모에 따른 비교 등으로 적정하게 설정된 대안인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기업도시개발지구의 지정은 다양한 개별사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입지의 타당성은 개별사업별 및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검토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p.138), 산업단지 지정(p.192)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마. 참고사항

- 「기업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2호, 2014.9.3.)참조



## 19. 새만금사업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수립권자 : 새만금청장
- 계획수립기간 : 필요시
- 대상지역범위 : 새만금사업지역
- 용어정의
  - 새만금사업지역 :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새만금사업 :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 기본계획 :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 토지용도 :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
  - 새만금호 :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
  - 외국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 원형지 :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중에서 둘 이상의 용지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도로·철도·운하·복합형교통수단·수상교통수단, 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방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방안시설·도축장·하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 기반시설 확충계획
  -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 수질관리계획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연차별 자원조달 대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
    -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대책
    -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절차
  -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상위계획에 반영된 장래 계획인구 및 주변지역의 개발정도와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광역기반시설계획이 상호 연계된 계획의 적정성 대안을 설정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기간시설 연계성,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역기반시설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대안을 설정
    - ※ ‘도시개발’, ‘도로건설’ 사업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계획>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이루어졌는가를 검토

**<관련 계획>**

-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상의 공간환경 관리전략 및 보전목적 공간설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상위계획에 반영된 장래 계획인구 및 주변지역의 개발정도와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광역기반시설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수립되었는가를 검토
  - ※ '도시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을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 등의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수정)
- 중요한 생태자원인 녹지와 하천이 만나는 전이지대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생태연결거점,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검토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이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과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기반시설설치 계획의 수립여부 검토
-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을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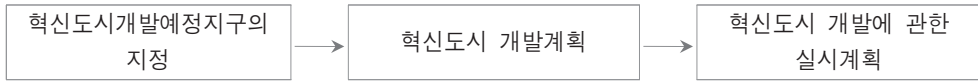
## 20. 혁신도시 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수립권자 : 사업시행자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계획수립기간 : 필요시
- 대상지역범위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용어정의
  - 공공기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종전부동산 :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 포함)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경관계획
  - 도시정보화계획
  - 문화재보호계획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도시방재계획
  -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절차
  -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
  - 혁신도시가 기존도시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시의 현황과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대안을 설정
- 입지선정 단계
  - 해당지역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기간시설 활용도,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 ○ 토지이용계획 단계

- 정주 및 혁신공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에 대한 보전·활용·관리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을 설정
  - ※ '도시개발' 지정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 계획 >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이루어졌는가를 검토

#### < 관련 계획 >

-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상의 공간환경 관리전략 및 보전목적 공간설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었는가를 검토
- 정주 및 혁신공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형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녹지공간에 대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를 검토

※ '도시개발' 지정을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 등의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수정)
  - 중요한 생태자원인 녹지와 하천이 만나는 전이지대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생태연결거점,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검토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이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와 돌출 및 압박경관의 형성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층고 조정, 시설물 배치 등)을 검토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과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지하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수 이용시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용수 확보 및 이용 축소방안, 모니터링 등)을 검토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오염유발시설(산업단지 등) 주변으로 입지할 경우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계획(이격거리, 시설물 배치, 녹지조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조성 계획 수립여부 검토
-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인근지역과의 경계지역은 공원·녹지지역을 계획하여 상호이용 및 교류 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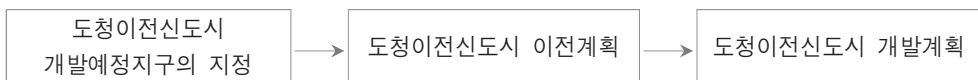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 지정을 참조하여 작성

## 21.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수립권자 : 사업시행자
- 승인권자 : 도지사
- 계획수립기간 : 필요시
- 대상지역범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용어정의
  - 공공기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 이전기관 :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
  - 도청이전신도시 :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종전부동산 :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

### 나. 관련 계획체계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 포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절차
  -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을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
- 기본구상 단계
  - 신도시 지역의 자연 및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방향을 감안한 개발 테마를 설정하여 계획의 적정성 대안을 설정
- 입지선정 단계
  - 해당지역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기간시설 활용도,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 토지이용계획 단계
  - 도시전체의 장래 인구규모 및 취학률 등을 감안하여 도로, 교육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기반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규모 적정성을 검토
  - 중앙공원 및 광장 등을 이용한 오픈스페이스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을 설정
  - ※ ‘도시개발’ 지정을 참조하여 작성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 계획 >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이루어졌는가를 검토
    - < 관련 계획 >
      -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상의 공간환경 관리전략 및 보전목적 공간설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지역의 자연 및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청이전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방향을 감안한 개발 테마가 선정되었는가를 검토



- 도시전체의 장래 인구규모 및 취학률 등을 감안하여 교통시설, 교육시설, 기타기반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를 검토
- 정주 및 기타 공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형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녹지공간에 대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를 검토

※ '도시개발' 지정을 참조하여 작성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 등의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수정)
- 중요한 생태자원인 녹지와 하천이 만나는 전이지대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생태연결거점,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검토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이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와 돌출 및 압박경관의 형성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층고 조정, 시설물 배치 등)을 검토



-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과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지하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수 이용시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용수 확보 및 이용 축소방안, 모니터링 등)을 검토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 오염유발시설(산업단지 등) 주변으로 입지할 경우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계획(이격거리, 시설물 배치, 녹지조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조성 계획 수립여부 검토
-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을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등)을 검토
- 주민 민원 또는 관련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 근지역과의 경계지역은 공원·녹지지역을 계획하여 상호이용 및 교류 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도시개발' 지정을 참조하여 작성



##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 1.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 <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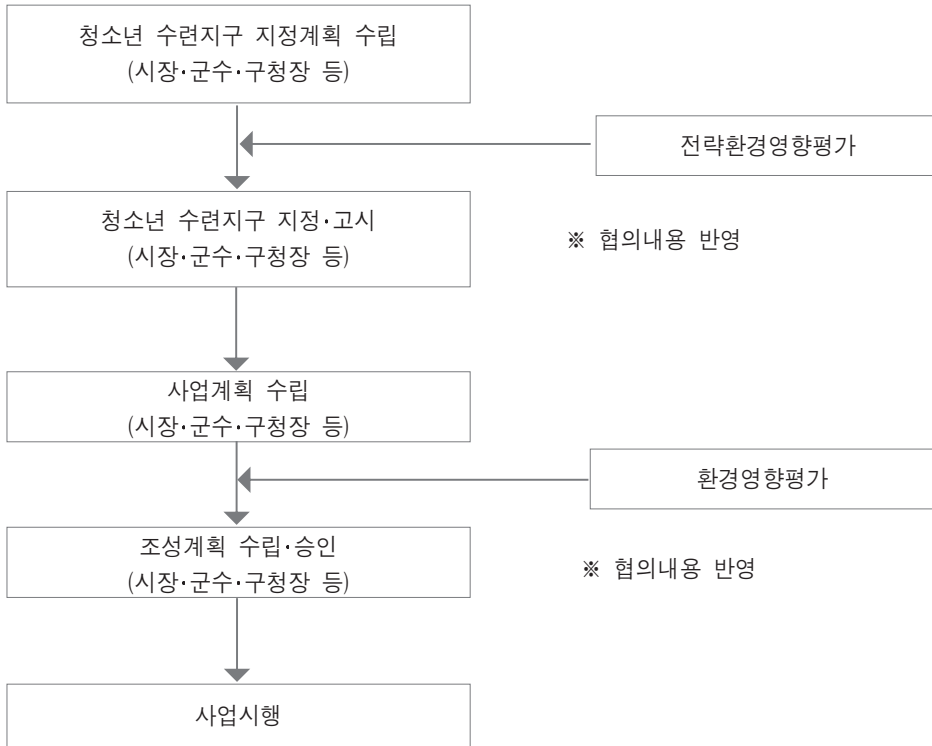
##### - 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내 용
가. 수련시설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각각 1개소 이상
나.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1개소 이상 및 실외체육시설 3개소 이상
다. 문화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라. 자연탐구시설 또는 환경학습시설	○ 자연학습원, 환경학습장, 동·식물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마. 모험활동시설	○ 수상·해양·항공 또는 산악훈련장, 극기훈련장, 모험활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험활동 시설 중 1개소 이상
바. 녹지	○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범위 및 면적

- 면적은 당해 수련지구 내 전체 시설면적 중 도로·광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한 시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상위계획 >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청소년기본법) 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관련계획 >

- 환경관련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검토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기타 관련계획과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① 대안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분석 되었는지 여부

- 설정된 대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등에 부합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②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의 적정성

- 대상계획의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시기와 순서, 입지 등 여러가지 다른 조건으로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안인지 여부

- 생태적환경 및 지형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여부 검토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 분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 입지의 타당성

- 입지 타당성 중점검토 지역(공통사항)의 포함 및 고려유무 검토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 발생 여부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 여부(난개발 가능성)

-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영향 검토

-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 구릉지에는 가급적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도록 조성하고 가급적 이들 사이의 연결성 확보

- 구역내의 물과 공기가 순환되는 경로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조성

-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녹지축을 설정

## 바. 참고사항

-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9조)
  -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다. 계획의 주요내용 참조)
  -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营业을 영위 하기 위한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수련지구구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조례에서 정하는 것
  - 수련지구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수련지구구성 계획(이하 "구성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의 의해 설립된 조합 포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장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
- 입지선정 전문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의 연구기관, KEI,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 연구소, 환경영향평가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 주변영향지역 구분
  -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간접영향권 :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폐기물매립시설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300m이내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직접영향권외의 지역(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 폐기물매립시설 : 매립량 300톤/일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이상
- 폐기물소각시설 : 소각처리능력 50톤/일 이상

-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환경부장관이 설치시설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한함)로 정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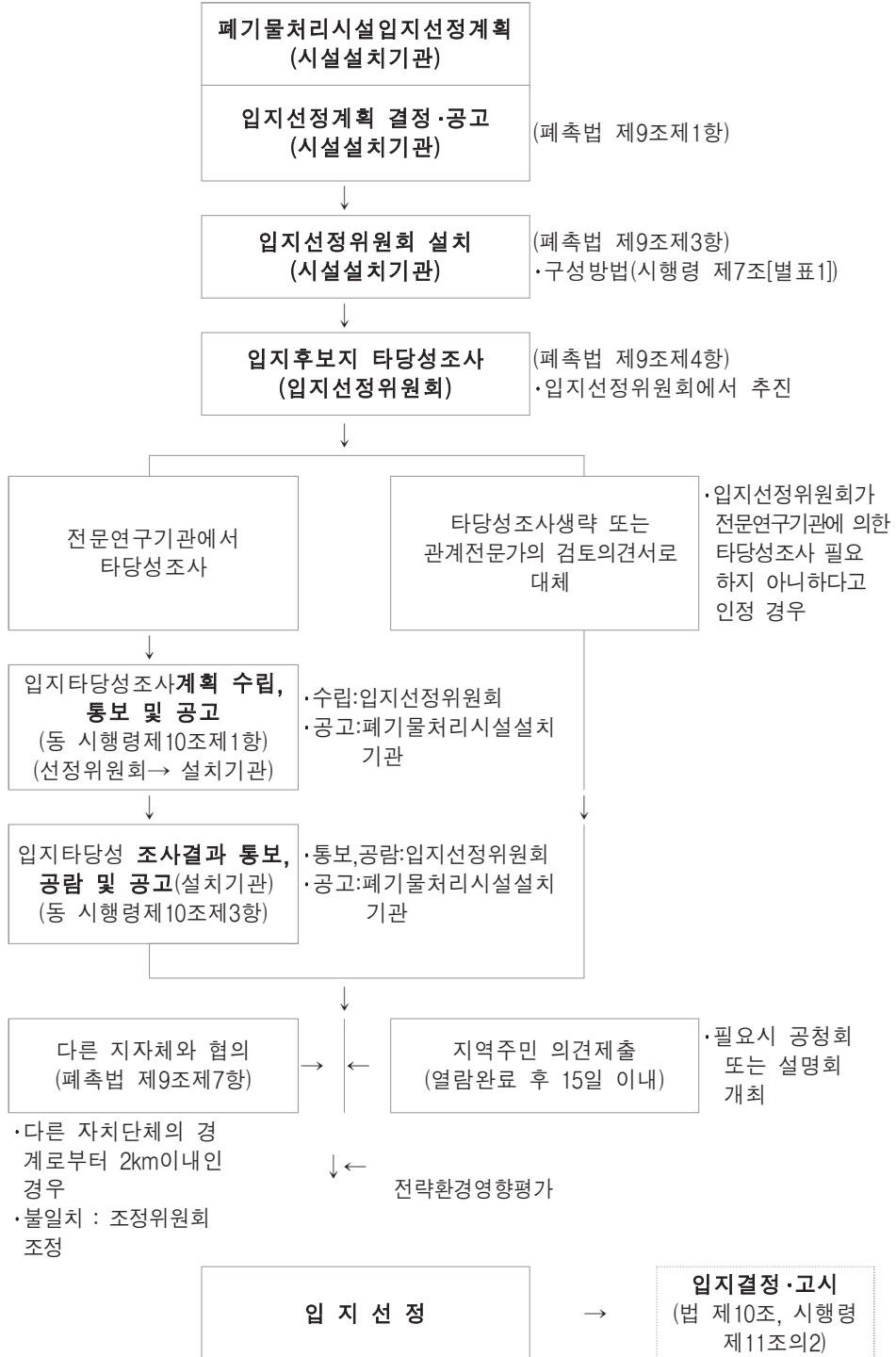
#### 다. 입지선정시 계획의 주요내용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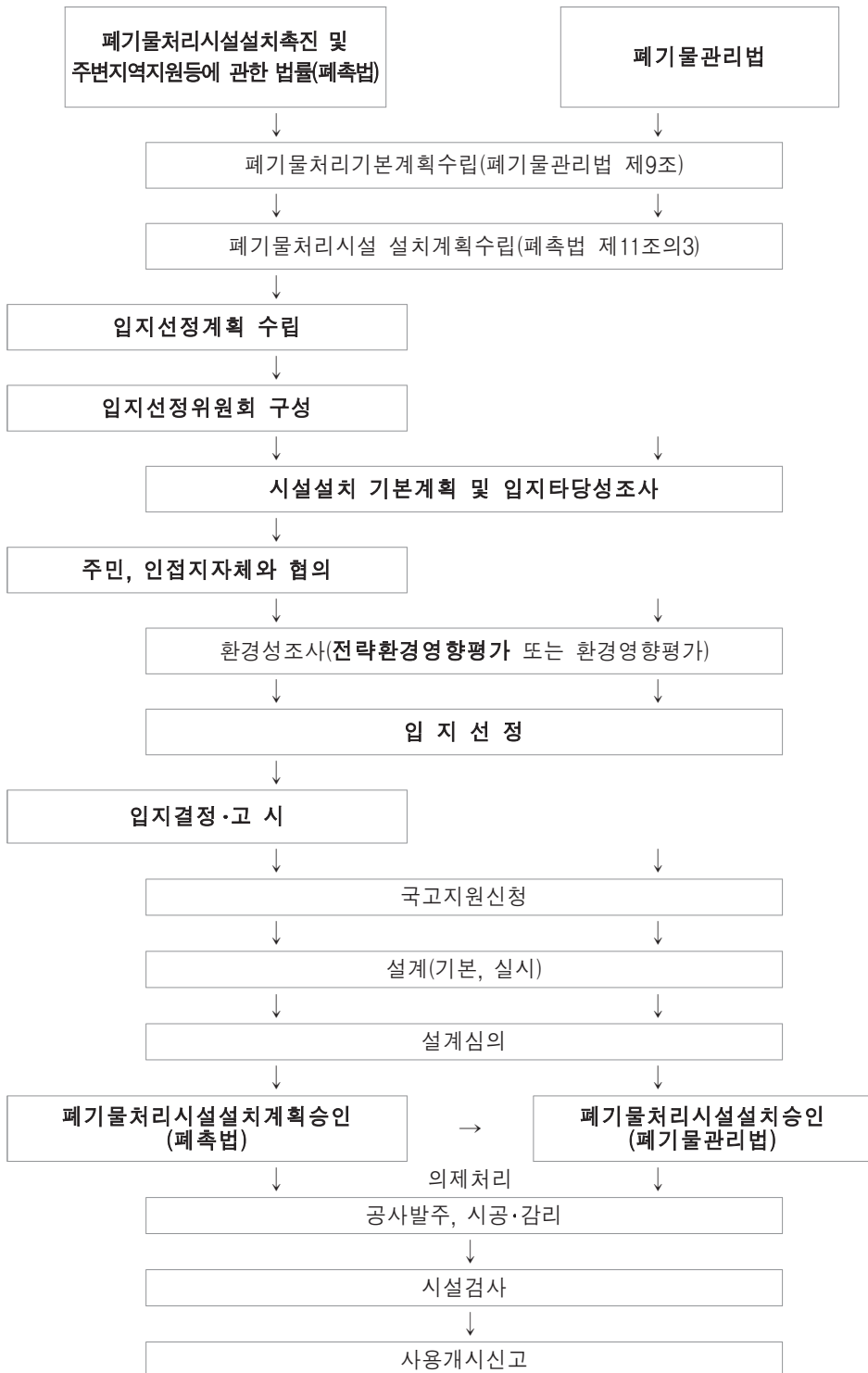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 입지선정 절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





## 마.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수립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추가)
- 기본구상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추가)
  - 해당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과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기존시설 유지, 신설, 증설 등의 사업 유형 대안을 설정(추가)
  - 해당 지역의 폐기물 발생 규모 예측과 권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권역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규모 축소(연계처리)와 원안 유지 등의 대안을 설정(추가)하고 규모 축소를 할 경우 소각비율과 매립비율, 재활용비율 등의 대안을 설정
    - ※ 종합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함
- 입지선정 단계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추가)
  -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법규, 권역별 폐기물처리 최적화 계획, 사회적 수용성, 환경민감지역 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추가)
  -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용도지역 및 지구 경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 경계에 대한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설정(추가)

##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
      - 상위계획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국토의 보전 및 관리 방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추가)
      - 상위계획 중 지역개발계획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추가)
      - 상위계획 중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계획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추가)

- < 관련계획 >
-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 주변의 개발계획(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지 등)과의 상충성 여부를 검토(추가)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사업 유형의 대안 >
- 해당 지자체(또는 처리업자)의 폐기물 발생량, 처리현황, 시설현황, 관련 상위계획 등을 분석하여 처리시설의 필요성 및 수요예측이 적정한지를 검토
  - 해당지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토대로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및 처리 방법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해당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처리용량, 내구연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파악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수요예측이 예측되었는지를 검토
- < 개발규모의 대안 >
- 최적화 권역 및 타 권역에 대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발 규모를 설정하였는지를 검토(추가)
  - 인접 타 권역 또는 최적화 권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과 폐기물연계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연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추가)
  -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국가환경시책 등에 부합하도록 소각 및 매립, 재활용 비율 등의 용량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 입지선정 대안 >
- 물리적 조건, 토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장애 여건 그리고 본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관되는 개발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검토
  -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



- 환경적 민감지역 회피사항으로 환경관련 용도지역, 주요 산줄기 및 생태축, 식생 및 생태우수지역(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법정보호종 서식지, 주요 자연 및 경관자원 등의 훼손 여부 등을 검토
-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근접성이 용이한 입지를 선정하였는지를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은 대기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입지 대안 설정 시 시 대기, 수질, 지하수, 악취 발생 여부 및 정도를 면밀히 평가하여 생활환경 안정성을 확보하였는지를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지구계 설정 대안 >

- 재해요인 및 자연적 환경, 인문적 요인, 도시기반시설,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의한 경계,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와 토지이용현황,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 ○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생태 보전관련 용도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여 대안을 검토(수정)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 II 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이주 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수정)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계획 축소, 공원·녹지 설정, 생태통로설치 등)을 검토(수정)

-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G마크), 특히 지형(자연해안, 화산지형, 사구, 사빈, 사주, 석호, 동굴, 계곡, 습지, 호소 등) 및 자연경관자원(사빈, 주상절리, 하식애, 풍화혈, 파식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보호방안 등)을 검토
- 매립시설의 경우 4대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지류의 경계로부터 각각 1km, 500m 이내의 설치제한지역에 입지하는지를 검토
- 입지 가능한 구역중 지형여건상 경사가 급하거나 용량확보가 어려운 지역인지를 검토
- 지형의 변화에 따른 흙의 미끄러짐 등 붕괴 우려되거나, 하천유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및 영향 정도를 검토
-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계획 변경, 오염토사처리방안 등)을 검토(추가)
-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지형 및 식생훼손 및 경관 부조화 완화방안 등)을 검토(추가)

#### < 생활환경의 안전성 >

- 수질 및 대기질, 악취 등에 대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 인접지역에 입지한 타 처리시설 또는 산업시설과의 누적영향으로 인한 위해성 초과 여부를 검토
- 매립지의 침출수에 대해 다른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처리 방안이 가능한지와 장래 여유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
-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추가)



### < 사회·경제 환경 및 기타 >

-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매립시설계획의 수립여부 검토 (추가)
-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사업규모 축소, 대체농지확보 등)을 검토(추가)
-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 (주거·생산·휴식·위락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하는지의 검토
- 폐기물매립시설 개발과정에서 주민에게 참여 통로 보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의 검토
- 지역 주민에게 시설운영 안정성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는지의 검토
- 최적화 권역 내 도로, 교통 시설 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생원과 처리시설 간 근접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를 선정하였는지의 검토

## 2. 자원순환기본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2018.1.1. 시행)
- 담당부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수립권자 : 환경부 장관
- 계획수립기간 : 5년
- 대상지역범위 : 전국
- 용어정의
  - 자원순환 :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
  - 재활용가능자원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 제외]
  - 부산물 :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
  - 지정부산물 :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 재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생이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에너지회수 :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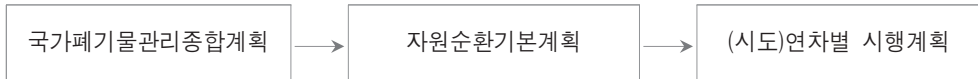


- 다른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
- 폐자원에너지 :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재활용제품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재활용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재활용산업 :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대형폐기물 :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포장재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
  - 1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 나. 관련 계획체계

- 상위계획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하위계획 : (시도)연차별 시행계획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절차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할 때

## 마. 대안설정

- 계획비교
  - 이전 계획에서의 자원순환에 대한 주요 목표와 지표, 추진전략, 주요 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계획의 비교·검토
  - 인구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 재활용 기술, 생활양식,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지표(자원순환율, 최종매립자원량, 자원생산성, 온실가스 감축) 및 부문별 핵심지표(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 감량·재활용률, 폐자원 에너지화율 등)에 대하여 다수의 목표치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검토

## ○ 수단·방법

- 목표연도의 총괄지표와 부문별 핵심지표에 대해 각 지표별 목표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수단·방법의 대안을 설정하고 경제성과 실효성, 효율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생활 및 사업장,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식 즉 소각과 매립, 재활용에 따라 대기질 및 수질, 온실가스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소각과 매립, 재활용 비율의 목표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 정도를 비교·검토

## ○ 시기·순서

- 자원순환과 관련한 다양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에 대하여 시급성과 실효성, 효율성, 공적 및 사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

**바.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기후변화 협약대응의 종합대책 등 국가환경정책 및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리우 환경 협약, 기후변화방지 협약, 바젤 협약, 로테르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국제협약 등과의 부합성 검토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가폐기물종합계획, 자원재활용기본계획, 국가폐기물처리기본계획,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이 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자원순환성 향상,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
-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각의 추진전략이 구체성과 실효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목표로 폐기물의 발생과 처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소각과 매립 비중은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재활용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원순환성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질 및 수질, 악취 등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물질흐름(MAF) 작성을 통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 제16장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1.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 진지 구축시설
  -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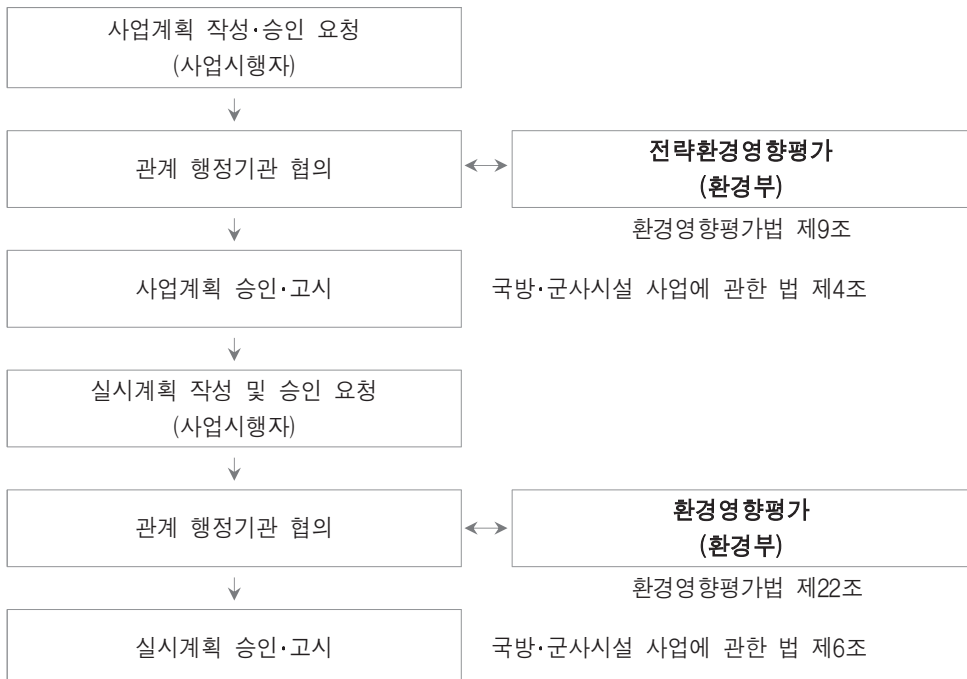
-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다음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
  -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업시행자,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 계획의 적정성

-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사업청) 등

### ○ 입지의 타당성

- 국방·군사시설 예정지의 환경보전용도지역 해당여부 검토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지형조건 및 토지이용기능과 국방 및 군사시설 토지기능과의 정합성 여부
  - 연구 및 시험시설,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진지구축시설,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지역 토지이용기능과의 모순·대립 여부
  - 주변지역과 군사지역간의 자연생태계 및 녹지축 연속성 유지 여부
- 군사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군사시설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토지 배분체계 및 이용계획의 적정성
- 수해, 재해발생 우려지역 입지여부
- 군부대 발생 오·폐수처리, 시설공사·작전·훈련 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비행장·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발생과 토양오염, 군항 운영에 따른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의 활용에 따른 작업환경관리 문제 등과 환경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 가. 근거 및 용어

- 근거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 군사시설 : 전투진지,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민간인통제선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선
-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 대공방어협조구역 :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 나. 대상지역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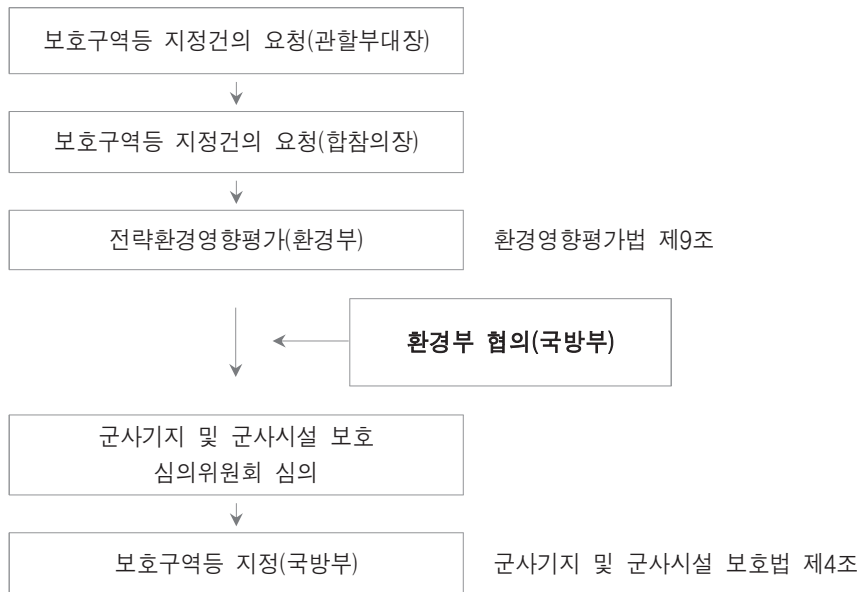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다. 계획의 주요내용

-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
-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이유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합참의장이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 한함)

### 라. 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 마. 주요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등
- 입지의 타당성
  - 국방·군사시설 예정지의 환경보전용도지역 해당여부 검토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지형조건 및 토지이용기능과 국방 및 군사시설 토지 기능과의 정합성 여부



- 연구 및 시험시설,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진지구축시설,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지역 토지이용기능과의 모순·대립 여부
- 주변지역과 군사지역간의 자연생태계 및 녹지축 연속성 유지 여부
- 군사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군사시설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토지 배분체계 및 이용계획의 적정성
- 수해, 재해발생 우려지역 입지여부
- 군부대 발생 오·폐수처리, 시설공사·작전·훈련 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비행장·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발생과 토양오염, 군항 운영에 따른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의 활용에 따른 작업환경관리 문제 등과 환경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

# 부록 (참고자료)

I.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	407
II.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	416
III.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	418
IV. 기타 참고자료 .....	435





## I

##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 □ 환경보전시책

관계법령	주요내용	비 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유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구환경보전계획,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대기, 소음,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기본계획,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기본계획,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습지보전법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계획의 수립·시행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기본계획,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외래생물관리계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계획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관계법령	주요내용	비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 폐기물의 광역 관리, 폐기물의 처리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계획,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단지의 조성,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사업장설치의 허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해수부 고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환경부 고시

## □ 환경기준

### 1. 대기

항목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 <sub>2</sub>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자외선 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 <sub>2</sub>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 <sub>-10</sub> )	연간 평균치	50 $\mu$ g/m <sup>3</sup> 이하	베타선 흡수법 ( $\beta$ -Ray Absorption Method)
	24시간 평균치	100 $\mu$ g/m <sup>3</sup> 이하	
미세먼지 (PM <sub>-2.5</sub> )	연간 평균치	25 $\mu$ g/m <sup>3</sup>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24시간 평균치	50 $\mu$ g/m <sup>3</sup> 이하	
오존 (O <sub>3</sub> )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자외선 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 (Pb)	연간 평균치	0.5 $\mu$ g/m <sup>3</sup> 이하	원자흡광 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5 $\mu$ g/m <sup>3</sup>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 비고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미세먼지(PM<sub>-10</sub>)는 입자의 크기가 10 $\mu$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미세먼지(PM<sub>-2.5</sub>)는 입자의 크기가 2.5 $\mu$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2. 소음

(단위: Leq dB(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수질 및 수생태계

### 가. 하천

####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mg/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 <sup>6+</sup> )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항목	기준값(mg/L)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라.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마.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바.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등급	도안 모형	도안 요령	색상		
			원	물방울	입
매우 좋음	la			파란색(cyan, C) 100~90%, 빨간색(magenta, M) 20~17%, 검은색(black, K) 5%	빨간색(magenta, M) 60%, 노란색(yellow, Y) 100%
좋음	lb			파란색(cyan, C) 85~80%, 노란색(yellow, Y) 43~40%, 빨간색(magenta, M) 8%	빨간색(magenta, M) 60%, 노란색(yellow, Y) 100%
약간 좋음	II			파란색(cyan, C) 57~45%, 노란색(yellow, Y) 96~85%, 검은색(black, K) 7%	
보통	III		검은색 (black, K) 15%	파란색(cyan, C) 20%, 검은색(black, K) 42~30%	
약간 나쁨	IV			빨간색(magenta, M) 35~30%,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나쁨	V			빨간색(magenta, M) 65~55%,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매우 나쁨	VI			빨간색(magenta, M) 100~90,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나. 도안 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 등급	생물 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생물(底棲生物)	어류	
매우 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비수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 부착 조류(藻類)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 은어, 쓰가리 등 서식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 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 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 나쁨 ~ 매우 나쁨	윈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갈따구, 나방파리, 꽃등에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 부착 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나. 호소

-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과 같다.
-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클로로필-a (Chl-a) (mg/m <sup>3</sup> )	대장균군 (균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la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lb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을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 제2호와 같다.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라. 해역

### 1) 생활환경

항 목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mg/L)
기 준	6.5 ~ 8.5	1,000 이하	0.01 이하

###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I(매우 좋음)	23 이하
II(좋음)	24 ~ 33
III(보통)	34 ~ 46
IV(나쁨)	47 ~ 59
V(아주 나쁨)	60 이상

### 3)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단위: µg/L)

중금속류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크롬(6가)
단기 기준*	3.0	7.6	34	9.4	19	200
장기 기준**	1.2	1.6	11	3.4	2.2	2.8

\* 단기 기준: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 기준: 연간 평균값(최소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과 비교 적용

## 4)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mg/L)
모든 수역	6가 크롬(Cr <sup>6+</sup> )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0.0005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	0.0005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말라티온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0.005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 II

##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분 야	해당법령 및 행정규칙	비 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준)	
특별대책지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영산강·섬진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대기관리권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사업장 설치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및 시행령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 지정현황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lt; 참고 &gt;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	500m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 Ⅲ

##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내용	비 고
국토기본법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국토 조사	국토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국토의 용도 구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용도지역의 세분, 용도지구의 지정	국토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로의 구분,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토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국토부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도시녹화계획,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국토부
주차장법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주차장설비기준	국토부
건축법	건축신고,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국토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광역계획권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광역도시계획 승인 및 확정	국토부 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종류, 입지선정기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성 검토	국토·농림 지침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입지기준등	문체부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국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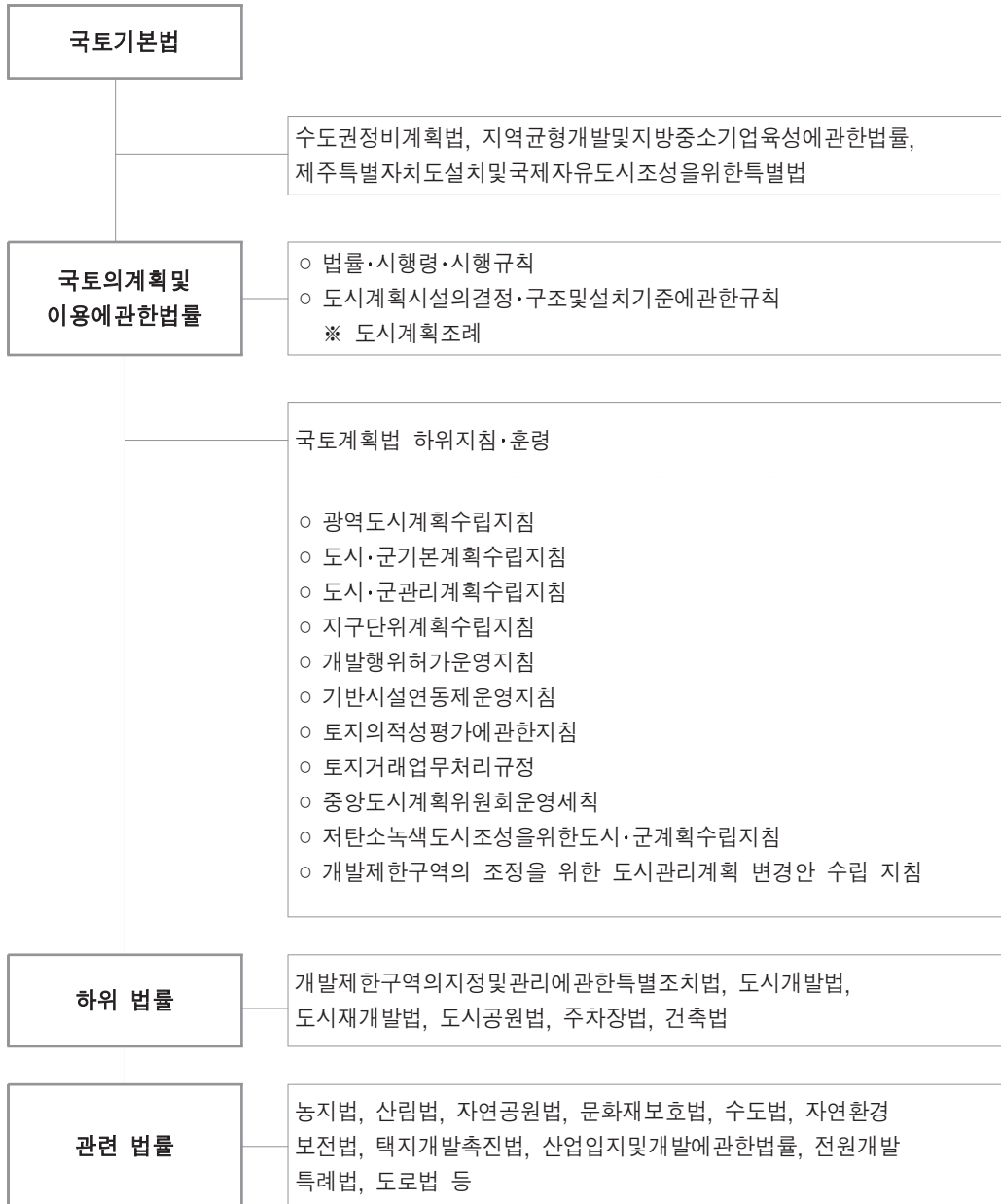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내용	비 고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 주변지역의 용도지정에 관한 조치, 공원녹지 확충계획, 공원녹지율	국토부 고시
혁신도시 계획기준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내용,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혁신도시 적정 공원·녹지비율, 문화시설의 규모별 용지면적	국토부 훈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경관보전을 위한 조치	국토부 고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용도지구계획	국토부 훈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지안의 시설,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세대간의 경계벽등, 폐기물보관시설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 수산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국토 교통부



< 참고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1. 법령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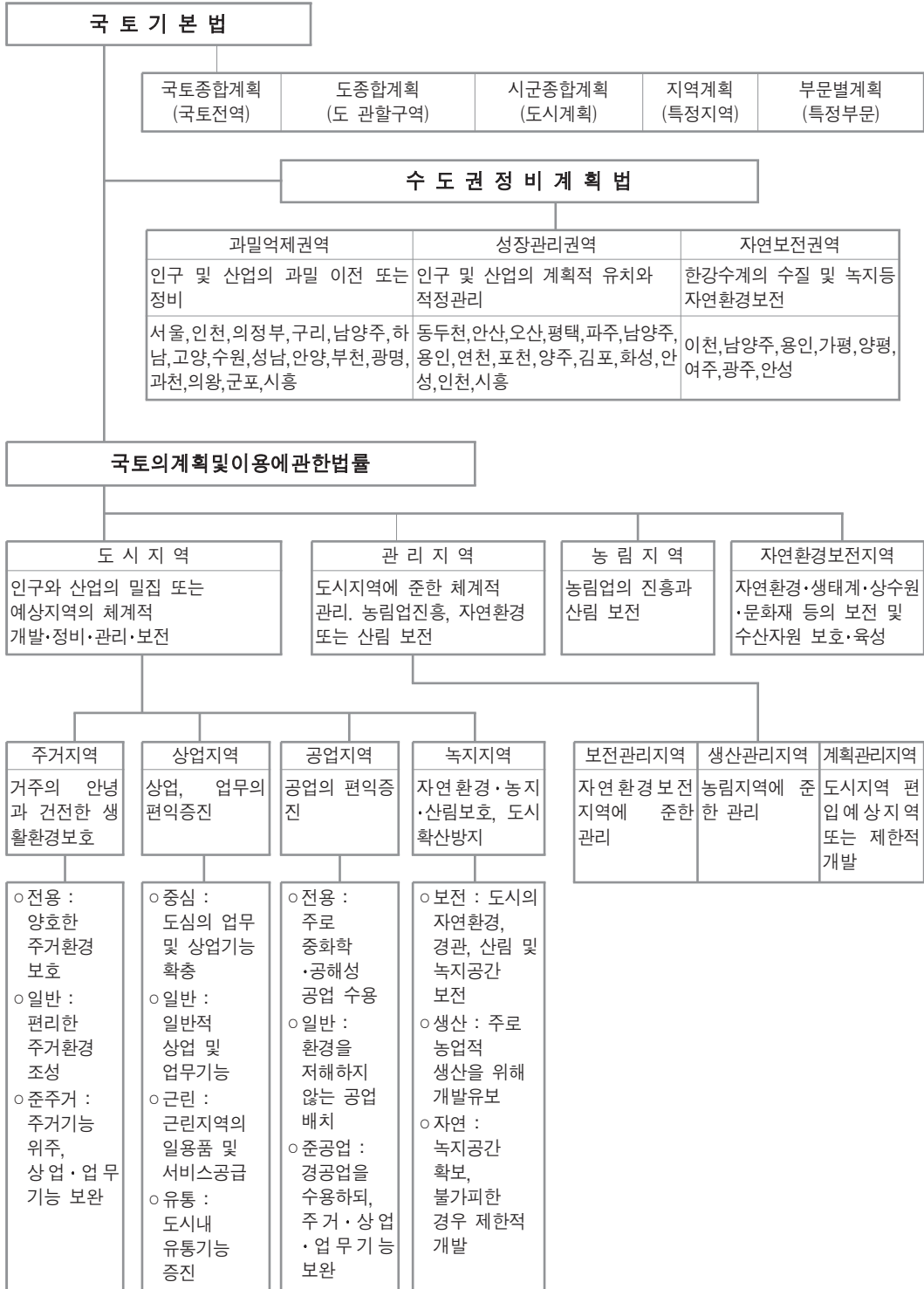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

구분	제 목	주 요 내 용	하위규정
제1장	총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도시계획의 지위</li> <li>○ 타법령에 의한 구역지정·의제 제한</li> </ul>	
제2장	광역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계획권 지정</li> <li>○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li> </ul>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li> </ul>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li> <li>○ 용도지역·지구·구역</li> <li>○ 도시계획시설</li> <li>○ 지구단위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li> <li>○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li> <li>○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li> <li>○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li> </ul>
제5장	개발행위허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행위허가</li> <li>○ 기반시설연동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li> <li>○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li> </ul>
제6장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제한</li> <li>○ 건폐율</li> <li>○ 용적률</li> </ul>	○ 도시계획조례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집행계획</li> <li>○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수립</li> </ul>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8장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부담원칙</li> <li>○ 보조·용자</li> </ul>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도시계획위원회</li> <li>○ 지방도시계획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li> <li>○ 도시계획조례</li> </ul>
제10장	토지거래허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구역 지정</li> <li>○ 허가절차·기준</li> </ul>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장	보 칙		
제12장	벌 칙		
부 칙			
별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역·지구·구역별 건축제한</li> </ul>	○ 도시계획조례



### 3. 공간계획 체계



## 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가. 용도지역

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 전용, 제1·2·3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 ○ 도시지역안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명칭		지 정 목 적	비 고	
주거지역	3개지역 세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전용주거지역	2중세분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	3중세분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		
	상업지역	4개지역 세분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3개지역 세분	공업의 편익증진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 주거·상업·업무 기능 보완		
녹지지역	3개지역 세분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도시 확산방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		



##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구분

구분	지정목적	비고
관리지역		녹지지역에 준한 건축제한 : 4층이하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수준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녹지 수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의 편입 예상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 수준 (4층이하건축물, 제조업소, 일부공장 등)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초지에 대하여 농지법산림법초지법상 건축제한 적용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공원보호구역·상수원·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상 건축제한 적용 기타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	

-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건폐율·용적률 : 20%·80%)
- 도시지역은 세분전까지 보전녹지지역(건폐율·용적률 : 20%·80%, 관리지역은 세분전까지 보전관리지역 수준(건폐율·용적률 : 20%·80%)으로 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명칭		지 정 목 적	비 고
① 경 관 지 구	3개지구 세분	경관 보호·형성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수변경관지구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 보호·유지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 보호	
② 미 관 지 구	3개지구 세분	미관 유지	
	중심미관지구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일반미관지구	위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	
③ 고 도 지 구	2개지구 세분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 규제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함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함	
④ 방 화 지 구		화재위험을 예방	
⑤ 방 재 지 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	
⑥ 보 존 지 구	3개지구 세분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⑦ 시 설 보 호 지 구	4개지구 세분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⑧ 취 락 지 구	2개지구 세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 정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 정비	



용도지구명칭		지 정 목 적	비 고
⑨ 개 발 진 흥 지 구	5개지구 세분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	
	주거개발진흥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산업·유통개발진흥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관광·휴양개발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복합개발진흥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특정개발진흥	주거, 공업,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	
⑩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도시·군계획조례지구	시·도지사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지구	

### 다. 용도구역

○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을 지정

용도구역명칭	지 정 목 적	비 고
①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GB특별법 적용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 제공	
③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5년 이상 20년 이내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수산자원보전지구	



## 5.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지구·구역			건폐율	용적률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전용	제 1 종	50이하	50~100
			제 2 종	50	100~150
		일반	제 1 종	60	100~200
			제 2 종	60	150~250
			제 3 종	50	200~300
	준 주 거		70	200~500	
	상업지역	중 심 상 업		70	400~1,500
		일 반 상 업		80	300~1,300
		근 린 상 업		70	200~900
		유 통 상 업		80	200~1,100
공업지역	전 용 공 업		70	150~300	
	일 반 공 업		70	200~350	
	준 공 업		7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50~80	
	생산녹지		20	50~100	
	자연녹지		20	50~100	
	도시지역 중 미세분 지역		20	50~80	
비도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		20	50~80
		생산관리		20	50~80
		계획관리		40	50~100
	관리지역 중 미세분 지역		20	50~80	
	농 립 지 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용도지역 중 미지정·미세분 지역			20	50~80	

○ 지역특성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용도지역·지구·구역		건 폐 율 (%)	용 적 률 (%)	
별도 규정	취락지구		60	해당 용도지역 적용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외	40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30	50~100
	수산자원보호구역		40	80 이하
	자연공원		60	100
	농공단지		70	해당 용도지역 적용 (도시지역외 150)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80	해당 용도지역 적용



## 6. 도시계획시설

시설군	세부시설명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 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7.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분류(시행령 제53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가능(법률 제58조)
  - ※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개발행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지구 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 건축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설치	무게 50t, 부피 50m <sup>3</sup> , 수평면적 50m <sup>2</sup> 초과	무게 150t, 부피 150m <sup>3</sup> , 수평면적 150m <sup>2</sup> 초과		모든 공작물
토지형질변경	높이나 깊이 50cm 초과 절·성토·정지 등	660m <sup>2</sup> 초과 토지에서 높이나 깊이 50cm 초과 성·절토		높이 50cm, 깊이 50cm 초과 절·성토·정지 등
토석채취	면적 25m <sup>2</sup> , 부피 50m <sup>3</sup> 초과	면적 250m <sup>2</sup> , 부피 500m <sup>3</sup> 초과		모든 토석채취
토지분할	사도개설허가 받은 토지 및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 및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 된 토지 분할,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 분할은 허가대상 아님.			
물건적치	25m <sup>2</sup> , 50t, 50m <sup>3</sup> 초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모든 행위)	250m <sup>2</sup> , 500t, 500m <sup>3</sup> 초과	모든 행위 (관리지역은 제외)	모든 행위

##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상한규모(영 §55)

용 도 지 역		토지형질변경 면적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미만
	공 업	3만㎡미만
	보전녹지	5천㎡미만
관리지역		3만㎡미만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3만㎡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경우 위 면적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다음 사업에는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개발행위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되는 토지복원사업



## &lt; 참고 &gt;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017.11.30, 국토교통부 훈령 제939호)

제20조(지구계획 지표기준)① 5. 공원·녹지율 : 20퍼센트 이상[공원·녹지율 산정에 있어 공원·녹지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우수지, 저수지, 광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른 일반광장, 경관광장에 한한다), 보행자전용도로(폭10미터 이상에 한한다) 및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 다만,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지구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철도·우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의4제1항제7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lt; 참고 &gt; 혁신도시 계획기준 [별표3]

### 혁신도시 적정 공원·녹지비율

혁신도시 유형	도시명	공원·녹지비율(%)
저밀형	충북(진천·음성), 광주·전남	25~30이상
중밀형	경북, 강원, 대구, 전북	25이상
고밀형	울산, 경남	20이상

주 1. 제주는 저밀형 혁신도시이지만, 규모가 작고 넓은 부지를 요구하는 교육연수기능 공공기관이 이전하므로 예외적으로 15% 이상을 적용

2. 부산 혁신지구 중 공동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군수사이전부지는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이상을 적용. 동삼·문현·센텀지구는 기개발지이며 규모가 적어 공원·녹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lt;참고&gt; [별표 2] &lt;개정 2010.6.30.&gt;

##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제5조관련)

개발계획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참고> 기업도시 계획기준 [별표 1]

**완충녹지 확보기준**

- ① 주거지와 산업단지간 완충녹지 확보기준 : 50m 이상
- ② 철도·도로변 완충녹지

구 분		확보기준	
철 도 변		30m 이상 녹화면적율:80%이상	
고속국도변 완충녹지대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5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3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방음벽)+도로	20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	8차선 (28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4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2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방음벽)+도로	15m 이상
	6차선 (21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3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0m 이상

항목	세부항목		확보기준	
도로변 완충 녹지 설치의 적정성	학교용지와 도로변사이의 완충녹지대 확보의 적정성	8차선 (28m이상)	학교용지+완충녹지+도로	40m ~ 60m
			학교용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20m ~ 40m
			학교용지+완충녹지(마운딩+방음벽)+도로	15m ~ 30m
		6차선 (21m이상)	학교용지+완충녹지+도로	30m ~ 50m
			학교용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0m ~ 15m
			4차선 (14m이상)	학교용지+완충녹지+도로
학교용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0m ~ 15m			
용도 지역간 완충 녹지 설치의 적정성	주택용지와 공장용지 사이 완충녹지 확보의 적정성	100만평이상	50m ~ 100m	
		100만평이하	30m ~ 50m	
	학교용지와 주거용지 사이 완충녹지 확보의 적정성		10m ~ 20m	
	차폐식재의 적정성 (다층적 수림구조, 녹화율)	녹화면적율	70% ~ 90%	
		수림구조	교목위주(상록, 낙엽) 관목+중목+교목(상록)	
		녹지대	30m ~ 50m	
혐오시설에 대한 완충녹지대 확보의 적정성(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이격거리	50m ~ 200m		
	녹지율	55% ~ 75%		

## ③ 하천변 양안의 완충녹지

구 분	확보기준
주요 하천변 양안에 대한 녹지대 확보의 적정성	10m ~ 30m

- 완충녹지의 폭은 위 표의 확보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 토지이용 등의 여건에 따라 완충녹지의 폭을 변화있게 조성하여 하천의 생태권을 보호, 유지하도록 한다.
- 기존의 제방도로는 완충녹지 등과 연계하여 하천변에 생태적 여건을 향상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6. 30.>

**시설물 설치제한 (제4조 관련)**

구분 소음영향도 (WECPNL) 대상 시설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95 이상	85 이상 95 미만	75 이상 85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비고**

-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원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 IV

## 기타 참고자료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비 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 예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환경부 지침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구역	환경부 고시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공동고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환경부 고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부 고시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 라인	환경부 지침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 고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 고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 고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 고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동고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고시	환경부 고시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환경부 예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지침	환경부 지침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비 고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환경부 지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이상기후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환경부 지침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환경부 지침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위원회 고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
장외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2013, 정책계획)	환경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 고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연구 II(2016, 도로, 하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포럼(2016, 도시개발, 산업단지)	환경부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공동훈령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	환경부 지침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부 지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지침
환경영향평가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	환경부 지침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공동고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공동고시

2017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발 행 일 : 2017년 12월

발 행 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 화 : 044-201-7279

홈 페이지 : <http://www.me.go.kr>

인 쇄 처 : 대양 044-867-8111

